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2024. 12.



## PHILIPPINES

필리핀 편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최 인 혁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 목 차

제1편 개관 .....	1
I. 일반 개황 .....	1
II. 경제 개황 .....	5
1. 주요 경제 지표 .....	5
2. 對세계 상품무역 현황 .....	6
가. 필리핀의 對세계 수출입 .....	6
나. 필리핀의 국가별 수출입 .....	6
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입 품목 .....	8
3. 외국인 투자 동향 .....	10
가. 필리핀의 FDI 유출입 .....	10
나.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 .....	11
다. 필리핀의 업종별 투자 유치 .....	12
라.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 .....	13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14
1. 한-필리핀 수출입 동향 .....	14
2. 한-필리핀 FTA .....	17

IV.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20
1. 무역 관련 협정 개요 .....	20
2. 기타 논의 중인 협정 .....	22
제2편 통관제도 .....	23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	23
1. 통관행정 조직 .....	23
2. 관계 법령 .....	27
가. 「세관현대화법(CMTA)」 .....	27
나. 관련 규정 .....	29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31
1. 과세요건 .....	31
가. 과세물건 .....	31
나. 과세표준 .....	31
다. 납세의무자 .....	32
라. 과세환율 .....	33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33
가. 관세의 확정 .....	33
나. 관세의 납부 .....	34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35
가. 부가가치세 .....	35
나. 소비세 .....	36
다. 기타 수수료 .....	38

III. 관세평가제도 .....	40
1. 개요 .....	40
가. 관세평가제도 .....	40
나. 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 .....	41
2.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	43
3.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 .....	46
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2방법) .....	46
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3방법) .....	47
다. 국내판매 가격에 따른 결정방법(제4방법) .....	49
라. 산정가격기준(제5방법) .....	50
마. 합리적인 조정(제6방법) .....	51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	53
1. 개요 .....	53
가. 품목분류 .....	53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55
2. 관세율제도 .....	56
가. 관세율 수준 .....	56
나. 관세율 종류 .....	59
V. 감면 및 환급 .....	61
1. 개요 .....	61
2. 감면의 종류 .....	62
가. 재수입 및 재수출 .....	62
나. 거주자 관련 물품 .....	63
다. 과학적 목적, 샘플 등 .....	64

라. 영사 및 구호 물품 .....	65
마. 전시, 영상 관련 물품 등 .....	66
바. 유해, 수상, 문학적 물품 등 .....	67
사. 여행자 및 승무원 물품 .....	68
아. 선박 취득품, 선박 및 항공기 관련 물품 .....	69
자. 기계, 컨테이너, 트레일러 새시 등 .....	70
3. 관세 환급 .....	72
가. 수출 관련 환급 .....	72
나. 기타 환급 .....	73
다. 관세 환급절차 .....	75
VI. 원산지제도 .....	78
1. 원산지제도 .....	78
2. 원산지 사전심사 .....	81
VIII. 보세제도 .....	84
1. 개요 .....	84
2. 보세창고 .....	85
가. 보세창고의 종류 및 혜택 .....	85
나. 보세창고의 운영 .....	87
다. 보세창고의 운영인 요건 및 의무 .....	90
라. 보세창고 물품의 보관 및 반출 .....	92
3. 자유지역 .....	93
가. 자유지역 및 혜택 .....	93
나. 자유지역 허가 및 요건 .....	95
다. 자유지역 물품처리 .....	96

VIII. 수출입규제 .....	98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	98
가. 수출입 금지물품 .....	98
나. 수출입 제한물품 .....	99
2. 무역구제제도 .....	102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102
나. 인증 .....	103
다. 라벨링 .....	105
라. 기타 규제 .....	106
IX. 행정구제제도 .....	108
1. 개요 .....	108
2. 행정구제절차 .....	109
가. CMTA에 따른 일반적인 구제절차 .....	109
나. 세관 명령에 따른 세부절차 .....	110
X. 벌칙 .....	114
1. 개요 .....	114
2. 벌칙 .....	115
가. 수입신고 관련 범죄 .....	115
나. 물품 통제 관련 범죄 .....	120
다. 기타 운송 관련 범죄 .....	122
XI. AEO제도 .....	126
1. 개요 .....	126
2. AEO 공인대상 및 기준 .....	127
3. 공인절차 .....	128



가. 사전절차 .....	128
나. 공인절차 .....	129
다. 모니터링 .....	131
라. 인증의 정지 및 취소 .....	133
4. 공인 혜택 .....	135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137
I. 수입 통관절차 .....	137
1. 수입 통관절차 .....	137
2. 기타 수입 통관절차 .....	143
가. 비공식 통관절차(Informal entry process) .....	143
나. 특송물품 통관절차 .....	150
다. 기타 환적 및 재수출 .....	155
II. 수출 통관절차 .....	156
1. 수출 통관절차 .....	156
2. 기타 수출 통관절차 .....	159
참고문헌 .....	162

# 표 목차

## 제1편

〈표 1-I-1〉 연평균 환율 추이 .....	4
〈표 1-II-1〉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	5
〈표 1-II-2〉 필리핀의 對세계 수출입 .....	6
〈표 1-II-3〉 2023년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 .....	7
〈표 1-II-4〉 2023년 주요 수입국 .....	7
〈표 1-II-5〉 2023년 주요 수입 품목 .....	8
〈표 1-II-6〉 2023년 주요 수출 품목 .....	9
〈표 1-II-7〉 필리핀의 FDI 유출입 추이 .....	11
〈표 1-II-8〉 2023년 기준 FDI 상위 10개국 .....	11
〈표 1-II-9〉 2023년 기준 외국인 주요 투자 분야 .....	12
〈표 1-II-10〉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투자 분야 .....	13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수출입 현황 .....	14
〈표 1-III-2〉 2023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주요 수입 품목 .....	15
〈표 1-III-3〉 2023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 품목 .....	16
〈표 1-III-4〉 2023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국 .....	16
〈표 1-IV-1〉 필리핀 무역협정 체결 현황 .....	21

제2편

〈표 2-I-1〉 필리핀 CMTA 체계 .....	27
〈표 2-IV-1〉 평균 MFN 관세율 및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	56
〈표 2-IV-2〉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	57
〈표 2-VIII-1〉 필리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가 필요한 상품 .....	100

## 그림 목차

제2편

[그림 2-I-1] 필리핀 관세청 조직도 ..... 26

[그림 2-IV-1] 품목분류 예시 ..... 54



# 제1편 개관

## I. 일반 개황

- 필리핀은 공식 명칭은 필리핀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며 수도는 마닐라로(Metro Manila) 약 1,384만명이 거주하고 있음
  - 필리핀의 총인구는 약 1억 1,289만명<sup>1)</sup>으로 말레이계가 주 인종이며, 네그리토, 인도네시아인, 중국, 메스티조, 모로 등 여러 종족 간 혼혈로 구성되어 있음
  
-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영어, 지방 토착 언어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천주교(79%), 개신교(7%), 이슬람교(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sup>2)</sup>
  -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어와 영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 토착언어를 공식적인 보조어로 사용하는데, 세부아노어와 일로카노어, 힐리가이논어, 아클란어, 비콜어 등 19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음<sup>3)</sup>
  - 홀로섬과 타위타위섬 등은 방사모로 이슬람 자치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루손섬 중심의 기독교 문화권, 민다나오섬 중심의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북부 내륙 고지대의

---

1) IMF 2023년 기준

2)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0](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0), 검색일자: 2024. 10. 8.

3) 필리핀 관광청 <https://philippinetourism.co.kr/phil-intro/language>, 검색일자: 2024. 10. 8.

## 2 제1편 개관

애니미즘 문화권으로 크게 분류하기도 함<sup>4)</sup>

- 면적은 30만㎢로 한반도의 약 1.3배이며,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음
  - 필리핀은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11월부터 5월까지를 건기로, 6월부터 10월까지를 우기로 분류하고 있음
  - 필리핀의 국토면적은 약 30만㎢로 7천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필리핀은 아일랜드 그룹으로 국토를 분류하고 있으며, 루손(Luzon), 비사야 제도(Visayas), 민다나오(Mindanao) 세 지역으로 나뉨
  - 루손과 민다나오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섬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고 필리핀 국토의 가운데 부분은 수백 개의 섬이 존재하는 군도(다도해)이며, 네그로스섬과 세부섬, 레이테섬이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 특정 섬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비사야 제도(Visayas Islands)라고 칭하고 있음
  - 세부 보홀, 보라카이 등이 비사야 제도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에서 15번째 큰 섬인 루손섬에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를 비롯하여 클락, 앙헬레스, 수빅, 바기오, 비간 등이 위치해 있음
  
- 필리핀은 지난 10년간 해외 근로자 송금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이하 'BPO')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 BPO는 회사 고객 서비스나 인사관리 서비스, 단순 데이터 입력과 같은 기업의 비핵심 사업을 서비스 제공 업체에 하청을 줌으로써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아웃소싱 방식을 의미함
  
- 필리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영국·프랑스·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로 1949년 3월 3일 한국과 수교를 맺음
  - 현재 제조업, 서비스, 건설·공사, 금융 등에 걸쳐 수많은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해 있음

---

4) 필리핀 관광청, <https://philippinetourism.co.kr/phil-intro/religion>, 검색일자: 2024. 10. 8.

- 우리나라와 소포우편협정(1961), 항공운수협정(1969), 문화협정(1973), 무역협정(1978), 경제기술협력협정(1985), 이중과세방지협약(1986), 과학기술협력협정(1986), 범죄인인도조약(1996), 투자증진보호협정(199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3), 형사사범공조조약(2008), 무상원조기본협정(2014),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2016) 등을 맺고 있음<sup>5)</sup>
  
- 2023년 1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4호를 통해 6개년 개발계획인 ‘필리핀 개발계획(Philippines Development Plan, 이하 ‘PDP’)’ 2023~2028을 승인하였음
- 8대 사회·경제 어젠다는 필리핀의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책, 핵심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식량안보, 교통 개선,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사회보장, 건전한 재정관리, 관료제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음
  - 식량안보 보장, 교통 및 물류비용 절감, 가정 내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구매력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
  - 보건 문제 해결, 사회보장 강화, 학습 기회 상실 문제 해결을 통해 취약성을 줄이고 코로나19의 피해 경감
  - 행정 효율성 강화, 건전한 재정 운영,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보장을 통해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 확립
  - 무역 및 투자 촉진, 기반시설 개선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 증진, 연구 개발 장려, 혁신 및 디지털 경제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에 중점을 둔 녹색경제 및 블루 경제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 공공질서와 안전, 평화와 안정 유지
  - 시장경쟁 강화, 기업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줄임으로써 평등한 경쟁의 장 보장

---

5)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필리핀』, 2024. 8. 26., p. 12.



#### 4 제1편 개관

- 필리핀의 화폐는 페소(PESO, 이하 'PHP'로 표기)로 2024년 1월 기준(필리핀중앙은행) PHP 1은 한화 약 24원임

〈표 1-1-1〉 연평균 환율 추이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달러(연평균)	50.744	48.036	50.774	56.12	55.567
원화(연평균)	0.0437	0.0439	0.0427	0.0441	0.0431

자료: BSP, <https://www.bsp.gov.ph/SitePages/Statistics/ExchangeRate.aspx>, 검색일자: 2024. 10. 8.

## II. 경제 개황

### 1. 주요 경제 지표<sup>6)</sup>

- 2023년 필리핀의 명목 GDP는 약 4,360만달러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868달러임
  -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가계소비 활성화, 관광 산업 회복, 제조업 성장 등에 힘입어 동남아 최고 수준인 5.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초 정부의 재정지출 부족, 물가 상승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2022년보다는 약 2% 감소하였음<sup>7)</sup>
  - 소비자 물가는 2023년의 경우 2022년 보다 소폭 증가하여 6.0%를 기록하였음
  - 실업률의 경우 2020년 10.4%로 가장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4.4%를 기록하였음

〈표 1-II-1〉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 GDP(십억달러) <sup>1)</sup>	376.82	361.75	394.09	404.28	436.62
1인당 명목 GDP(달러)	3,280	3,326	3,576	3,624	3,868
경제성장률(%)	5.9	-9.5	5.7	7.6	5.6
소비자물가 증감률(%) <sup>2)</sup>	3.3	2.4	3.9	5.8	6.0
실업률	5.1	10.4	7.8	5.4	4.4

주: 1) Real GDP growth(%)

2) Inflation, average consumer prices

자료: IMF, <https://www.imf.org/en/Countries/PHL#countrydata>, 검색일자: 2024. 10. 8.

6)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필리핀』, 2024. 8. 26., pp. 4~5.

7) 상동

## 2. 對세계 상품무역 현황

### 가. 필리핀의 對세계 수출입

- 필리핀의 수출은 2021, 2022년까지 증가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약 730억달러로, 2022년의 790억달러에서 약 60억달러 감소하였음
- 필리핀의 수입은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음
  - 2023년의 수입액은 약 1,26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보다 약 110억달러 감소한 수치임

〈표 1-11-2〉 필리핀의 對세계 수출입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70.9	65.2	74.7	79.6	73.6
수입	111.6	89.9	116.9	137.2	126.2

자료: Tradeline Philippines, <http://www.tradelinephilippines.dti.gov.ph:8080/total-trade>, 검색 일자: 2024. 10. 8.

### 나. 필리핀의 국가별 수출입

-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약 115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중국, 일본, 홍콩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음
  - 중국은 약 111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은 약 100억달러, 홍콩은 약 88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음

〈표 1-Ⅱ-3〉 2023년 필리핀의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수출액
1	미국	11,548
2	중국	10,925
3	일본	10,455
4	홍콩	8,843
5	한국	3,533
6	싱가포르	3,528
7	네덜란드	3,089
8	태국	2,932
9	대만	2,638
10	독일	2,487

자료: Tradeline Philippines, <http://www.tradelinelinephilippines.dti.gov.ph:8080/exports>, 검색일자: 2024. 10. 8.

- 필리핀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약 294억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약 115억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은 약 102억달러, 한국은 약 84억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였음

〈표 1-Ⅱ-4〉 2023년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
1	중국	29,392
2	인도네시아	11,514
3	일본	10,288
4	한국	8,488
5	미국	8,418

〈표 1-11-4〉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
6	태국	7,880
7	싱가포르	7,095
8	말레이시아	5,962
9	베트남	4,709
10	대만	4,686

자료: Tradeline Philippines, <http://www.tradelinephilippines.dti.gov.ph:8080/imports>, 검색일자: 2024. 10. 8.

#### 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필리핀의 2023년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 전기 기계 등, 철도 또는 전차차량 및 부품, 원자로·보일러 등 기기 등이 있음
-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자체 생산량을 확보할 제조업 실적은 취약하며 소비재와 공산품 등 완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sup>8)</sup>

〈표 1-11-5〉 2023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	수입액	비중
1	광물성 연료, 광유 및 그 증류 제품	20,156	16.0
2	전기 기계 및 장비 및 그 부품음향 녹음기 및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향 녹음기 및 재생기 및 그러한 물품의 부품 및 액세서리	18,705	14.8
3	철도 또는 전차차량 이외의 차량 및 그 부품 및 부속품	9,826	7.8
4	원자로, 보일러, 기계 및 기계 기기	9,795	7.8
5	기타 특수 용도제품	8,752	6.9

8) 김윤환·박지운·형민혁, 「2024 필리핀 진출전략」, 『KOTRA 자료 23-165』, KOTRA, 2024, p. 24.

〈표 1-11-5〉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	수입액	비중
6	철 및 강철	3,968	3.1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858	3.1
8	곡류 시리얼	3,795	3.0
9	광석, 슬래그 및 재	3,293	2.6
10	광학, 사진, 영화, 측정, 검사, 정밀, 의료 또는 수술용 기기 및 장치, 그 부품 및 부속품	2,516	2.0

자료: Tradeline Philippines, <http://www.tradelinelinephilippines.dti.gov.ph:8080/imports>, 검색일자: 2024. 10. 8.

- 필리핀의 2023년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기계 및 장비와 음향 녹음기, 특수 용도제품, 원자로·보일러 등, 구리와 그 제품, 광학, 영화, 의료 관련 기기 및 장치 등이 있음
- 전자 및 반도체의 경우 다국적 전자 회사의 반제품 및 완제품 제조·수출이 주를 이룸<sup>9)</sup>

〈표 1-11-6〉 2023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1	전기 기계 및 장비 및 그 부품, 음향 녹음기 및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향 녹음기 및 재생기, 그러한 물품의 부품 및 액세서리	32,202	43.7
2	기타 특수 용도제품	9,715	13.2
3	원자로, 보일러, 기계 및 기계 기기, 그 부품	5,944	8.1
4	구리 및 그 제품	2,511	3.4
5	광학, 사진, 영화, 측정, 검사, 정밀, 의료 또는 수술용 기기 및 장치, 그 부품 및 부속품	2,396	3.3
6	광석, 슬래그 및 재	2,230	3.0
7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956	2.7

9) 김윤환·박지운·형민혁, 「2024 필리핀 진출전략」, 『KOTRA 자료 23-165』, KOTRA, 2024, p. 24.

〈표 1-11-6〉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8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중한 또는 준 보석, 귀금속, 귀금속으로 입힌 금속 및 그 물품, 모조 보석, 동전	1,430	1.9
9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 및 오일 및 그 절단 제품, 준비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왁스	1,293	1.8
10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061	1.4

자료: Tradeline Philippines, <http://www.tradelinelinephilippines.dti.gov.ph:8080/exports>, 검색일자: 2024. 10. 8.

### 3. 외국인 투자 동향

#### 가. 필리핀의 FDI 유출입

-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21년의 경우 2020년 약 68억달러에서 약 112억 달러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소폭 감소하여 각각 약 95억달러, 약 87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필리핀 BSP(Bangko Sentral Ng Philippines, 이하 ‘BSP’)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감소 이유에 대해 필리핀의 경제성장 둔화 및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원인 중 하나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친중 정권을 표방했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어 중국의 對필리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sup>10)</sup>
    - 중국의 對필리핀 직접투자 감소는 두테르테 정권 말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자 불만을 표출하며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였음

10)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필리핀』, 2024. 8. 26., p. 8.

〈표 1-11-7〉 필리핀의 FDI 유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외국인투자액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8,671	6,822	11,983	9,492	8,863
해외직접투자액 (Out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3,350	3,562	2,251	3,861	3,905

자료: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BX.KLT.DINV.CD.WD?locations=PH>,  
검색일자: 2024. 10. 8.

### 나.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

- 2023년 기준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은 일본, 싱가포르, 독일 미국 순으로, 해외 직접 투자액은 일본 약 8억 4천만달러, 싱가포르 약 1억 8천만달러, 독일 약 1억 5천만달러, 미국 약 1억 1만달러 등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은 해외 직접 투자액 기준 8위로, 약 2천만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하고 있음

〈표 1-11-8〉 2023년 기준 FDI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해외직접투자액
1	일본	849.36
2	싱가포르	182.65
3	독일	149.89
4	미국	113.14
5	유럽연합	63.99
6	대만	36.96
7	말레이시아	27.38
8	대한민국	21.30
9	중국	15.99
10	스웨덴	11.81

자료: BSP, <https://www.bsp.gov.ph/SitePages/Statistics/External.aspx?TabId=7>, 검색일자: 2024. 10. 8.



### 다. 필리핀의 업종별 투자 유치

- 2023년 해외 직접 투자액 기준 외국인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제조업으로 약 9억 3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차량류 수리업이 약 1억달러, 부동산 관련 업종이 약 9천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 그 밖에 정보 통신, 건설, 운송 및 보관, 숙박 및 음식 서비스, 과학 및 기술, 행정 및 지원 서비스, 광업 및 채석업 등에 주요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BSP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투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행정업, 공공서비스업, 운송업 부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함

〈표 1-11-9〉 2023년 기준 외국인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달러)

순위	분야	해외직접투자액
1	제조업	931.75
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101.35
3	부동산	89.83
4	정보 및 통신	82.65
5	건설	69.65
6	운송 및 보관	30.66
7	숙박 및 음식 서비스	21.11
8	과학 및 기술	14.03
9	행정 및 지원 서비스	9.63
10	광업 및 채석	7.11

자료: BSP, <https://www.bsp.gov.ph/SitePages/Statistics/External.aspx?TabId=7>, 검색일자: 2024. 10. 8.

라. 한국의 對필리핀 투자

- 2022년 총 순투자액이 약 4,500만달러였던 것에 비해 2023년 총 순투자액은 약 2,100만달러를 기록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 2022년 한국은 제조업에 약 4,400만달러로 가장 많이 투자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에도 제조업에 약 4,700만달러로 가장 많이 투자하였음
  - 그 밖에 2022년 1천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2023년 약 500만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 약 200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정보 통신업에 대한 투자가 2023년 약 600만달러로 증가하였음
  -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는 2022년 1,500만달러에서 2023년 약 1,200만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음

〈표 1-11-10〉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투자 분야

(단위: 백만달러)

2022년 분야	2022년 순투자액	2023년 분야	2023년 순투자액
제조업	44	제조업	47
부동산업	15	부동산업	12
도매 및 소매업	10	정보통신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도매 및 소매업	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교육 서비스업	3
정보통신업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교육 서비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1
건설업	-1	건설업	-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8
합	45		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검색일자: 2024. 10. 8.

###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1. 한-필리핀 수출입 동향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총 교역규모는 약 136억달러이며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수출은 약 90억달러, 수입은 약 46억달러임<sup>11)</sup>
  - 對필리핀 수출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1년, 2022년 각 35.5%, 27.4%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다시 -26.8% 감소하였음
  - 對필리핀 수입은 2021년, 2022년 각 26.2%, 33% 증가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10.3% 감소하였음
  - 對필리핀 무역수지는 코로나 19 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 2022년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023년 다시 -38.78%로 감소하였음

〈표 1-III-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8,365	-30.5	7,126	-14.8	9,659	35.5	12,306	27.4	9,009	-26.8
수입	3,658	2.5	3,086	-15.6	3,894	26.2	5,178	33.0	4,645	-10.3
교역규모	12,023	-22.9	10,212	-15.6	13,553	32.72	17,484	29.0	13,654	-21.91
무역수지	4,707	-46.19	4,040	-14.17	5,765	42.7	7,128	23.64	4,364	-38.78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자: 2024. 10. 10.

11)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4. 11. 22.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10대 수입 품목은 반도체, 산업용 전기기기, 곡실류, 동제품, 석탄, 수동 부품 등임

〈표 1-III-2〉 2023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수입액
1	반도체	1,003
2	산업용 전기기기	995
3	곡실류	280
4	동제품	256
5	석탄	232
6	수동부품	231
7	동광	150
8	컴퓨터	117
9	기타가정용전자	95
10	기구부품	94
총계	기타(10대 품목 제외 전체)	4,645

주: MTI 4단위\*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단위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 집행 및 경제 분석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정 한 수출입 품목분류체계를 의미하며 필리핀 대사관의 수출입 항목과 관련한 자료의 단위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11. 22.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10대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동제품 등임

〈표 1-III-3〉 2023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1	석유제품	3,016
2	반도체	1,679
3	무선통신기기	398
4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239
5	동제품	234
6	자동차	217
7	염료및안료	192
8	컴퓨터	143
9	기구부품	139
10	전력용기기	133
총계	기타(10대 품목 제외 전체)	9,009

주: MTI 4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3. 11. 22.

□ 필리핀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15위 수출국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은 제28위 수입국임

〈표 1-III-4〉 2023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국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순위	수입
1	중국	1	중국
2	미국	2	미국
3	베트남	3	일본
4	일본	4	호주
5	홍콩	5	사우디아라비아
6	대만	6	베트남

〈표 1-Ⅲ-4〉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순위	수입
7	싱가포르	8	독일
8	인도(인디아)	12	인도네시아
12	말레이시아	22	태국
15	필리핀	28	필리핀

주: MTI 4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4. 10. 8.

## 2. 한-필리핀 FTA<sup>12)</sup>

- 2023년 9월, 한-필리핀 FTA 타결 선언 후 1년 10개월 만에 정식으로 서명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단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은 기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하기로 합의하였음<sup>13)</sup>
  - 양국은 2년 4개월 동안 경제 및 기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한-필리핀 FTA를 타결한 후 2022년 6월에 최종 협정을 마무리하였음
  - 한-아세안 FTA, RCEP,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였음
  
- 공산품의 경우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가 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1,648개(전체 수입액의 14.6%) 공산품 중 1,446개(수입액 12.3%)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15년 내 관세 철폐) 예정임<sup>14)</sup>

12) FTA 통합 플랫폼, <https://okfta.kita.net/nttCntnt/view/9335?mnSn=38>; <https://okfta.kita.net/nttCntnt/view/9522?mnSn=38>, 검색일자: 2024. 10. 10.

13)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보도자료, 2023. 9. 7., pp. 2~3.

## 18 제1편 개관

- 對필리핀 수출이 많은 일부 화물차 및 승용차(5%)에 대해 즉시 철폐, 준중형 승용차 및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5%)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또한 주요 자동차 부품(3~30%)에 대해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15년 내 관세 철폐 예정임
- 한국은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가 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483개(전체 수입액의 1.6%) 공산품 중 328개(수입액 1.2%)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모두 15년 내 관세 철폐) 예정임
  
- 농산물의 경우 필리핀은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 수 33.7% (492개), 수입액 30.4%(2.6천만달러)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sup>15)</sup>
  - 커피조제품(1%), 대두(1%), 곡분류(3%) 등은 즉시 철폐, 고추(5%), 배(7%), 감(10%), 된장(7%), 쌀조제품(7%), 소주(5%), 맥주(15%) 등은 15년 내 관세 철폐 예정임
  - 기타 농산가공품(차 추출물, 관세율 10%), 감귤(10%), 쌀가루(10%) 등 6개 품목은 관세 감축, 옥수수 가루(16%), 과일주스(10%), 무알콜 맥주(5%) 등 255개 품목은 양허 제외 되었음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은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로 보호하기로 하였음
  -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통한 수입 급증 통제 및 수입량 초과 시 관세를 10년간 부과할 예정임<sup>16)</sup>
  - 한국은 한-필리핀 FTA에서 품목 수 기준 72.1%(1,175개), 수입액 기준 82.9%(4.3억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예정임
  
- 경제·기술협력 강화와 동시에 양국 간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 FTA 통합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양국 간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14) 관계부처합동, 「한-필리핀 FTA 상세 설명자료」, 보도자료, 2023. 9., p. 13.

15) 관계부처합동, 「한-필리핀 FTA 상세 설명자료」, 보도자료, 2023. 9., p. 17.

16) 관계부처합동, 「한-필리핀 FTA 상세 설명자료」, 보도자료, 2023. 9., p. 18.

- 필리핀이 세계2위 니켈 생산국이며 세계 4위 코발트 생산국인 만큼 FTA를 통한 니켈과 코발트 등 광물 자원 공급망 확장 기회 창출. 전기차 및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력 가능성 有, 필리핀 내 국내 차량의 가격 경쟁력 향상될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9월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년 만에 열린 협력위원회에서 양측 대표는 2023년 9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sup>17)</sup>
  - 또한 2024년 4월 발효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국과 필리핀의 특징을 살려 해상 풍력, 선박 보수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 및 아울러 필리핀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차 분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였음
  - 한국 측은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을 소개했으며, 이에 필리핀 측은 향후 에너지 안보, 탄소 감축 노력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의사를 표시함
  - 이와 함께 양국은 핵심 원자재 분야의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

17) FTA 통합 플랫폼, <https://okfta.kita.net/nttCntnt/view/9522?mnSn=38>, 검색일자: 2024. 10. 10.



## IV.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1. 무역 관련 협정 개요

- 필리핀은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이하 'ATIGA') 체결을 시작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필리핀 FTA를 제외한 총 10개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 및 발효되었음
- 양자 협정의 경우 일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하 'EFTA')과 체결한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JEPA) 및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 (PH-EFTA FTA)에 이어 한국과 세 번째로 양자 FTA(Philippines-Korea (PH-ROK) Free Trade Agreement(FTA)를 체결하였음
  - 일본과의 EPA는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서, 합의된 분야는 관세 철폐와 같은 무역문 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품 거래, 서비스 거래, 투자, 자연인 이동(MNP),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음
  - EFTA(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의 양자 협정으로 필리핀은 EFTA로 수출되는 필리핀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 혜택을 확보하였음(냉동 참치/고등어, 통조림 파인애플, 원유 코코넛 오일, 신선/건조 바나나 등)<sup>18)</sup>

---

18) 필리핀 통상산업부, <https://www.dti.gov.ph/philippines-european-free-trade-association-efta-free-trade-agreement-fta/>, 검색일자: 2024. 11. 2.

- 필리핀의 비준서 기탁일(2023년 4월 3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2023년 6월 2일부로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이 발효되었음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으로 RCEP 협정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 재산권, 전자 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및 정부 조달에 대해 다루고 있음

〈표 1-IV-1〉 필리핀 무역협정 체결 현황

번호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1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아세안 10개국	1992. 1. 28.	1993. 1. 1.
2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ACFTA)	아세안 10개국, 중국	2002. 11. 4.	2006. 1. 6.
3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AKFTA)	아세안 10개국, 한국	2005. 12. 13.	2006. 1. 1.
4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필리핀, 일본	2006. 9. 6.	2008. 10. 8.
5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AJCEPA)	아세안 10개국, 일본	2008. 4. 14.	2008. 12. 1.
6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AANZFTA)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2009. 2. 27.	2010. 1. 1.
7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AIFTA)	아세안 10개국, 인도	2009. 8. 13.	2010. 1. 1.
8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PH-EFTA FTA)	필리핀, EU	2016. 4. 28.	2017. 12. 8.
9	ASEAN-Hongkong Free Trade Agreement(AHFTA)	아세안 10개국, 홍콩	2017. 11. 12.	2019. 1. 1.
10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 11. 15.	2023. 6. 2.

자료: KOTRA,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Detail.do?SITE\\_NO=2&MENU\\_ID=3410&CONTENTS\\_NO=1&pTmplateCd=NT2326&pDataId=204401&sGbnCd=244&bbsSn=244&gbn=In](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Detail.do?SITE_NO=2&MENU_ID=3410&CONTENTS_NO=1&pTmplateCd=NT2326&pDataId=204401&sGbnCd=244&bbsSn=244&gbn=In), 검색일자: 2024. 10. 10.

## 2. 기타 논의 중인 협정<sup>19)</sup>

- 필리핀 정부는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과 EU 간의 공식 FTA 협상이 2024년 10월 재개될 예정이며 필리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2차 FTA 협상을 타결하여 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체결을 예상하고 있음<sup>20)</sup>
  - 필리핀은 2014년부터 EU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으로, GSP+하에서 6,274개 품목에 대해 EU로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됨(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코코넛 제품, 참치, 새우, 기타 수산 가공품 등, 의류, 신발, 전자기기 등)<sup>21)</sup>
  - 아랍에미리트와 첫 번째 협상 라운드가 완료되었으며 두바이에서 2024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협상을 통해 상품무역, 관세 자유화, 원산지, 통관절차, 기술 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등의 주제로 논의하였음
    - 2024년 3월 18일 협상을 공식 재개하여 미래 지향적 경제 동반자 관세에 중점을 두고 회담 재개를 통한 무역 관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필리핀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 양자 간 FTA를 추진하며 중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계획 중임

19) KIEP,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No=368761&mid=a30100000000&systemcode=03>, 검색일자: 2024. 10. 10.

20) 상동

21) 필리핀 통상산업부, <https://www.dti.gov.ph/landing-pg-00134/philippines-european-union-eu-free-trade-agreement-fta/>, 검색일자: 2024. 11. 18.

## 제2편 통관제도

### I. 통관행정 조직과 관계 법령

#### 1. 통관행정 조직

- 필리핀 관세청은 재무부 외청으로 정부 수입 보호 및 강화, 국제 무역의 효율적 촉진 및 모든 형태의 통관 사기 및 불법 행위를 예방 및 축소, 통관 및 관세에 대한 관리를 현대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sup>22)</sup>
- 밀수 및 기타 사기 예방 및 억제, 국제 무역 촉진 및 보안,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입항 및 통관 감독 및 통제, 필리핀에 도착하는 외국 우편물의 취급, 감독 및 통제, 수입 및 수출물품 감독 및 통제, 경쟁력 있는 보상 및 보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보상연구의 수행, 몰수 사건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 행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sup>23)</sup>

---

22) 필리핀 관세청, <https://customs.gov.ph/mission-and-vision/>, 검색일자: 2024. 11. 11.

23) 필리핀 재무부, <https://www.dof.gov.ph/services/customs-modernization-and-tariff-act/>, 검색일자: 2024.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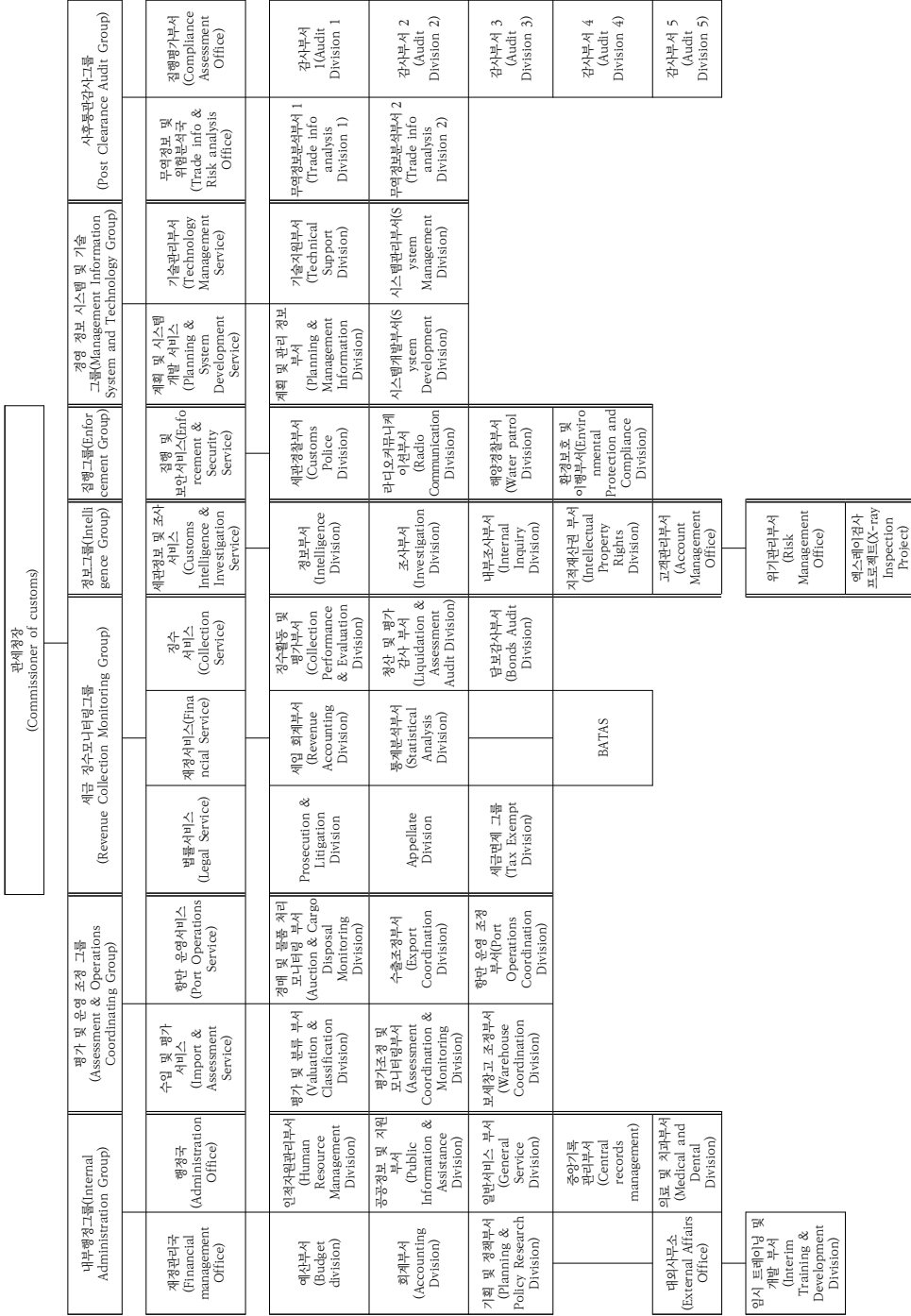
- 필리핀 관세청은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이하 'CMTA')」의 집행을 통해 정책 목적을 이행함<sup>24)</sup>
  - 통관절차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통관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
  - 국제 표준 및 세관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세관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함
  - 이해관계자가 세관 관행 및 절차를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하여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세관 정보, 관련법, 규칙, 규정, 행정 정책, 절차 및 관행의 투명성 및 접근성 체계를 구축함
  -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다른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의, 조정 및 협력을 이행함
  - 세관 관련 불만 및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및 사법적 항소 구제책을 제공함
  - 관세 행정에 현대적인 관행을 채택하고 세관 기능 수행에 정보 및 통신 기술을 활용함
  -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통해 관세 세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주의를 확립함
  
- 필리핀은 관세청은 관세청장 하위 7개의 그룹과 13개의 국(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음
  - 내부 행정 그룹, 평가 및 운영 조정 그룹, 세금 징수 모니터링 그룹, 정보 그룹, 집행 그룹, 경영 정보 시스템 및 기술 그룹, 사후 통관 감사 그룹의 7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음
    - 내부 행정 그룹은 관세청의 재무, 행정, 인사, 기획과 경쟁 개선 서비스와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함
    - 평가 및 운영 조정 그룹은 관세평가, 품목분류, 경매 물품 처리 등을 비롯하여 보세창고 및 항만 운영 또한 담당하고 있음

---

24) CMTA 제101조

- 세금 징수 모니터링 그룹은 세입 징수 회계 담당, 세관의 법령 행정, 세입 징수 통계 정보와 분석 등을 담당함
  - 정보 그룹은 관세와 경제 활동 관련 지식 정보 수집, 내부 문의와 조사 실행 등을 담당함
  - 집행 그룹은 세관 및 해양 경찰권 발동,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함
  - 경영 정보 시스템 및 기술 그룹은 세관 전산화 프로그램 보충, IT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함
  - 사후 통관 감사 그룹은 위험분석, 정보분석, 감사 등을 담당함
- 13개의 국(서비스)은 다음과 같음
- 재정관리국, 행정국, 수입 및 평가 서비스, 항만 운영 서비스, 법률 서비스, 재정 서비스, 징수 서비스, 세관 정보 및 조사 서비스, 집행 및 보안 서비스, 계획 및 시스템 개발 서비스, 기술 관리 부서, 무역 정보 및 위험분석국, 집행평가부서

[그림 2-1-1] 필리핀 관세청 조직도



자료: 필리핀 관세청, <https://customs.gov.ph/organizational-chart/organizational-chart-2/>, 검색일자: 2024. 11. 12.

## 2. 관계 법령

### 가. 「세관현대화법(CMTA)」

- 필리핀의 통관 및 관세 관련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세관현대화법(Republic Act NO. 10863, May 30, 2016, An Act Modernizing The Customs and Tariff Administration, 이하 ‘CMTA’)」의 경우 「공화국법(Republic Act, RA)」에 해당되며,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거친 법률로서 그 효력이 있음
- CMTA는 세관 규칙과 절차를 현대화하여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부패 가능성을 줄이며, 세관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관세 및 세관법(Tariff and Customs of the Philippines, 이하 ‘TCCP’)」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었음
- 필리핀 CMTA 는 총 18장 48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관의 통제, 수출입 통관절차, 환적, 제세금, 관세 유예, 환금, 추징, 사후심사, 이의제기, AEO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표 2-1-1〉 필리핀 CMTA 체계

장 제목	절 제목
제1장(Title 1) 예비조항	제1절 소제목
	제2절 일반 및 공통 조항
	제3절 수입의 종류
	제4절 면세물품
제2장(Title II) 관세청	제1절 일반 행정
	제2절 세관 구역 및 입항지
	제3절 경찰 권한 행사
제3장(Title III) 세관 관할권 및 세관 통제	제1절 세관 관할권
	제2절 세관 통제



〈표 2-1-1〉의 계속

장 제목	절 제목
제4장(Title IV) 수입 통관 및 절차	제1절 물품신고
	제2절 물품 검사
	제3절 평가 및 반출
	제4절 특별 절차
제5장(Title V) 수출 통관 및 절차	제1절 수출 통관 및 신고
제6장(Title VI) 세관 통과 및 환적	제1절 세관 통과
	제2절 환적
제7장(Title VII) 수입 관세 및 세금	제1절 평가기준
	제2절 특별관세 및 무역구제조치
제8장(Title VIII) 세금 및 관세 유예, 특혜 및 면제	제1절 조건부 과세 및/또는 면세 수입
	제2절 세관창고
	제3절 자유구역
	제4절 면세점
제9장(Title IX) 관세 추징 및 환급	제1절 관세 환급
	제2절 환불 및 감면
제10장(Title X) 사후 심사	제1절 사후 심사
제11장(Title XI) 행정 및 사법절차	제1절 사전 판결 및 분쟁 해결
	제2절 이의제기
	제3절 경고 명령
	제4절 압수 및 몰수
	제5절 항소 및 몰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제6절 압류
	제7절 기타 행정절차
	제8절 관세 및 세금 징수를 위한 민사 구제책
	제9절 사법절차
	제10절 세관 보관 증인 재산의 처분

〈표 2-1-1〉의 계속

장 제목	절 제목
제12장(Title XII) 제3자 관련 내용	제1절 통관 서비스 제공업체
	제2절 운송업체, 선박 및 항공기
	제3절 기타 제3자
	제4절 공인 경제 운영자(AEO)
제13장(Title XIII) 세관수수료 및 요금	제1절 세관수수료 및 요금
제14장(Title XIV) 위반 및 처벌	제1절 범죄 및 기타 위반 사항
	제2절 사무국 직원에게 부과되는 처벌
제15장(Title XV) 기타 조항	제1절 기타 조항
제16장(Title XVI) 관세율 관리 및 정책	제1절 관세위원회
	제2절 탄력관세
	제3절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제17장(Title XVII) 의회 감독위원회	제1절 의회 감독위원회
제18장(Title XVIII) 최종조항	제1절 최종조항

자료: 필리핀 대법원 E-Library,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2/68014>,  
 검색일자: 2024. 11. 11.

## 나. 관련 규정

- 필리핀 관세청은 CMTA와 함께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하는 일반적, 영구적 규칙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명령(Administrative Order), 메모명령(Memorandum Orders), 메모 회람(Memorandum Circulars) 등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세관의 정책에 대해 고지하고 있음
- 관세율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공표되며 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s://tariffcommission.gov.ph/all-executive-orders>)에서 확인 가능함
- 2017년, 2018년 보세창고위원회(CBWC) 재조직, 보상위원회 세액공제위원회와 세액공제 사무국의 재조직 등에 관한 내용은 필리핀 관세청 홈페이지 Custom

Special Order(CSO)(<https://customs.gov.ph/custom-special-order-cso/>)에서 확인 가능하며, 2018년 이후 공표된 행정명령은 없음

- 2024년 기준으로 세관 메모 회람은 필리핀 관세청 홈페이지 Customs Memorandum Circular(CMC) <https://customs.gov.ph/customs-memorandum-circular-cmc-2024/>에서 확인 가능함
- 2024년 기준으로 세관 메모 명령은 필리핀 관세청 홈페이지 Customs Memorandum Order(CMO) 2024, <https://customs.gov.ph/customs-memorandum-order-cmo-2024/>에서 확인 가능함
- 2024년 기준으로 세관 행정 명령은 필리핀 관세청 홈페이지 Customs Administrative Order(CAO) 2024, <https://customs.gov.ph/customs-administrative-order-cao-2024/>에서 확인 가능함

##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 1. 과세요건

- 관세의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의 일정한 요건을 의미함

#### 가. 과세물건

- 외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CMTA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됨
-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입일 또는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 시점에 관세가 적용됨<sup>25)</sup>
  - 자유지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물품은 성질 변화에 상관없이 자유지역 반출 시점에 관세가 적용됨

#### 나.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세액의 기초가 되는 가격 또는 수량으로 신고 시의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관세의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음

---

25) CMTA 제105조

-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FOB 가격에 운임료와 보험료를 가산한 CIF 가격을 사용하고 있음
- 대부분 상품 관세 가치의 백분율로 계산되는 증가세(ad valorem)를 적용하고(최대 세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있으며, 특정 수량에 대해 부과되는 종량세 또한 적용하고 있음
- 물품이 총 증량으로 과세되는 경우 과세 증량은 수입 시점에 해당 물품이 들어 있거나 보관 또는 포장된 모든 종류의 용기, 포장, 홀더 및 포장의 무게와 함께 동일한 무게로 함

#### 다. 납세의무자

- 신고인은 물품신고의 정확성과 수입물품에 대한 모든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 지불에 대한 의무가 있음<sup>26)</sup>
- 신고인은 수취인 또는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자로, 관세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선하 증권의 소지자인 수입업자
  - 수출자, 선적할 물품의 소유자
  - 수입업자 또는 선하 증권 소지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세관 중개인
  - 각 소지자의 대리인 또는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 받은 자
  - 수취인 또는 물품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임원에게 신고인을 대신하여 수입신고서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세관 중개인의 경우 수입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의 납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sup>27)</sup>

---

26) CMTA 제106조

27) CMTA 제107조

## 라. 과세환율

-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평가 및 징수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외화로 표시된 가치 및 가격은 BSP가 수시로 지정하거나 공표하는 현재 환율에 따라 필리핀 통화로 환산함<sup>28)</sup>

##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가. 관세의 확정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일부 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에 따라 관세가 확정됨
  - 국내 소비, 보세창고 보관, 조건부 수입, 환적을 위한 물품은 모두 신고의 대상으로, 수입신고서는 수입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제출 기간은 요청 시 정당한 사유에 따라 15일 더 연장될 수 있음
  - 신고납부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함<sup>29)</sup>
    - 수입신고서에는 수하인의 이름, 수입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발항, 도착항 및 도착 날짜, 포장물의 수와 표시, 대량인 경우 그 수량, 그 안에 포함된 물품의 성격과 정확한 상품 설명, 송장에 명시된 가격, 기타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신고인이 수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특정 경우 및 본 사무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따라 잠정 또는 불완전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나, 신고된 물품의 수락을 위해 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

28) CMTA 제708조

29) CMTA 제401조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신고인이 본법 제403조에 따라 잠정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 완료를 약속할 시 예외로 함

- 잠정 신고에 따른 물품은 관세 및 세금에 상응하는 담보 제시 후 반출될 수 있음

- FOB 또는 FCA 가격이 PHP 10,000 이하인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재무부 장관은 3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를 사용하여 현재 가치로 조정해야 함<sup>30)</sup>

## 나. 관세의 납부

### 1) 정산(liquidation) 및 납부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가 완료되고 통관이 이루어진 후 3년이 경과되면, 정산은 최종적이며, 사기적인 행위 또는 당사자의 항의가 없는 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법률에 따라 확정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의 정산은 임시 정산으로 간주되며 해당 항목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재조정 또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관세의 부과와 관련한 사후 심사는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과제척기간은 3년임
- 정산된 관세, 세금 및 기타 금액을 공고된 후 10 근무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1년 이상 미납된 경우 25%로 늘어남<sup>31)</sup>
  - 미납된 세금,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은 법적 이자율 연 20%가 적용되며, 이는 최종 과세 결정일로부터 산정됨

---

30) CMTA 제423조

31) CMTA 제104조

## 2) 기타 오류 관련 환급

- 송장이나 신고서에 명백한 오류, 무게, 치수 및 계량에 대한 오류, 그리고 법률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배분 오류가 세관 조사관이나 검토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해당 항구에 그런 관리관이 있을 경우) 해당 오류는 수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오류는 관세 지불 이전에 발견되거나 최종 확정 후 1년 이내에 발견된 경우, 수입자의 서면 요청 또는 지역징수원이 인정한 오류 보고서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sup>32)</sup>
  
- 명시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지역징수원은 항목을 재확정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법적 기한 내에 오류 보고서를 기반으로 환급할 권한을 가짐<sup>33)</sup>
  - 관세 환급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를 납부한 지역징수원에게 전달해야 하며, 지역징수원은 청구서를 수령한 후 사무실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급하도록 함

##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가. 부가가치세

- 수입된 물품에 적용되는 12%의 부가가치세는 양륙 비용(landed cost)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양륙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됨<sup>34)</sup>
  - 과세가격, 관세, 소비세 및 수입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함
  - 수입자는 물품이 세관에서 반출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관세가 물품의 가격이 아닌 수량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

32) CMTA 제912조

33) CMTA 제913조

34)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제107조



는 도착 비용(운송비, 보험료 및 기타 비용 포함)에 소비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수출 판매 및 특정 기타 영세율 판매에 대해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 관세평가액: PHP 1,000,000
- 관세: PHP 100,000
- 소비세(해당 시): PHP 50,000
- 기타 비용(예: 운송비): PHP 20,000
- 양륙 비용 = 관세평가액 + 관세 + 소비세 + 기타 비용
- 양륙 비용 = PHP 1,000,000 + PHP 100,000 + PHP 50,000 + PHP 20,000  
= PHP 1,170,000
- 부가가치세 = 양륙 비용의 12% = PHP 140,400

## 나. 소비세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주류 및 담배, 석유, 향수 등 특정 물품에는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됨

□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다음과 같음<sup>35)</sup>

- 휘발유: 리터당 PHP 10.00
- 디젤: 리터당 PHP 6.00
- 등유: 리터당 PHP 5.00
- 연료용 LPG: 리터당 PHP 3.00

---

35) 필리핀 국세청, <https://www.bir.gov.ph/excise-tax>, 검색일자: 2024. 9. 30.

- 주류제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다음과 같음<sup>36)</sup>
  - 증류주 22%에 추가로 리터당 PHP 66.00 부과됨(매년 6% 인상)(2024년 1월 1일)
  -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의 경우, 병당 750ml 용량 기준으로 구분되어 부과됨
    - PHP 500 이하: 리터당 PHP 328.98
    - PHP 500 이상: 리터당 PHP 921.15
  - 스틸 와인 및 탄산 와인(2025년 이후 매년 6% 인상)
    - 알코올 함량 14% 이하: 리터당 PHP 59.55
    - 알코올 함량 14% 초과 25% 이하: 리터당 PHP 78.96
    - 알코올 함량 25% 이상: 증류주로 분류되어 다른 세율 적용
  - 발효주(Fermented Liquors)
    - 리터당 PHP 43.00(2024년 1월 1일부터 이후 매년 6% 인상)
  
-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다음과 같음<sup>37)</sup>
  - 가열 담배(Heated Tobacco Products)는 팩당 20개 단위 기준으로 PHP 32.50 부과(2025년부터 매년 5% 인상)
  - 전자담배는 니코틴 소금(Salt Nicotine) 기반 제품과 일반 니코틴(Freebase Nicotine) 기반 제품으로 분류하여 부과하며 니코틴 함량에 관계 없이 적용됨
  - 니코틴 소금 기반 제품은 2024년 1ml당 PHP 52.00 부과(2025년부터 매년 5% 인상)
  - 일반 니코틴 기반 제품의 경우 2024년 10ml당 PHP 60.00 부과(2025년부터 매년 5% 인상)
  - 시가(Cigars)는 20% 고정세율에 시가당 PHP 7.38 부과(2025년부터 매년 5% 인상)
    - 수작업으로 포장된 켈런(Cigarette) 팩당 20개 단위 기준으로 PHP 60.00(2025년부터 매년 5% 인상)
    - 기계식으로 포장된 켈런 팩당 20개 단위 기준으로 PHP 60.00(2025년부터 매년 5% 인상)

---

36) CMC 03-2024 제A조

37) CMC 03-2024 제B조

- 기타 향수, 화장품, 보석, 요트 레저용 선박 등에 20%의 소비세가 부과됨

### 다. 기타 수수료

- 필리핀 관세청은 2024년 06월 10일 서비스 수수료 요금을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음<sup>38)</sup>
  - 세관 행정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2-2024에 따라 해운사, 항공사, 항공 특송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세관 중개인, 물품 운송업체, 물품 작업업체, 물류업체, 환적업체, 세관 보세창고 운영자, 자유무역지대 운영자, 등록 기업, 제3자 솔루션 제공업체 및 기타 모든 법인이 수수료 징수의 대상임
- 필리핀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통관비, 물품 이전 수수료
  - 사전 판정(분류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요청 수수료
  - 세관 문서 도장 및 국세청 문서 도장 수수료, 관세와 세금 관련 문서에 대한 도장 비용
  - 허가 관련 수수료, 수입 및 수출 처리 수수료
  - 물품 폐기 관련 수수료
  - 공개 입찰 참여 등록 및 환불 처리 수수료
  - 이의 신청 수수료, 법률 의견 요청 처리 수수료
  - 지적 재산권 기록 수수료
  - 새로운 신청 또는 갱신에 대한 등록 또는 인증 수수료, 문서 인증 관련 수수료, 문서의 공인 진실성 확인 수수료
  - AEO 신청 수수료, 원산지 증명서 처리 수수료
  - 세금 공제 증명서 수수료 등

38) KOTRA, 「필리핀 관세청, 신규 수수료 및 규제 도입」,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 n=244&bbsSn=244&pNttSn=21568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 n=244&bbsSn=244&pNttSn=215684), 검색일자: 2024. 11. 11.

- 해당 수수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AO 02-2024, [https://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24/05/2024CAO-02-2024\\_1.pdf](https://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24/05/2024CAO-02-2024_1.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 Ⅲ. 관세평가제도

#### 1. 개요

##### 가. 관세평가제도

-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함
  -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입국에 수출을 위해 판매되었을 시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소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필리핀은 GATT 제7조의 실시규정으로서 작성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을 도입하여 해당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과세 평가의 결정 기초를 거래가액으로 하여 공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자의적 또는 가공한 과세가액은 배제하도록 함
  - 관행에 적합한 간단명료하고 공평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국에 따른 차별은 배제하며 덤핑에 대항하는 조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함
  
- 필리핀은 CMTA 제7장 수입관세 및 세금 제1절 평가의 기초에서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16-2010(이하 16-2010)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자는 과세가격 결정 시, 다음의 제1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함<sup>39)</sup>

- 제1방법은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품의 90% 이상에 사용되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방법을 사용해야 함
  -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인 제2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3방법을 사용해야 함
  -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인 제3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4방법을 사용해야 함
  - 제4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시 수입물품의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 또는 가격을 합한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5방법을 사용해야 함
  - 제3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제6방법을 사용해야 함
  - 제2방법부터 제6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수입자가 요청한 후 필리핀 관세청장의 승인을 득하면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순서를 바꾸어 적용할 수 있음<sup>40)</sup>
- 단, 순서의 변경이 필리핀 관세청의 평가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승인됨

## 나. 관세평가 사전심사제도

-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CMTA 제7장 제1절에 규정된 물품의 세관 평가에 대한 특정 방법의 적용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sup>41)</sup>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서

39) CAO 16-2010 제3.1조

40) CAO 16-2010 제3.1조

41) CMTA 제1101조

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sup>42)</sup>

- 상품에 대해 구상한 평가 방법
- 청구된 평가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 거래의 성격에 대한 설명(계약 조건 등)
-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해당 관계가 계약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포함)
- 해당 평가 이슈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예를 들어,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구매 수수료인지 판매 수수료인지가 쟁점인 경우, 당사자의 역할 및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과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 라이선스 또는 로열티 계약서 및 판매 계약서를 포함해야 함)

□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일 최소 9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서를 받은 후 관세청장은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고지해야 함<sup>43)</sup>

- CMO 32-2021에 따라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공인된 대리인이 e-ARS시스템 (<https://ars.customs.gov.ph>)을 통해 전자적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관세청장은 관련 규칙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발급해야 함<sup>44)</sup>

-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 대상이 아닌 물품의 평가 방법 또는 신고된 과세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CMTA 제1106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과는 요청자에게 기밀로 간주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요청자가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는 통지와 함께 발행되며 결정은 3년간 유효함

---

42) CAO 03-2016 제3.2.2조

43) CAO 03-2016 제4.3조

44) CAO 03-2016 제3.4조

## 2.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필리핀으로 수출될 때 해당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된 가격이나 지불해야 할 가격임
  - 실제 지급된 가격 또는 지불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판매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하는 총 지급액을 의미함
  - 해당 지급은 금전의 형태가 아니어도 가능함(예를 들어 신용장(letters of credit)이나 유통 가능한 증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직접적인 지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도 가능하며, 간접적인 지급의 예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 물품이 판매될 때 지급된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필리핀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함
  - 수출을 위한 판매 거래 가치 방법에서 수출을 위한 판매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됨
  
- 수출을 위한 연속적인 판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물품이 필리핀으로 수출되기 전 최종 판매 가격이 거래가격으로 사용됨<sup>45)</sup>
  - 판매의 정의 관세평가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판매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WTO의 의견에 따르면 판매는 특정한 상업적 거래이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함
    -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업적 운영
    - 구매자가 특정 물품을 구매하기로 동의
    - 물품의 소유권을 대가와 교환하는 계약
    - 그 대가로 보상 또는 지불이 발생

45) CAO 16-2010 제3.2.1조-제3.2.2조



- 거래 당사자 모두가 상업적 거래임을 인정
-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판매로 간주하지 않음
  - 무료로 제공된 물품(예: 선물, 샘플, 판촉품)
  - 위탁 판매 물품
  - 구매되지 않고 수입된 후 판매되는 물품(예: 중개인이 구매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
  -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 아닌 지점에서 수입한 물품
  - 임대 계약을 통해 수입된 물품
  - 대여 형태로 수입되어 여전히 발송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물품
- 거래가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sup>46)</sup>
  - 구매자가 물품을 사용할 때 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대해 제한이 없어야 하며, 제한이 있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법률이나 필리핀 당국에 의해 부과된 제한
    - 물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을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예를 들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자동차를 지정된 날짜 이전에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가격 또는 판매가 특정 조건이나 고려 사항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구매자가 다른 물품을 특정 수량만큼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판매된 물품과 관련이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없어야 하며 만약 관련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 구매자와 판매자는 아래 같은 경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서로의 사업에 대해 임원 또는 이사로 있는 경우
    - 법적으로 인식된 사업 파트너인 경우
    - 고용주와 직원인 경우

---

46) CAO 16-2010 제3.2.3조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 서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둘 다 동일한 제3자에게 통제되는 경우
  - 법적 친족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거래가격 결정 시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될 수입품의 가격에 가산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sup>47)</sup>
-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될 수입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 구매 수수료는 제외
    - 컨테이너 비용
    - 인건비 또는 재료비를 포함한 포장 비용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수입품에 포함된 재료, 부품, 부속품 및 유사 항목, 수입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금형, 몰드 및 유사 항목, 수입품 생산에 소비된 재료, 필리핀 이외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 개발, 예술, 디자인 작업 및 계획, 스케치 등)
    - 구매자가 상품의 판매 조건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 수입품의 이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서 판매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
  - 수출 항구에서 필리핀 입국 항구까지의 수입품 운송 비용
  - 수출 국가에서 필리핀 입국 항구까지 수입품 운송과 관련된 하역 및 처리 비용
  - 보험 비용

---

47) CMTA 제701조

### 3.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

#### 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2방법)

- 제2방법은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제1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됨<sup>48)</sup>
  - 동일한 물품은 동일한 상업적 수준에서 유사한 수량으로 판매된 물품을 의미하며, 모든 면에서 평가 대상인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미함
  - 물품이 동일한 물리적 특성,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동일한 물품이 필리핀으로 수출될 때의 거래 가치를 기반으로 과세 가치를 산정하며, 해당 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한 시기 또는 유사한 시기에 수출된 물품이어야 함
    - 동일한 시점 또는 유사한 시점에 수출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45일 전후에 수출된 물품을 의미함
  
- 동일한 상업적 수준이나 수량으로 거래된 동일한 물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상업적 수준 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된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경우 상업적 수준과 수량 차이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하며 조정은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질 때 그 증거는 해당 조정이 타당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동일한 물품이 다른 상업적 수준에서 판매된 경우, 상업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동일한 물품이 다른 수량으로 판매된 경우, 수량 차이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상업적 수준과 수량이 모두 다른 경우에도,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48) CAO 16-2010 제3.3.2조

- 조정은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해당 조정이 합리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판매자가 수량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의 가격표가 유효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다른 수량으로 물품을 판매했다더라도, 해당 판매가 실제 상업 거래에서 사용된 가격표에 기반했다면, 이를 합리적 조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제3방법)

- 제3방법은 유사한 물품의 거래 가치를 사용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제1방법 및 제2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유사한 물품이 필리핀으로 수출된 시점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sup>49)</sup>
  - 유사한 물품이 동일한 상업적 수준에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상업적 수준과 수량 차이에 따른 합리적 조정을 통해 거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 유사한 물품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의미함<sup>50)</sup>
  -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구성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상업적으로 교환 가능해야 함
  - 수입물품과 같은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수입물품을 생산한 생산자와 동일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유사한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음<sup>51)</sup>
  - 필리핀에서 제공된 엔지니어링, 개발, 아트워크, 설계 및 스케치 작업이 포함된 물

49) CAO 16-2010 제3.4.1조 및 CAO 16-2010 제3.4.2조

50) CAO 16-2010 제3.4.3조

51) CAO 16-2010 제3.4.4조 및 제3.4.5조

품, 이러한 작업이 수입물품의 생산에 기여한 경우 해당 물품은 유사한 물품에서 제외됨

- 수입물품을 생산한 동일한 생산자가 아닌 다른 생산자에 의해 같은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도 유사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유사한 물품으로 평가되어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sup>52)</sup>
- 유사한 물품이 다른 상업적 수준 또는 다른 수량으로 판매된 경우, 상업적 수준이나 수량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sup>53)</sup>
  - 상업적 수준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함
  - 판매된 물품의 수량이 다른 경우, 수량 차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
  - 물품의 운송 방식이나 운송 거리가 다를 경우, 해당 차이에 따른 운송 비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필리핀 관세청은 유사한 물품이 같은 상업적 수준에서 비슷한 수량으로 판매된 경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상업적 수준에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된 물품이 없을 때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판매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sup>54)</sup>
  - 같은 상업적 수준에서 다른 수량으로 판매된 경우
  - 다른 상업적 수준에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된 경우
  - 다른 상업적 수준에서 다른 수량으로 판매된 경우
  - 조정은 상업적 수준과 수량 차이에 따른 변동을 반영해야 하며, 해당 조정이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조정을 할 때는 상업적 수준과 수량 차이에 따른 변동이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정이 합리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52) CAO 16-2010 제3.4.6조

53) CAO 16-2010 제3.4.7조

54) CAO 16-2010 제3.4.8조

- 판매자의 가격표나 상업적 기록이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조정을 위해서는 가격표가 실제 거래에서 사용된 유효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유사한 물품에 대한 여러 거래가격을 찾을 수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동일한 물품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물품에서도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을 의미함

#### 다. 국내판매 가격에 따른 결정방법(제4방법)

- 제4방법은 수입물품이 필리핀에서 판매된 경우에 적용되며, 물품의 판매 가격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며 수입물품이 필리핀 내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었을 때 판매된 물품의 가격에서 몇 가지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가격을 산출함<sup>55)</sup>
- 제4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sup>56)</sup>
  - 수입된 물품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물품이 필리핀 내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함
  - 물품의 판매는 수입된 물품의 수입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45일 전후의 기간이 해당됨
  - 구매자와 수입자 간의 관계가 없어야 함(구매자는 수입자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인물이어야 함)
  - 구매자는 물품의 생산이나 수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 필리핀 내에서 판매된 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sup>57)</sup>
  - 필리핀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판매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

---

55) CAO 16-2010 제3.5.1조

56) CAO 16-2010 제3.5.2조

57) CAO 16-2010 제3.5.3조

를 공제함

- 필리핀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 및 일반적인 비용을 공제함(이익과 비용은 동일한 종류나 유사한 물품을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물품이 필리핀 내에서 판매되기까지 발생하는 운송 비용, 보험 비용, 취급 비용 등을 공제함
  - 물품의 수입 및 판매 시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함
- 만약 수입물품이 필리핀 내에서 추가적인 가공이나 처리 후 판매된 경우 추가된 가공의 가치가 공제된 가치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데, 이때 공제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 표준이나 생산 공정을 기준으로 처리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음<sup>58)</sup>
- 일반적으로 추가 가공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정체성이 사라질 때는 제4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일부 상황에서는 수입물품이 추가 가공을 거쳐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제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sup>59)</sup>
- 수입물품이 필리핀 내에서 판매되는 최종 제품에서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라. 산정가격기준(제5방법)

- 제5방법은 산정(Computed Value)을 사용하여 수입물품의 과세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생산 비용, 이익 및 일반 비용을 더하여 산출된 가격을 기반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sup>60)</sup>

---

58) CAO 16-2010 제3.5.8조

59) CAO 16-2010 제3.5.9조

60) CAO 16-2010 제3.6.1조

- 과세가격은 생산에 소요된 관련 비용, 지출 또는 가치를 합산하여 결정함<sup>61)</sup>
  - 재료비, 가공비(물품의 제조 또는 다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포함함), 용기 비용, 포장 비용, 물품 생산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나 물품 비용, 필리핀 외부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 개발, 아트워크, 디자인 작업 등의 비용 (단, 이러한 비용이 생산자에게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됨)
  
- 필리핀 관세 당국은 필리핀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산출된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회계 기록이나 다른 문서를 제공할 의무를 강요할 수 없으나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는 필리핀 외부에서 검증될 수 있음<sup>62)</sup>
  - 해당 검증 과정은 생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국 정부에 사전 통보해야 함

#### 마. 합리적인 조정(제6방법)

- 제6방법은 다섯 가지 평가 방법(제1~제5방법) 중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 적용되며, WTO 1994 협정과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 및 일반 규정에 근거하여 필리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함<sup>63)</sup>
  
- 수입자가 요청할 경우, 필리핀 관세청은 제6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과세 가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결정에 사용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sup>64)</sup>
  
- 제6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sup>65)</sup>
  - 필리핀 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판매 가격을 사용한 과세가격 결정
  - 두 가지 대체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
  - 수출국의 국내 시장 가격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61) CAO 16-2010 제3.6.2조

62) CAO 16-2010 제3.6.10조

63) CAO 16-2010 제3.7.1조

64) CAO 16-2010 제3.7.2조

65) CAO 16-2010 제3.7.3조



- 생산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제5방법에서 이미 결정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한 생산 비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생산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 다른 국가로의 수출 가격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 최소 과세가격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 임의적이거나 허구적인 가격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 제6방법 사용 시에는 다섯 가지 방법의 원칙을 따르되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음<sup>66)</sup>
- 동일한 물품이 수입물품과 같은 시점에 수출되지 않았더라도, 수출 시점에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물품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음
  -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서 이미 결정된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유사한 물품이 수출된 시점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수출 시점이 다소 다르더라도 그 가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물품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서 이미 결정된 유사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
  - 제4방법에서 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음(예를 들어 수입 후 90일 내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운송 방식이나 다른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차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제6방법은 임의적이거나 허구적인 가격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과세가격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함<sup>67)</sup>

66) CAO 16-2010 제3.7.4조-제3.7.5조

67) CAO 16-2010 제3.7.6조

##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 1. 개요

#### 가. 품목분류

- 필리핀 표준 상품 분류(Philippine Standard Commodity Classification, 이하 'PSCC')를 사용하여 모든 수입 및 수출 상품에 대해 분류하고 있음
  - PSCC는 경제 분석, 투자 목적,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표준 통계 명명법으로 사용되며, 기존 무역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가 무역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위한 분류의 표준 체계로 사용됨
  - PSCC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발행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와 유엔통계국(UNSD)의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를 기반으로 하는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이하 'AHTN')을 통합하였음<sup>68)</sup>
    - AHTN은 ASEAN 10개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HS 8자리 기반 품목분류체계임
    - ASEAN 회원국들이 지역 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된 관세 명명법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에 채택되었으며, 이는 ASEAN 회원국들의 주요 거래 물품들을 포함하고 있음
  - 2022 PSCC는 '2022 필리핀 표준 상품 분류 승인 및 채택' 결의안 제13호 Re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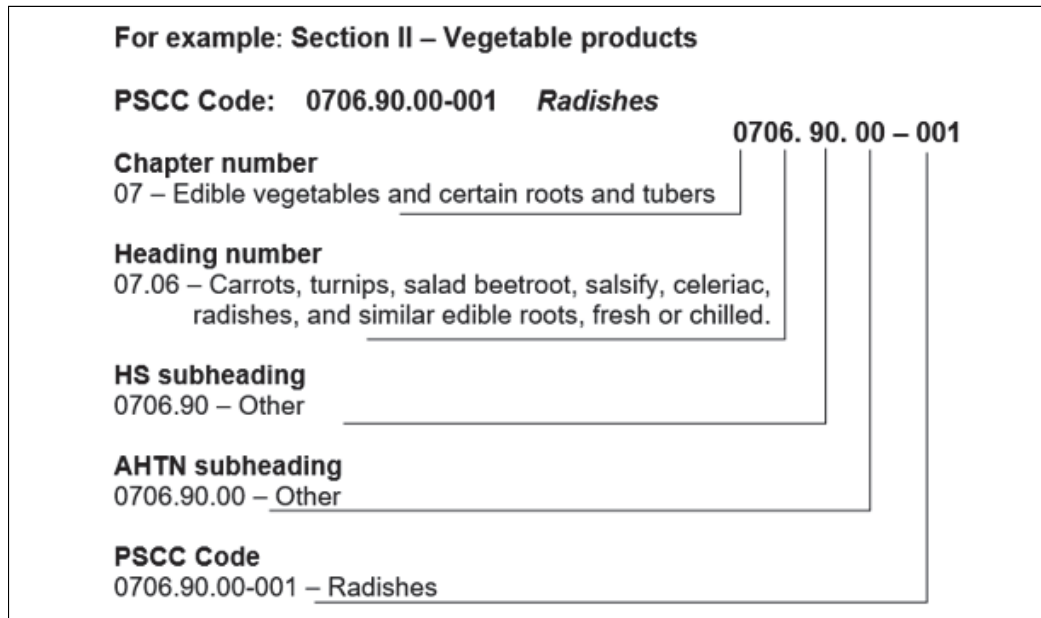
68) 필리핀 통계청, <https://psada.psa.gov.ph/pscc>, 검색일자: 2024. 10. 2.

No. 13 Series of 2022(Approving and Adopting the 2022 Philippine Standard Commodity Classification)를 통해 PSA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음<sup>69)</sup>

- 8자리 AHTN 코드 뒤에 추가적으로 3자리를 부여하여 총 11자리 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국가별, AHTN별로 필리핀 관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AHTN) 2022, <https://tariffcommission.gov.ph/tariff-book-2022> 또는 <https://finder.tariffcommission.gov.ph/search-by-code>
  - 국가별 확인 <https://finder.tariffcommission.gov.ph/search-by-country>

[그림 2-IV-1] 품목분류 예시



자료: 필리핀통계청, <https://psa.gov.ph/classification/pscc>, 검색일자: 2024. 10. 9.

69) 필리핀 통계청, <https://psa.gov.ph/classification/pscc>, 검색일자: 2024. 11. 25.

##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심사는 CMTA 제1100조에 따라 관세위원회가 발행하는 공식 결정으로, 수입 또는 수출 전에 신청자에게 AHTN에 따른 물품의 품목분류를 제공함<sup>70)</sup>
  - 결정 번호, 발행일, 상품명 및 상세 설명, 품목이 분류된 8자리 AHTN 코드, 최혜국(MFN) 및 특혜 관세율, 위원회 분류의 법적 정당성, 결정의 유효 기간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하나의 제품 또는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며 제품 또는 품목의 수입 또는 수출 최소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sup>71)</sup>
  -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는 해당 상품이 수입 및 수출 금지 또는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니므로 수입 및 수출이 금지에 해당되는 물품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이 관세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해야 함<sup>72)</sup>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받은 후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고지해야 함<sup>73)</sup>
  - 신고된 물품이 품목분류에 대해 분쟁 중인 경우, 수입자, 수출자 또는 관세청은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판정을 받아야 함
  - 품목분류에 관한 위원회의 판정은 재무부 장관이 달리 판정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며 5년간 유효함<sup>74)</sup>
  - 사전심사의 신청은 TCIS-OAS 2.0(<https://tcis.tariffcommission.gov.ph/>)에서 전자

70) 필리핀 관세위원회, <https://tcis.tariffcommission.gov.ph/>, 검색일자: 2024. 9. 26.

71) 상동

72) CMTA 제1100조

73) CO(Commission Order) 2017-01

74) CMTA 제1100조

적으로 가능하며, 결과에 대한 내용은 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s://tariffcommission.gov.ph/tcc-rulings-issued>)에서 확인 가능함

## 2. 관세율제도

### 가. 관세율 수준

- WTO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관세율은 6.0%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9.6%와 5.5%로, 비농산물보다 농산물의 관세 수준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23년 수입액 기준 전체 품목의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은 5.4%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12.4%와 4.3%로 조사됨

〈표 2-IV-1〉 평균 MFN 관세율 및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기준연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평균 MFN 관세율	2022	6.0	9.6	5.5
무역가중평균 관세율	2022	5.4	12.4	4.3
수입액(십억 달러)	2021	145.9	20.5	125.4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4*, 2024, p. 153.

- 〈표 2-IV-2〉의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양허관세 기준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비율은 비농산물이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비율은 농산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MFN 실행관세율 기준 3.6%이며, 비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MFN 실행관세율 기준 14.7%, 양허관세 기준 14.7%임

- 2022년 수입액 기준 농산물의 19.6%가 무관세를 적용받은 반면, 비농산물의 50.0%가 무관세 적용을 받음
- 수입액 기준 농산물의 약 72%에 비농산물의 약 90%에 1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음
- 50% 초과 고율 관세 구간은 농산물로만 구성되어 있음
- 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양허세율 기준으로 25~50%의 관세율이 약 81.7%의 품목에 적용되었으며 비농산물의 경우 양허세율 기준으로 25~50%의 관세율이 약 24.3%의 품목에, 15~25%의 관세율이 약 25%의 품목에 적용되었음

〈표 2-IV-2〉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단위: %)

구분		무관세	0%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5% 이하	2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0	2.8	5.3	0.7	8.5	81.7	1.1	0
	2023년 MFN 실행관세	3.6	45.8	28.6	9.3	3.5	8.8	0.3	0
	2022년 수입액	19.6	20.3	31.8	10.9	2.3	14.6	0.7	0
비 농 산 물	WTO 양허관세	5.7	0.0	7.3	0.3	25.0	24.3	0	0
	2023년 MFN 실행관세	14.7	48.4	23.5	11.8	1.0	0.7	0	0
	2022년 수입액	50.0	23.6	15.6	5.2	0.6	5.1	0	0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4*, 2024, p. 188.

- 〈표 2-IV-3〉의 품목별 관세율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평균 19.9%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동

물제품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평균 11.4%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의류로 나타남

- WTO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평균 45.3%가 적용되는 음료, 담배 제품이며, 설탕 및 과자류 40.9%, 과일 및 채소, 식물제품 39.2% 등의 순임
  - 비농산물의 경우 가죽, 신발 등에 평균 33.9%의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의류 30%, 직물 27% 등의 순임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농산물 중 과일 및 채소, 식물제품, 커피, 차, 설탕 및 과자류, 음료, 담배, 면섬유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며, 비농산물의 경우 의류에 대해서만 무관세가 적용되었음

〈표 2-Ⅳ-3〉 품목별 관세율 수준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무관세	최대	평균	무관세	최대	비중	무관세
동물제품	37.5	0	50	19.9	6.5	45	1.6	0.2
낙농제품	27.9	0	40	3.8	7.3	10	1.2	7.1
과일 및 채소, 식물제품	39.2	0	50	10.3	0.5	40	0.8	0
커피, 차	37.2	0	50	10.3	0	45	0.7	0
곡물 및 그 조제품	37.3	0	50	10.4	10.2	50	4.6	22.1
종자, 기름	38.5	0	60	5.4	4.1	15	1.6	0.2
설탕 및 과자류	40.9	0	50	19.1	0	65	0.5	0
음료, 담배	45.3	0	50	8.0	0	15	0.8	0
면섬유	10.0	0	10	2.0	0	3	0.0	0
기타 농산물	28.8	0	60	4.1	4.5	35	2.2	75.2
어류 및 수산물	26.7	0	50	8.8	0.8	15	0.6	4.6
광물, 금속	25.6	0.2	50	4.6	8.1	20	15.5	22.1
석유제품	-	-	-	1.0	66.7	3	12.5	100.0
화학제품	19.2	1.3	50	3.5	2.5	30	10.7	7.1

〈표 2-Ⅳ-3〉의 계속

(단위: %)

품목	WTO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액 기준	
	평균	무관세	최대	평균	무관세	최대	비중	무관세
목제품, 종이제품 등	24.1	1.0	50	6.8	9.5	30	2.3	2.0
직물	27.0	0	50	9.1	0.3	20	1.2	0.7
의류	30.0	0	30	14.9	0	15	0.4	0
가죽, 신발 등	33.9	0	50	6.8	1.3	20	1.1	4.2
비전기기계	17.8	14.0	50	1.3	62.5	15	7.8	64.0
전기기계	14.9	51.0	50	3.1	43.3	30	22.6	84.5
운송기기	17.8	6.5	50	8.7	15.5	30	7.8	7.0
기타 제조업 제품	19.5	40.5	50	4.4	22.3	15	3.4	45.2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4*. 2024, p. 153.

## 나. 관세율 종류

-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율(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이하 ‘CEPT’)과 기본관세율(Most Favored Nation, 이하 ‘MFN’)로 나눌 수 있음
  - CEPT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임
  - MFN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FTA가 체결되어 있을 시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NEDA’)의 권한위임에 따라 대통령은 탄력적으로 수입 관세율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의 형태 또한 수정할 수 있음<sup>75)</sup>
  - 관세 형태를 수정할 때는 가장 최근의 대표 기간 동안 주요 경쟁 외국으로부터의

75) CMTA 제1608조



- 수입품에 대해 적용된 부과율에 맞춰 비율을 조정함
- 기존 보호 관세율을 인상, 인하 또는 철폐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세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필요에 따라 수입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모든 수입품에 세율 10%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관세를 부가할 수 있음
  - 대통령의 명령은 30일 후에 효력을 발휘하며, 10%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관세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 불공정 무역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sup>76)</sup>
- 반덤핑은 Republic Act No. 8752 및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of RA 8752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세이프가드는 Republic Act No. 8800 및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of RA 8800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 상계관세는 Republic Act No. 8751 및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of RA 8751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필리핀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목재 제품(통나무, 목재, 베니어, 합판) 등에 대해 선적 시점의 총 FOB 가격에 대해 통용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2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함<sup>77)</sup>
- CMTA에서는 관세 및 세율 적용 대상 수출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1978년 관세 및 관세율법(Tariff and Customs Code of 1978)」으로 알려진 대통령령 제1464호(Export Products Subject to Duty and Rates of Presidential Decree No. 1464) 제514조의 수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본 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76) CMTA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77) CMTA 제1612조

## V. 감면 및 환급

### 1. 개요

- 필리핀의 관세 감면 및 유예에 대해서는 CMTA 제8장 제1절 및 Customs Administration Order 6-2016(이하 CAO 6-201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관세청이 요구하는 형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납부가 면제됨
  -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본법 본 조항에 따라 조건부로 면제된 수입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 허용하지 않거나 완전히 철회할 수 있음
  - 해당 물품이 판매, 교환, 대여되거나 원래 의도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해당 물품이 본법의 혜택 없이 통관되었을 때 납부해야 했던 세금, 관세 또는 기타 비용이 사전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이 몰수되며 해당 수입은 관세법에 대한 사기 행위로 간주함
  - 법원 명령에 따른 판매나 사망자의 재산 청산을 위한 판매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는 별도로 세금, 관세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해야 함
  
- 필리핀은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신청에 따라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환급하는 관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필리핀의 관세 환급은 CMTA 제9장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Customs Administration Order 16-2023(이하 CAO 16-2023) 및 Customs Memorandum Order 4-2019(이하 CMO 4-2019)에서 설명하고 있음

## 2. 감면의 종류

### 가. 재수입 및 재수출

- 수리, 가공 또는 재조정을 위해 필리핀으로 반입된 물품으로, 수리가 완료된 후 재수출될 예정인 물품은 관세가 면제됨<sup>78)</sup>
  - 단 세관은 수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되거나 해당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납부될 것을 조건으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수리, 가공 또는 재조정을 위해 수출된 후 가치의 변화 없이 원래 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은 면세됨<sup>79)</sup>
  - 단 재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상승한 가치만큼 해당 재수입된 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과세됨
  
- 필리핀에서 수출되었고, 가치 변동 또는 물품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필리핀 제품은 관세 면제로 재수입될 수 있음<sup>80)</sup>
  
- 그 밖에 필리핀 시민이 직업 또는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기구, 장비, 도구 등도 면세되며, 외국에서 포장된 필리핀 제품을 수출할 때 사용된 외국산 컨테이너도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될 수 있음
  - 단 이러한 필리핀 제품이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 재수입 시 해당 관세가 부과됨<sup>81)</sup>

---

78) CMTA 제800조(d)

79) CMTA 제800조(y)

80) CMTA 제800조(u)

81) CMTA 제800조(u)

## 나. 거주자 관련 물품

- 귀국하는 거주자의 개인 및 가정용품, 포함하여 가전제품, 보석류, 귀중품 및 기타 사치품으로, 출발 전에 정식으로 신고 후 선서하여 지역징수원이 식별 물품으로, 귀국 거주자의 물품은 면세됨<sup>82)</sup>
  - 또한 귀국 시 동반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없을 경우, 귀국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으로서 해외에서 필리핀 거주자에 의해 구매된 물품은 면세됨
  - 이 물품은 체류 중 편안함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차량, 선박, 항공기 및 동물과 같은 사치품은 포함되지 않음
  
- 귀국 거주자란 해외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한 국민을 의미하며, 귀국 거주자는 다음의 조건 충족 시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해 세금 및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sup>83)</sup>
  - 상업적 수량이 아닐 것
  - 교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것이 아닐 것
  - 물품의 FOB 또는 FCA 가치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0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람의 경우 PHP 35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체류한 사람의 경우 PHP 250,000
    - 5년 미만 체류한 사람의 경우 PHP 150,000
  
- 해외 필리핀 노동자는 귀국 시 가전제품 및 내구성 있는 물품을 관세 및 세금 면제하에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으며, 이때 한 종류의 물품은 1개로 제한됨<sup>84)</sup>
  - 물품은 귀국과 동시에 동반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없을 경우, 귀국 후 60일 이내에 도착해야 하며, 여권 원본을 제시해야 함

---

82) CMTA 제800조(f)

83) CMTA 제800조(f)

84) CMTA 제800조(f)

- 단 개인 및 가정용품의 FCA PHP 150,000를 초과하거나, 이 조항에서 제공된 면세 가전제품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함
- 필리핀 거주자, 해외노동자 또는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귀국하는 경우 개인 및 가정용품만 포함된 발리크바얀 박스(balickbayan boxes)를 필리핀으로 가져오거나 가족 및 친척에게 보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됨<sup>85)</sup>
  - 단 발리크바얀 박스는 상업적 수량으로 들어오거나 교환, 판매 또는 대여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FCA PHP 15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발리크바얀 박스 면제 혜택은 한 해에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허용된 면세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됨

#### 다. 과학적 목적, 샘플 등

- 과학적, 실험적 번식 또는 증식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 및 식물은 면세됨<sup>86)</sup>
  - 단 살아있는 나무, 새싹, 식물, 이끼, 알뿌리, 덩이줄기 및 씨앗은 정부 또는 허가된 기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수입될 수 있음
  - 또한 번식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은 공인된 품종이어야 하며, 해당 품종의 기록 또는 등록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농업부 동물산업국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샘플, 실용적인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모델, 그리고 신약 소개를 목적으로 필리핀 시장에 한 번만 수입되는 의약품 샘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시 면세됨<sup>87)</sup>
  -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샘플(즉 수입된 샘플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거나 테스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85) CMTA 제800조(g)

86) CMTA 제800조(s)

87) CMTA 제800조(r)

- 수입되는 모델은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야 하며, 제품 소개나 교육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신약 소개를 목적으로 필리핀 시장에 처음 수입되는 의약품 샘플의 경우에만 면세됨
- 모든 상업적 샘플 수입은 재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의약품 샘플의 경우 보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샘플은 필리핀에서 구할 수 없는 신약이어야 함
- 사전에 제대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표시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보석류와 같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업적 샘플은 해당 FCA PHP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면세됨
- 금이나 보석류와 같은 고가의 샘플은 쉽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샘플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일 수입 건당 FCA PHP 5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PHP 5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
- 만약 상업적 샘플의 전체 가치가 PHP 50,000를 초과할 경우, 수입자는 그중 PHP 50,000 이하의 물품을 선택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용으로 수입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라. 영사 및 구호 물품

- 외국 대사관, 공관 및 기타 외국 정부 기관의 공식 용도로 수입된 물품으로 해당 외국 정부가 필리핀의 해당 기관에 동일한 특권을 제공할 경우에만 면세됨<sup>88)</sup>
- 또한 외국 대사관, 공관, 영사관 또는 외국 정부의 다른 대표의 개인 또는 가족 용도로 수입된 물품도 면세됨
- 이러한 특권은 필리핀 정부와 해당 국가 간의 특별 협정에 따라 제공되며, 외무부의

---

88) CMTA 제800조(i)

공식 요청에 의거하여 재무부 장관의 특정 지시에 따름

- 필리핀 정부 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구호 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은 후 면세될 수 있음<sup>89)</sup>
  - 기증된 물품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어야 하며 물품과 관련된 단체는 사회복지부, 교육부, 보건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마. 전시, 영상 관련 물품 등

- 공공 오락을 위해 사용되거나 공공 전시회, 경연 대회 또는 상을 위해 전시 또는 경쟁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및 장치로 사진 투영 장비와 그 부속품을 포함하며, 세관 검사 및 평가 후 물품 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공한 후 사용할 수 있음<sup>90)</sup>
  - 3개월 이내에 수출되거나 해당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납부되어야 하며, 세관은 기간 만료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기술 및 과학 영화가 수익 목적이 아님에도 기술, 문화 및 과학 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세금이 면제되나 영화가 수익을 위해 상영될 경우, 해당 수익은 몰수 대상이 되며 처벌받을 수 있음
- 필리핀 내에서 위치 촬영을 위해 외국 영화 제작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물품으로, 세관의 검사 및 평가 후 100%에 해당하는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공한 후 사용할 수 있음<sup>91)</sup>
  - 3개월 이내에 수출되거나 해당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납부되어야 하며, 세관은 기간 만료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89) CMTA 제800조(m)

90) CMTA 제800조(j)

91) CMTA 제800조(k)

- 필리핀 시민이 해외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화 필름, 필리핀 등록 제작사가 해외에서 노출한 필름으로, 주요 배우와 예술가가 필리핀인인 경우, 수입자의 진술서 및 필름이 필리핀에서 이전에 수출된 필름과 동일하다는 확인서가 제출되면 면세받을 수 있음<sup>92)</sup>
- 배우 및 예술가는 사진 카메라 또는 사운드 녹음 장치를 조작하여 필름을 제작하는 사람을 포함함

#### 바. 유해, 수상, 문학적 물품 등

- 메달, 배지, 트로피 또는 상으로 수여된 소형 물품 및 명예상으로 받은 물품은 면세됨<sup>93)</sup>
- 인간 유해, 뼈 또는 재가 담긴 관 또는 항아리, 사망자의 개인 및 가정용품(차량 제외)은 PHP 1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됨
- 경제, 기술, 직업, 과학, 철학, 역사 및 문화 서적 또는 출판물, 성경, 미사책, 기도서, 코란, 하디스와 같은 종교 서적 및 유사한 종교 자료는 면세됨<sup>94)</sup>
  - 이 법 발효 전 수입되었지만 아직 세관에 의해 반출되지 않은 서적 또는 출판물은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경제적, 기술적, 직업적, 과학적, 철학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해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면 면세됨
- 국제 교육, 과학 및 문화 자료의 수입에 관한 협정(IAESCM) 또는 필리핀이 체결한 기타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교육, 과학 및 문화 자료는 면세됨<sup>95)</sup>

---

92) CMTA 제800조(k)

93) CMTA 제800조(e)

94) CMTA 제800조(t)

95) CMTA 제800조(t)



### 사. 여행자 및 승무원 물품

- 여행자 또는 관광객이 동반한 의류, 장식품, 화장품, 휴대용 도구 및 기구, 극장 의상 및 유사한 물품으로, 필리핀 여행 전후 적절한 시간 내에 도착한 경우 해당 여행자의 여정에 따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면세됨<sup>96)</sup>
  - 단 이 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물품이나 교환,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관은 100%에 해당하는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조건으로 물품을 3개월 이내에 수출하게 하거나 해당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은 기간 만료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 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외국 컨설턴트 및 전문가가 필리핀 정부에 고용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그들의 직원 및 동반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들어온 개인 및 가정용품은 그들의 직업, 지위 또는 직급에 맞는 수량과 종류로, 교환,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sup>97)</sup>
  - 해당 물품은 세관이 확인을 마친 후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사용하며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출되지 않으면 해당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부과됨
  - 세관은 기간 만료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 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필리핀 외부에서 항해 또는 비행하는 동안 필요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필수 물품, 또는 승객 및 승무원이 사용할 물품은 세관 감독 하에 수입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면세됨<sup>98)</sup>

---

96) CMTA 제800조(h)

97) CMTA 제800조(i)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승객 또는 승무원이 선상에서 사용할 물품도 포함되나 외국 항구 또는 공항에서 남은 잉여 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됨

**아. 선박 취득품, 선박 및 항공기 관련 물품**

- 필리핀 등록 어선이 잡거나 채취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양 동물, 해조류, 생선 기름, 알과 같은 수산물의 경우 면세됨<sup>99)</sup>
  - 다만 해당 수산물은 그러한 어선이나 그에 부착된 선박에 의해 수입되어야 하며, 외국 영토에 하역되지 않거나 조건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적만을 위해 하역되어야 함
  
- 현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 구조용 장비는 식별된 후 수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되거나 해당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납부될 것을 조건으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한 후 사용할 수 있음<sup>100)</sup>
  - 다만 세관은 기간 만료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 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필리핀에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 비용(사용된 물품의 가치는 제외)으로, 필리핀 내에서 적절한 수리 시설이 제공되지 않거나, 항해 중 또는 비행 중 악천후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안전, 해상 적합성 또는 항공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항구에서 수리를 받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세관에 증명한 경우 면세됨<sup>101)</sup>
  
- 선박이 사고 또는 유기된 후 2년이 지난 후에 회수된 물품 또는 구조된 물품, 또는

---

98) CMTA 제800조(o)  
 99) CMTA 제800조(a)  
 100) CMTA 제800조(b)  
 101) CMTA 제800조(c)

필리핀 영해 내외에서 유기된 외국 선박의 일부 또는 장비는 면세되거나 이러한 물품이 2년 이내에 회수된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됨<sup>102)</sup>

- 항공기 및 선박 장비, 기계, 부품, 기내식, 항공유 및 항공 연료는 필리핀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면세되거나 이러한 물품이 필리핀 내에서 합리적인 수량과 품질로 제공되지 않을 때만 면세될 수 있음<sup>103)</sup>
- 외국 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긴급 수리를 위해 수입된 부품은 지역징수원에게 해당 부품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해 또는 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증명할 경우 면세됨<sup>104)</sup>

#### 자. 기계, 컨테이너, 트레일러 새시 등

- 새로운 광산 또는 재가동되는 광산에서 사용하는 기계, 장비, 생산 도구, 광석을 판매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 예비 부품, 물자, 액세서리, 폭발물, 화학물질, 운송 및 통신 시설은 면세됨<sup>105)</sup>
  - 환경 및 천연 자원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광산 및 지질국 국장의 추천을 받아 인증되어야 함
  - 실제 판매 가능한 광물 제품의 첫 상업 생산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이러한 물품이 필리핀에서 합리적인 수량, 품질,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광산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물품이어야 함
- 또한 농업 또는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 및 산업 회사가 수입한 항공기 및 해당 항공기의 부품과 액세서리는 면세될 수 있음<sup>106)</sup>

---

102) CMTA 제800조(p)

103) CMTA 제800조(v)

104) CMTA 제800조(x)

105) CMTA 제800조(w)

- 이 경우 필리핀 농업부 또는 무역산업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농업 또는 산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물품이어야 함
  
- 해운 회사가 독점적으로 컨테이너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수입한 트레일러 새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한 후 1년 동안 면세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해마다 지역징수원의 승인을 받아 연장될 수 있음<sup>107)</sup>
  - 해운 회사가 수입한 트레일러 새시는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여야 하며, 육상 교통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이는 수입된 트레일러가 필리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 트레일러 새시가 수입된 후, 세관 감독을 위해 일정한 감독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지역 지역징수원이 정하게 됨
  - 해당 비용은 지역징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불해야 수입된 트레일러 새시를 사용할 수 있음
  - 트레일러 새시가 사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수입된 물품을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함
  
- 트레일러 새시는 수입된 후 1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으나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트레일러 새시는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필리핀 밖으로 재수출해야 함<sup>108)</sup>
  - 재수출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106) CMTA 제800조(w)

107) CMTA 제800조(z)

108) CMTA 제800조(z)

### 3. 관세 환급

#### 가. 수출 관련 환급

- 선박 추진에 사용된 연료, 전력 생성 및 도시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류 및 역청 광물에서 얻은 원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환급됨<sup>109)</sup>
  - 필리핀으로 수입된 모든 연료로, 외국과의 무역 또는 연안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추진에 사용되는 경우, 법이 부과한 해당 연료에 대한 관세의 최대 99%에 해당하는 환급 또는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이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청장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공제됨
  - 비전력 공급업체가 수입한 원유 중 전력 생성과 도시가스 제조를 위해 전력 공급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판매된 원유에 대한 관세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환급 또는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이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청장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공제됨
  
- 필리핀에서 제조된 상품(수입 자재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포장, 라벨링, 마킹된 경우 포함)의 수출 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또는 세액 공제가 허용됨<sup>110)</sup>
  - 수출된 상품 제조에 수입 자재가 실제로 사용된 것과 그 양, 가치, 납부된 관세 금액이 입증되어야 함
  - 환급 또는 공제된 관세는 사용된 수입 자재에 대한 납부 관세 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입 당시 수입 자재에 대해 경쟁력 있는 국내 생산 대체품이 없다는 인증에 대한 필리핀 경제개발청의 결정이 있어야 함

---

109) CMTA 제900조 (A,B)

110) CMTA 제900조 (C)

- 동일한 수입 자재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함
- 적격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 청구는 청구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지급해야 함<sup>111)</sup>
  - 단 「투자 인센티브법(Investment Incentives Act)(공화국 법률 제5186호)」 또는 「1970년 수출 인센티브법(Export Incentives Act of 1970)(공화국 법률 제6135호)」하에 이미 수입 원자재 및 공급품에 대해 관세 세액 공제를 받은 등록된 기업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중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환급 또는 세액 공제 청구 및 신청은 소멸 시효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내에 청구 권리가 소멸됨
  - CMTA 제900조 (A)와 (B)항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및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CMTA 제900조 (C)항의 경우,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및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해당 내용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청장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적용됨

## 나. 기타 환급

- 물품이 소비를 위해 아직 반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세관 절차에 배정된 경우, 다른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환급받을 자격 또한 상실됨<sup>112)</sup>
  -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이 포기되었거나, 세관이 물품을 상업적으로 무가치하게 판단하거나 파괴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함

---

111) CMTA 제901조

112) CMTA 제904조

- 물품이 사고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회복할 수 없이 손실된 경우, 파괴 후 남은 폐기물 또는 스크랩은 소비에 포함될 경우 해당 스크랩에 적용되는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이 있는 경우
-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입 중 손상 또는 악화로 인해 발생한 관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세는 관련 세관원이 결정한 실제 수입량에 대해 부과됨<sup>113)</sup>
- 관세청장과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조건에 따라, 결함이 있거나 수입 또는 수출 당시 합의된 사양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및 환급이 허용됨<sup>114)</sup>
- 해당 물품은 공급업체나 공급업체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물품이 수입 국가에서 가공되거나 수리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기간 내에 재수출된 경우
    - 물품이 수출 국가에서 가공되거나 수리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기간 내에 재수입된 경우
    - 재수출 또는 재수입 대신, 세관의 감독하에 물품을 포기하거나 파괴하거나 상업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포기, 파괴 또는 상업적 무가치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관세 감면 또는 환급의 모든 경우에 세관 공무원은 발견된 사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신고에서의 차이를 시정해야 함<sup>115)</sup>

---

113) CMTA 제905조

114) CMTA 제909조

115) CMTA 제911조

### 다. 관세 환급절차

- 신청 처리는 관세 환급으로만 제한되며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와 같은 내국 세금이 국세청에 제출된 관세 환급 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은 내국 세금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납부한 관세 부분만 처리함<sup>116)</sup>
  - 내국세 환급 청구는 내국세청(BIR)에서 발행한 규칙 및 규정을 따름
  
- 관세 환급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sup>117)</sup>
  -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무역산업부(DTI) 등록 증명서
  - 특정 개인에게 관세 환급 청구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이사회 결의서/공증된 장관 증명서
  - 공인 서명자 목록 및 해당 표본 서명
  - 과학기술부(DOST) 산하 산업기술개발원(ITDI)에서 제공한 최신 환급 계산 방식
  
- 관세 환급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sup>118)</sup>
  - 과학기술부(DOST) 산하 산업기술개발원(ITDI)에서 제공한 최신 환급 계산 방식
  - 청구인이 수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증명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물품신고서
    - 선하증권
    - 상업 송장
    - 수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경우, 수입자가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벌크 배송에 대한 LPSR(Load Port Survey Report) 또는 DPSR (Discharge Port Survey Report)

---

116) CMO 16-2023 제3.3조

117) CMO 16-2023 제4.1.1조

118) CMO 16-2023 제4.1.2조의 C



- 수출증명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sup>119)</sup>
  - 건설 수출의 경우 판매 송장 또는 배송 영수증
  - 은행 송금을 통한 결제의 경우 공식 영수증, 신용 메모 또는 기타 확인된 송금 증빙 서류
  - 구매 주문서 및 배송 영수증
  - CHS-현장 사무소가 수출 항구 부속서 B에서 증명한 수출입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선적 정보 시트
  - 정규 체계를 사용한 계산표
  - 직접 및 간접 수출의 경우 수출 일정표 또는 판매 또는 구매 일정표
  
- 관세 환급 청구는 필요한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완전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만 처리되며 CAO 04-2019에서 처리 수수료를 확인 가능함
  
- 수출은 수입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환급 또는 세액 공제 청구는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sup>120)</sup>
  - 청구인은 6개월이 경과하기 30일 전에 청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 6개월이 경과하기 30일 전에 요청해야 하고 실제 청구 기간은 수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관세 환급 청구가 다수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경우, 규정 기간은 최초 수입일 또는 최초 수출일로부터 계산함(해당되는 경우)
  - 관세 환급 청구는 일반 세출법(GAA)의 특별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세금 공제 증명서(TCC)의 형태로 발급되며 발급된 세금 공제 증서의 유효 기간은 5년임
  - 추가로 5년 동안 재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TCC의 유효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19) CMO 16-2023 제4.1.2조의 C

120) CMO 16-2023 제3.5조

- 관세청에서 회사, 공장 및 그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된 원자재에서 수출된 제품까지 현지 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때까지는 최초 청구인의 관세 환급 청구는 처리되지 않음<sup>121)</sup>
- 회사, 공장 및 그 시설에 대한 검사는 필요한 경우 기존의 청구인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음

---

121) CMO 16-2023 제3.10조

## VI. 원산지제도

### 1. 원산지제도<sup>122)</sup>

- 원산지제도는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 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특혜 원산지(Preferential origin) 제도로 분류할 수 있음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무역 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됨
  - 덤핑 관세 및 쿼터와 같은 상업 정책의 조치 및 수단의 시행
  - 수입 제품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또는 최혜국대우 적용 여부 결정
  - 무역 통계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목적
  - 라벨링 및 표시 요건의 적용
  - 공공 조달 및 특허 등
  
-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특정 국가 사이에 관세 특혜를 제공하는 지역 간 협정 등 특정 국가 군을 대상으로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협정을 맺은 회원국 간 물품 수출입 시 특정 물품이 특혜 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각 지역 별 무역협정 대상국 또는 지역 또는 양자 간 무역 협정에 따라 지정됨

---

122) Tariff Commission, "Rules of Origin: Primer," 연도 없음.

- 특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 및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분류됨
- 완전 생산 기준은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다음 제품 카테고리는 수출국에서 완전히 획득된 것으로 간주함
  - 해당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해당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해당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사냥 또는 낚시로 얻은 제품
  - 바다 낚시 및 그 선박이 바다에서 채취한 기타 제품에서 얻은 제품
  - 바다 낚시 및 그 선박이 바다에서 채취한 기타 제품에서 얻은 제품으로만 제조한 제품
  - 토양 또는 해저에서 추출한 광물 제품
  - 원자재 회수에만 적합한 중고 물품
  - 해당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작업으로 인한 폐기물 및 스크랩
  - 상기에 명시된 제품에서 독점적으로 얻은 제품
-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 세 번 변경기준, 기타 일부 상품에 대한 특별한 제품별 규칙이 있음
- 역내 부가가치 기준(RVC)은 특정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특정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거나 특정국 산 이외 원재료 가치가 특정 비율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음
  - 역내 부가가치 산정 방법은 원재료, 간접비 및 이윤의 합계를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나눈 직접법과 FOB에서 비원산지재료가치(VNM)를 뺀 금액을 FOB로 나누는 공제법이 있음

- 역내 부가가치 기준 적용을 위한 보충적 기준으로, 누적 기준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누적 및 부분 누적 기준을 사용함
  - 전체 누적 기준은 생산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한 국가들의 가치를 전부 누적하여 원산지로 인정함
  - 부분 누적 기준은 FTA 체약국 중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원재료 혹은 가공 가치만 누적하여 원산지로 인정함
  
- 간접 재료, 액세서리 및 예비 부품, 포장재 또는 용기는 다음과 같이 취급됨
  - 연료, 공구, 금형 및 금형, 윤활유, 그리스, 배합 재료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장비 및 용품, 촉매 및 용제 등 간접 재료는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물이지만 상품의 일부를 형성하지는 않음
  -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액세서리, 예비 부품 및 공구는 (i) 액세서리, 예비 부품 및 공구가 함께 수입되는 물품 별도로 송장이 발행되지 않았고, (ii) 액세서리, 예비 부품 및 공구의 수량과 가격이 수입물품의 통상적인 가격인 경우 원산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음
  - 상품이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고 소매 판매를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 재료 또는 용기가 품목분류(HS) 통칙 제5호에 따라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포장 재료 또는 용기는 원산지 상품이 충족해야 하는 품목별 규정의 관세율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RVC가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재료 및 용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됨
  
- 세번변경기준은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기준 단위의 HS코드가 다르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CC(2단위), CTH(4단위), CTSH(6단위)로 나뉨
  
- 세 번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최종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반적으로 7~15% 범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 허용 규정(de minimis)을 적용할 수 있음

- 원산지 부여에 사용되는 기준에 관계 없이 다음 작업은 제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함
  - 운송 및 보관 중에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건조, 냉장, 소금 첨가 등)
  - 선별, 분류 또는 매칭, 세척, 도색 또는 절단으로 구성된 단순 작업
  - 화물의 포장 및 분해, 조립의 변경
  - 병, 플라스틱, 봉지, 상자 및 기타 모든 단순 포장 작업의 단순 슬라이스, 절단, 재포장 또는 배치
  -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또는 기타 구별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
  - 제품의 단순 혼합
  -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 제품의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행위
  -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 제품의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행위를 제외한 상기에 명시된 두 개 이상의 작업의 조합
  - 동물 도살
  
- 협정별 원산지에 관한 규정 내용은 필리핀 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s://tariffcommission.gov.ph/>) 및 필리핀 통상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dti.gov.ph/>)의 해당 협정문에서 확인 가능함

## 2. 원산지 사전심사

-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해당 특혜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이 원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sup>123)</sup>

- 사전심사 요청이 진행 중인 무역 거래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판정 요청은 해당 수입일(물품신고 접수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함<sup>124)</sup>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은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sup>125)</sup>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일 최소 9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심사 신청서를 받은 후 관세청장은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고지해야 함(관세평가 사전심사와 동일)<sup>126)</sup>
  - CMO 32-2021에 따라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공인된 대리인이 e-ARS시스템(<https://ars.customs.gov.ph>)을 통해 전자적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사무국은 제공될 정보, 사용할 형식 및 요청에 대한 서류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요청은 거부되고 요청자에게 반환됨<sup>127)</sup>
  - 요청에 누락된 정보를 명시하고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면 명령서가 요청자에게 발송됨
  
- 관세청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청서 접수를 승인해야 하며 사전심사 요청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언제든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sup>128)</sup>
  
- 이전 심사에 대한 재검증 요청은 사전심사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에서는 사전 판정 재검증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

---

123) CMTA 제1200조

124) CAO 03-2016 제4.2.1조

125) CMTA 제1200조

126) CAO 03-2016 제4.3조

127) CAO 03-2016 제4.2.2조 및 제4.2.3조

128) CAO 03-2016 제4.4.2조

- 가 요건을 요구할 수 있음<sup>129)</sup>
  - 관세청은 사전 판정 또는 재검증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판정 또는 재검증을 발급해야 함
  - 영업일 기준으로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추가 서류 또는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심사에 대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sup>130)</sup>
  - 해당 사안이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행정심사의 대상 또는 사후 허가 심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경우
  - 동일한 요청 당사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 판정 요청을 이미 제출한 경우, 대리인이 먼저 제출한 요청은 당사자가 나중에 제출한 요청에 대해 거부됨
  - 동일한 상품에 대한 사전 판정이 동일한 요청자에게 발행된 경우 및 요청이 가상의 상황에 근거한 경우
  - 모든 경우에 사전 판정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사무국은 즉시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사전심사는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심사에 다른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발표일에 발효됨<sup>131)</sup>
  - 사전심사는 신청서의 특성상 심사에 더 짧은 기간이 규정되지 않는 한 발행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사전심사에 본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129) CAO 03-2016 제4.5.1조-제4.6조

130) CAO 03-2016 제4.7조

131) CAO 03-2016 제4.8.2조



## VII. 보세제도

### 1. 개요

- 필리핀의 보세제도는 크게 보세창고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물품은 해당 창고 및 지역에 보세 상태로 반입되어 관세 및 제세금의 납부가 유예 또는 면제됨
  - 보세창고는 제조 보세창고(Manufacturing Customs Bonded Warehouse, MCBW), 산업 특정 보세창고(Industry-Specific Customs Bonded Warehouse, ICBW), 비제조 보세창고(Nonmanufacturing Customs Bonded Warehouse, CBW)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 필리핀의 보세제도와 관련하여 CMTA 제8절 제3장에서 보세창고를, 제4장에서 특별경제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지역의 경우 「특별경제구역법(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및 하위 실행규정(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Republic Act NO. 7916)에 따라 별도 운영되고 있음
  - 보세창고의 경우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1-2022(이하 CAO 01-2022)에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2. 보세창고

- 보세창고는 신청서에 명시된 용도로 승인된 수입 원자재, 가공품, 완제품, 부산물, 폐기물 및 불량품을 저장, 가공, 재포장, 제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관의 적절한 승인과 조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sup>132)</sup>
  - 모든 보세창고는 세관 역내의 연장선으로 해당 창고에 저장된 과세 대상 물품은 구역 관세청장의 감독과 통제하에 있어야 함
  - 세관은 세관창고에 저장된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세관 권한 없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창고 특권 부여에서 배제됨
  - 어떠한 신청서에서 필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을 누락한 경우, 해당 신청서는 거부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 및 형사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 보세창고 운영 권한은 창고 운영자 개인에게 부여되며, 어떤 이유로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재무부 장관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정 유형의 창고를 신설하거나 해체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필리핀 경제개발청 및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이루어짐
  
-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은 특정 기간 동안 관세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가공, 수출, 또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하청업체로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

### 가. 보세창고의 종류 및 혜택

- 보세창고에 적법하게 입고된 물품은 규정된 보관 기간 동안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됨<sup>133)</sup>
  - 다만 수출 제품으로 제조, 재포장, 해외 시장 유통, 제조 보세창고에 판매, 하청업체

132) CAO 01-2022 제4.1조, 제4.2조

133) CAO 01-2022 제4.11.1조

또는 보세창고 회원에게 양도 또는 공인된 고객/최종 사용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창고에서 반출해야 함

- 반입 가능한 물품에는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자재, 부속품, 예비 부품, 라벨, 행거, 상자, 포장재 등이 포함됨

□ 보세창고는 제조 보세창고, 산업 특정 보세창고, 비제조 보세창고로 분류됨

- 제조 보세창고는 수입된 원자재나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창고로, 완제품은 특정 기간 내에 수출해야 하며, 국내 소비를 위해서는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함<sup>134)</sup>
  - 단 국내 소비를 위한 원자재의 양은 창고에 입고된 전체 원자재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문 취소, 창고 폐쇄 또는 재난 상황으로 인한 운영 중단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원자재 30%를 초과할 수 있음

□ 제조 보세창고는 기타 제조 보세창고(Miscellaneous Manufacturing Bonded Warehouse) 의류 및 섬유 제조 보세창고(Garments and Textile Manufacturing Bonded Warehouse), 세관 공동 보세창고(Customs Common Bonded Warehouse)로 분류됨<sup>135)</sup>

- 기타 제조 보세창고는 의류 및 직물을 제외한 원자재, 액세서리, 포장 및 포장재를 포함한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기 위해 수입, 수령 및 보관하기 위한 창고임<sup>136)</sup>
- 의류 및 섬유 제조 보세창고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출용 포장 및 포장재를 포함한 의류 또는 섬유 제조용 원재료 및 부속품을 면세로 수입, 수령 및 보관하기 위한 창고임<sup>137)</sup>

---

134) CAO 01-2022 제4.3조

135) CAO 01-2022 제4.3조

136) CAO 01-2022 제4.3(a)조

137) CAO 01-2022 제4.3(b)조

- 세관 공동 보세창고는 의류 및 섬유 산업 개발 사무소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정식으로 승인한 창고로, 포장 및 포장재를 포함하여 수출용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공인된 회원의 원자재 및 부속품을 수입, 수령 및 보관하는 창고임<sup>138)</sup>
- 산업 특정 보세창고는 보세 물품의 수출 또는 원자재의 경우 수출용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이후 판매 및 공인된 고객/최종 사용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상품 또는 원자재(의류 제조용 섬유, 원사, 직물 및 액세서리 제외)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받은 창고임<sup>139)</sup>
- 비제조업 세관 보세창고는 최종적으로 소비를 위해 물품을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로 보관하는 창고로, 해당 물품이 수입된 상태와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지불 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만 반출할 수 있음<sup>140)</sup>
- 비제조업 세관 보세창고의 예로는 관세청으로부터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수입, 수령 및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세관 보세창고(Private Customs Bonded Warehouses)가 있음

## 나. 보세창고의 운영

-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운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sup>141)</sup>
  - 세관 인원의 배치는 보세창고의 운영 범위와 세관 공동 보세창고의 공인된 회원 수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보세창고 운영자는 세관 인원에게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장비와 용품을 갖춘 적합한 작업 공간을 제공해야 함
  - 보세창고의 출입문과 신규 자재, 완제품, 폐기물, 불량품 등을 보관하는 지정된 구

138) CAO 01-2022 제4.3(c)조

139) CAO 01-2022 제4.3(d)조

140) CAO 01-2022 제4.3.3조

141) CAO 01-2022 제4.12조

역에는 세관이 정한 표준과 사양에 부합하는 보안 잠금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은 세관과 세관 공동 보세창고 운영자 모두가 승인한 인원으로 제한됨

- 보세창고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세관의 평가 및 운영 조정 그룹AOCG(Assessment and Operations Coordinating Group) 산하의 창고 조정 부서(Warehousing Coordinating Division)가 모든 보세창고의 공인된 운영자에게 창고 번호를 부여함
  - 세관에서 정한 금액의 창고 감독 비용을 납부하고, 해당 기록을 세관 공동 보세창고에 전달해야 함
  - 위원장이 발급한 운영 권한 증명서는 보세창고 운영자의 사무실과 보세창고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함
  - 지역징수원은 보세창고가 실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보세창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세창고 검사 부서(Warehousing Inspection Division) 또는 동등한 부서에서 최종 검사를 수행해야 함
  - 보세창고 운영자는 창고 운영자로서 CPRS(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 공동 보세창고 회원은 수입자로 인증된 것 외에도 창고 운영자로서 등록하고 창고 코드를 받아야 함
  - 일반 창고 보증금, 이행 보증금 및 일반 운송 보증금은 관련 항구의 보증금 부서 또는 동등한 부서에 제출되어야 함
  - 보세창고 운영자는 창고 물품신고 또는 운송 물품신고를 위한 보증금 자동 차감 시스템에 보증금 계정을 생성해야 함
- 세관 공동 보세창고 또는 산업 특정 보세창고 운영자는 수입품을 검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물류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은 기타 제조 보세창고, 의류 및 섬유 제조 보세창고 또는 세관 공동 보세창고의 인증된 회원의 하청업체로 세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할 수 있음

- 보세창고 운영자는 창고 운영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sup>142)</sup>
  - 세관과 보세창고 운영자는 입고된 모든 물품의 수입과 수출 기록을 포함하는 주요 회계 장부를 유지해야 함
  - 세관 및 보세창고 운영자는 입고된 모든 물품과 출고된 모든 물품에 대한 재고 및 청산에 대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이용하여 기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주요 회계 장부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모든 보세창고는 세관과 연결된 컴퓨터 기반의 AIMS(Automated Inventor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함
  - 재고 보고서는 매년 말 제출해야 하며, 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영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 창고 운영자는 세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코드 시스템을 채택하여 입고된 물품과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물품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해야 함
  
- 창고 확장 및 추가 시설을 포함한 운영 권한은 운영 권한 증명서에 명시된 대로 설립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3년 동안 유효함<sup>143)</sup>
  -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더 긴 기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운영 권한 증서의 유효 기간은 임대차 계약과 함께 종료됨
  - 이 경우 운영 권한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계산된 최대 3년의 기간으로 수정됨
  - 기존 운영 권한이 만료된 후 또는 기존 운영 권한이 만료된 후에 운영 권한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운영 권한의 3년 유효 기간은 이전 운영 권한이 만료된 직후 날짜로 소급함

---

142) CAO 01-2022 제4.13조

143) CAO 01-2022 제5.3조

## 다. 보세창고의 운영인 요건 및 의무

- 공인 인증 업체, 하청업체, 수출업체 또는 기존 창고의 고객 및 최종 사용자는 해당 창고의 건물, 위치, 용량 및 목적을 설명한 보세창고 운영 권한 신청서를 비롯한 다음의 문서를 보세창고가 위치한 지역징수원에게 제출해야 함<sup>144)</sup>
  - 수입업체 인증 증명서
  - 보세창고가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 창고 위치 또는 해당 지역과 접근 수단이 표시된 주변 지도
  - 다음의 내용이 표시된 창고 배치도
    - 평면도 및 건물 구조
    - 원자재, 완제품 및 폐기물의 보관 공간
    - 생산 영역
  - 보세창고 및 세관 직원을 위한 사무실 공간
  - 물리적 보안 기능
  - 기계 및 장비 목록
  - 타당성 조사
  - 수입할 자재 목록의 월별 요구 사항
  - 해당 되는 경우 제조 공식
  
- 보세창고 운영 신청자에 대해 지역징수원은 다음의 내용을 평가함<sup>145)</sup>
  - 신청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
  - 물리적 검사 및 사진 촬영
  - 물리적 검사 보고서를 포함한 문서를 평가하고 검토함
  - 모든 요건을 준수할 경우 신청서의 승인을 청장에게 권고함
  - 신청서에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중요 정보 미공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신청자가 보세

144) CAO 01-2022 제5.1.1조, 제5.1.2조

145) CAO 01-2022 제5.1.3조

창고 운영을 위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지역징수원은 관련 사무소의 통관 및 검사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세관 보세창고위원회(CBWC)에 신청 승인을 권고해야 함
-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지역징수원은 신청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한 거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함

□ 보세창고 운영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sup>146)</sup>

-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모든 세관 규칙 및 규정과 기타 모든 해당 발행물을 준수하고, 개인 보세창고 또는 현지 판매의 경우 창고에서 반출하기 전에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 납부 증명서를 세관창고원 또는 세관 보관인에게 제시해야 함
- 24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 및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보안 조치를 시행하여 보세창고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도난, 무단 반출 및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물품 분실을 방지해야 함
- 운영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 분실, 파손, 도난 또는 도난된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비용을 배상해야 함
- 정부는 보관된 물품의 안전 보관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
-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검사 및/또는 물리적, 기록적 재고/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명령을 받고 파견될 수 있는 심사관, 검사관, 재고 및 감사팀, 기타 권한 있는 세관 직원에게 구내 출입을 허용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함
- 해당 항구의 세관 징수관에게 보세창고의 감독 및 운영을 위해 적절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보세창고에 배치된 세관 직원에게 필요한 사무 공간, 장비 및 소모품을 제공해야 함

146) CAO 01-2022 제9.1조-제9.7조



## 라. 보세창고 물품의 보관 및 반출

- 창고에 입고된 물품은 창고에 도착한 시점부터 최대 1년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음<sup>147)</sup>
  -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경우, 보관 기간은 창고에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요청 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은 필요한 반출 허가를 신청한 후 관세청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와 함께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수 있음
  - 규정된 보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반출되지 않은 상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함
  - 규정된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청은 보세창고 운영자에게 생산 및 재수출을 위해 보세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대신에 부과된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함
  
- 규정된 보관 기간 내에 반출된 보세 원재료는 보세창고 도착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 및 수출되어야 하며, 제조 또는 수출을 위해 반출되지 않은 보세 물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함<sup>148)</sup>
  - 1년의 규정된 기간 내에 제조를 위해 반출되었으나 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 운영자에 재수출 지연 및 청산 지연에 대한 벌금이 부과됨
  
- 수입자는 완전하고 완전한 수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청산에 필요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sup>149)</sup>
  -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 완전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입업자는 창고 입고 품목의 청산에 필요한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을 부여받음
  - 청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30일이 경과 한 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됨

147) CAO 01-2022 제8.11조

148) CAO 01-2022 제8.11조

149) CAO 01-2022 제4.11.3조

### 3. 자유무역지역

#### 가. 자유무역지역 및 혜택

- 특별경제구역은 고도로 개발되었거나 농업 산업, 산업, 관광, 레크리에이션, 상업, 은행, 투자 및 금융 센터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된 지역으로서 특히 수출 가공 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sup>150)</sup>
  - 수출 가공 구역(Export Processing Zone)은 물리적으로 및/또는 행정적으로 세관 영역 밖에 위치한 전문 산업단지로서, 주로 수출 생산에 중점을 두며 수출 가공 구역에 위치한 기업은 세금, 관세 및 기타 수입 제한 없이 자본 장비와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수입품이 즉시 환적을 위해 하역되거나,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관, 재포장, 분류, 혼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작될 수 있는 입국 항구(항구) 및/또는 공항에 인접한 구역을 의미함
  - 다만 수입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비자유무역지역까지 이동시키는 경우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수출가공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기업은 다음의 작업 및 물품 수입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sup>151)</sup>
- 기업이 판매, 저장, 분해, 재포장, 조립, 설치 등 방식으로 처리, 조작, 제조, 혼합되는 외국 또는 국내 상품을 가져올 때, 그러한 활동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필리핀의 관세 및 내국세 법률과 규정 또는 지방세 조례의 적용을

150) 「Special Economic Zone Act(Republic Act NO. 7916)」 제1장 제4조

151)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Republic Act NO. 7916」 PART VII Incentives To Ecozone Enterprises Rule XV Incentives to Ecozone Export and Free Trade Enterprises

받지 않음

- 최대 6년 동안 법인소득세가 면제됨(평균 순외 수입이 처음 3년 동안 최소 50만 달러, 국내 원자재의 평균 비용이 총 원자재의 최소 50%, 자본비/노동비 비율이 10,000달러/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제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sup>152)</sup>
- 면제 기간 만료 시 법인소득세 5% 부과
- 원천징수세 면제
- 원자재 및 자본 장비의 세금 및 관세 면제 수입
- 부두 사용료 및 수출세 면제
- 필리핀 경제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이하 'PEZA')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현지 구매의 경우 0% VAT
- 지방 정부의 부과금, 수수료 및 라이선스 면제
- 다음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 관세 및 내국세의 면제를 받고 기계, 장비 및 예비 부품을 수입할 수 있음
  - 기계와 장비는 기업의 활동에서 직접 필요하고 실제로 사용될 것이어야 함
  - 예비 부품의 수입은 수입이 허가된 특정 기계 및/또는 장비의 구성 부품으로 제한됨
  -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원래 수입된 자본 장비/기계 및 예비 부품을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판매, 이전, 양도, 기증 또는 기타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 취득일로부터 5년 후 에코존에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수입된 자본 장비를 판매, 이전 또는 처분할 경우, PEZA 이사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공장, 창고 또는 사무실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건설 자재, 특수 사무 장비 특수 차량 및 기타 운송 장비 및 가구의 및 기타 품목을 면세 상태로 수입할 수 있음
- 건설 자재는 수출 또는 자유무역 기업의 등록된 운영에 사용될 공장, 창고 또는 사무실 건물의 건설에만 사용되어야 함
  - 건설 자재는 PEZA에서 이 목적을 위해 지정한 구역 또는 에코존 제한 구역 내로

152) healyconsult, <https://www.healyconsultants.com/philippines-company-registration/free-zones/>, 검색일자: 2024. 9. 3.

직접 물리적으로 반입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관세 구역에서 판매, 이전, 양도, 기증 또는 처분할 수 없음

#### 나. 자유무역지역 허가 및 요건<sup>153)</sup>

- 개인, 회사,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사업 조직은 국적, 자본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내 시장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입 완제품의 면세 소매 및 도매 거래를 제외한 모든 산업, 국제 무역 및 상업 부문에서 수출 또는 자유무역 기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 기업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PEZA가 정한 양식에 따라 3부씩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이를 생략하거나 대신하지 않는 한, 신청자는 제안된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재무, 마케팅 및 관리 능력/역량에 대한 기본 데이터/정보를 제출해야 함
  - 정관 및 부칙 사본
  - 신청서 제출을 승인하는 신청자 이사회의 결의문, 이사, 주요 임원 및 주요 주주 명단(바이오 데이터 포함)
  - 신청자가 사용할 기계 및 장비 목록과 그 용량, 소유권 및/또는 조달 방식에 대한 설명
  - 회사 브로셔 및/또는 제품 사진
  - 사업의 성격 및 신청자의 사업 조직 유형에 따라 PEZA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서류/허가서
- 신청 승인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함

153)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Republic Act NO. 7916」 PART II - Registraion OF Ecozone Enterprise Rule III -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 PEZA와 신청자가 등록 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며, 신청자가 다음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사전 등록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등록금을 지불해야 함
  - 신청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의 제안된 약관에 대한 공식 수락을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 해당 기간은 연장을 원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다. 자유무역지역 물품처리<sup>154)</sup>

- 수출 또는 자유무역 기업이 자유무역지역 내 제한 구역으로 반입하는 상품은 금지된 상품을 제외하고 필리핀의 모든 관세 및 내국세 법규나 지방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자유무역지역의 제한 구역 내에서는 외국 또는 국내 상품과 판매, 보관, 분해, 교체, 조립, 조작, 제조 및/또는 혼합할 수 없음
- 등록된 수출 또는 자유무역 기업이 경제특구 내 제한 구역으로 가져온 외국 물품으로서 경제특구 내 제한 구역에서 가공, 제조 또는 조작을 거치지 않은 상품은 세관 지역으로 보낼 때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음
  - 해당 외국 물품이 국내 물품과 결합되거나 국내 물품의 일부가 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은 해당 수입 상품의 가치(최종 제품이 면제되는 경우 제외)와 부가가치에 대한 국내 세금 기준에 따름
- 모든 내국세를 납부한 국내 물품과 관세 또는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 외국 상품은 필리핀 관세 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 시 관세 및 체세금이 면제됨

---

154)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Republic Act NO. 7916」 Part V. Tax Treatment Of Merchandise In The Ecozones VIII Tax Treatment of Merchandise in the Restricted Areas of the Ecozones

- 해당 물품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상품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특성 및/또는 전자기적 또는 화학적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함

## VIII. 수출입규제

###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 가. 수출입 금지물품

- 필리핀으로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55)</sup>
  - 필리핀 정부에 대한 반역, 반란, 봉기, 선동을 선전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이나 인쇄물, 또는 필리핀 법률에 대한 강제 저항을 촉구하는 서면이나 인쇄물. 또한 필리핀 내에서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적 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이나 인쇄물
  - 불법적인 낙태를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 기구, 약물, 물질, 또는 불법 낙태가 어디서, 어떻게, 또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
  -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성격을 가진 서면, 인쇄물, 네거티브 필름, 영화 필름, 사진, 판화, 석판화, 물체, 그림, 또는 기타 표현물
  - 금, 은, 또는 기타 귀금속 또는 합금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그 금속이나 합금의 실제 품질이나 순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없는 물품
  - 부정하게 제조되었거나 잘못 표시된 식품 또는 인체 소비를 위한 물품, 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약물
  -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정의된 침해 물품

---

155) CMTA 제118조

- 법률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된 기타 모든 물품이나 그 부품
- 그 밖에 국가안보, 환경 및 공중 보건 보호, 질서 및 도덕을 이유로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은 다음과 같음<sup>156)</sup>
  - 현 옷과 형겔
  - 장난감 총과 폭발물
  - 오른손잡이 차량
  - 유해 폐기물(운송 과정에 있는 것 포함)
  - 경질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세탁 및 산업용 세제
  - 폴리염화비페닐(PCB)
  - 엔진을 제외한 중고 오토바이 부품
  - 살아있는 피라니아, 새우

## 나. 수출입 제한물품

- 다음의 물품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별도 허가 시에만 수출입이 가능하며 운송 또한 제한됨<sup>157)</sup>
  - 다이너마이트, 화약, 탄약 및 기타 폭발물, 화기 및 전쟁 무기, 또는 그 부품
  - 룰렛 휠, 도박 장비, 조작된 주사위, 표시된 카드, 도박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 또는 기계적 장비. 이러한 장치에는 돈, 담배, 또는 기타 물품의 배포가 운에 의해 결정되는 자판기 및 핀볼 기계와 같은 장비 또는 그 부품이 포함됨
  - 복권과 경품행사 티켓(광고 및 당첨 목록 제외)
  - 마리화나, 아편, 양귀비, 코카인, 헤로인, 또는 필리핀 대통령에 의해 습관성 약물로 선언된 기타 마약 또는 합성 약물, 또는 그 화합물, 제조염, 유도체, 또는 제제. 단,

156) 필리핀 통상산업부, <https://dtiwebfiles.s3-ap-southeast-1.amazonaws.com/Downloadable+Files/Imports/BIS+attachment+4+2013.pdf>, 검색일자: 2024. 10. 2.

157) CMTA 제119조



- 필리핀 정부나 의약 목적을 위해 위험 약물 위원회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된 자에 의해 수입된 경우는 예외임
  - 아편 파이프 또는 그 부품
  - 기타 수입 및 수출이 제한된 물품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쌀은 필리핀 국가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 목재의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농무부 식물산업국(Department of Agriculture-Bureau of Plant Industry, DA-BPI)에 제출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GM) 식물 및 식물 제품을 현장 시험, 상업적 번식 또는 식품, 사료 또는 가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허가 또한 농무부 식물산업국에서 발급받아야 함
- 보다 상세한 내용 및 관련 허가 취득에 대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법령을 참조

〈표 2-Ⅷ-1〉 필리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가 필요한 상품

품목	기관
필수 화학물질 & 통제된 전구체, 위험한 약물 (케타민, 슈도에페드린, 오리파빈, 아메넵틴 등)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 및 위험약물위원회(DDB)
필리핀 우선화학물질 목록(PCL)에 속하는 화학물질	환경 및 천연자원부 - 에너지 자원 개발국(DENR-ERDB)
시안물품, 수은, 석면, 폴리염화비페닐, 염화불화탄소 및 기타 오존층 파괴 물질	환경 및 천연자원부 - 환경 관리국(DENR-EMB)
유해 물질이 포함된 재활용 가능 재료 (예: 고철, 고체 플라스틱 재료, 전자 조립품, 스크랩, 폐유, 비산재, 폐납축전지)	환경 및 천연자원부 - 에너지 자원 개발국(DENR-ERDB)
석탄, 무연탄	환경 및 천연자원부 - 에너지 자원 개발국(DENR-ERDB)
야생 생물	환경 및 천연자원부(DENR) - 보호 지역 및 야생 동물국(PAWB)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	농무부(DA) - 동물관리국(BAI)

〈표 2-VIII-1〉의 계속

품목	기관
수산물 및 수산식품	농무부(DA) - 해양수산청(BFAR)
식물, 식물 재료 및 식물 제품	농무부(DA) - 작물생산청(BPI)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설탕 및 기타 인공 감미료	설탕 규제 관리국(SRA)
상업적 수량의 담배	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NTA)
전기톱, 목재 제품	환경 및 천연 자원부(DENR) - 산림 관리국(F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반합성 향생제(암피실린, 아목시실린 및 클로사실린의 모든 형태 및 염(salt)), 밀가루, 요오드화 소금, 그리고 모든 건강 제품	보건부(DOH) - 식품의약청(FDA)
2,400dpi(인치당 도트 수) 이상의 컬러 복제 기기(프린터 제외)	국가수사국(NBI) 및 중앙은행
폭발물, 발파제, 기폭 장치 폭발물 제조의 재료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 및 액세서리(예: 염소산염, 질산염 및 질산 등)	필리핀 경찰(PNP) - 총기 및 폭발물 관리국(FEO)
테이프, CD, DVD 등의 물품	광학매체위원회(OMB)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료, 살충제 및 기타 화학 제품	농무부(DA)-비료 및 농약 당국(FPA)
중고 자동차, 트럭 및 버스 - 중고 부품 및 구성 요소 포함	통상산업부(DTI) - 수입서비스국(BIS)
외국 외교단 및 공인된 국제기구의 이용용 중고 차량	외교부(DFA)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
어선/보트를 포함하여 선체가 없는 목조 선박이 아닌 모든 유형의 선박	해양산업청(MARINA)
알바니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라오스, 리비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니카라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및 중앙계획경제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	필리핀 국제 무역 공사 (PITC)

자료: ITA, <https://www.trade.gov/knowledge-product/philippines-prohibited-restricted-imports>, BIS, <https://dtiwebfiles.s3-ap-southeast-1.amazonaws.com/Downloadable+Files/Imports/BIS+attachment+3+2013.pdf>, BOC, <https://customs.gov.ph/regulated-import-products/>, 검색일자: 2024. 10. 4.

## 2. 무역구제제도

###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필리핀은 베트남의 시멘트, 터키의 밀가루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필리핀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유형 1(AHTN 2017 품번 2523.29.90) 및 혼합 시멘트 유형 1P(AHTN 2017 품번 2523.90.00)에 대해 2.33%에서 23.33%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sup>158)</sup>
  - 터키에서 수입된 밀가루로 AHTN 품번 2017/2022 1101.00.11 및 1101.00.19에 대해 최대 29.57%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였음<sup>159)</sup>
  
- 필리핀의 경우 상계관세는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AHTN 2017 품번 3901.20.00의 HDPE 펠릿 및 과립에 대해 2022년부터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3년차인 2024년의 경우 MT/Php1,208의 관세가 부과되며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면제됨<sup>160)</sup>

---

158) 필리핀 관세위원회, <https://drive.google.com/file/d/1jbFb4wf3xIqhHKxHUEtS831Nm0cOFFq1/view> 및 <https://tariffcommission.gov.ph/dumping-duty-cement>, 검색일자: 2024. 11. 17.

159) 필리핀 관세위원회, <https://tariffcommission.gov.ph/dumping-duty-wheat-flour> 및 [https://drive.google.com/file/d/1tdB5hxxS\\_QRMBkz04bx1quflSLPQik4Z/view](https://drive.google.com/file/d/1tdB5hxxS_QRMBkz04bx1quflSLPQik4Z/view), 검색일자: 2024. 10. 18.

160) 필리핀 관세위원회, [https://drive.google.com/file/d/1ejaWUr0KA\\_yhZFjMTuuGHCHx2VMbOo\\_a/view](https://drive.google.com/file/d/1ejaWUr0KA_yhZFjMTuuGHCHx2VMbOo_a/view) 및 <https://tariffcommission.gov.ph/hdpe>, 검색일자: 2024. 10. 11.

## 나. 인증

### 1) 인증 내용

- 필리핀 표준국(Bureau of Philippine Standard, 이하 'BPS')은 필리핀 소비자 보호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를 건강 및 안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수입 제품의 표준화와 인증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BPS는 필리핀 표준(Philippine Standard, 이하 'PS')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 제도와 수입 상품 승인(Import Commodity Clearance, 이하 'ICC') 인증의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수 인증 대상 제품은 PS 또는 ICC 마크 없이 필리핀 내의 유통이 불가능함<sup>161)</sup>
  - PS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는 PNS ISO 9001 및 관련 제품 표준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한 국내의 제조업체에 부여되며, ICC 인증서는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 BPS 시험소 또는 BPS가 인정한 시험소에서 검사와 제품 테스트를 통해 관련 PNS(Philippine National Standards)에 적합할 시 발급됨
- 현재 BPS의 필수 제품 인증 제도에는 111개의 제품 및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9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음<sup>162)</sup>
  - 가전 제품, 소비자 전자 제품, 조명 및 배선 장치, 철강 제품, 플라스틱 파이프 및 세라믹 제품, 시멘트 및 기타 건축 자재, 화학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 및 기타 소비자 제품 등
  - 변형 강봉, 재압연 강봉 및 등가 다리 강각 봉과 같은 철강 제품의 수입업체는 상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각각 PS 품질 및/또는 안전 인증 마크 라이선스 및 SOC(Statement of Confirmation)를 신청해야 함

161) 필리핀 표준국, <https://bps.dti.gov.ph/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certification-schemes>, 검색일자: 2024. 10. 2.

162) 필리핀 표준국, <https://bps.dti.gov.ph/index.php/product-certification/list-of-products-under-mandatory-certification>, 검색일자: 2024. 10. 2.

## 2) 인증 신청 시 필요사항

□ ICC 신청 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sup>163)</sup>

- 포장 목록, 수입 항목(신청서 제출 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ICC 인증서 발급을 위한 요건), 상업 송장, 선하증권/항공물품 청구서, 제품 배치 번호/일련 번호 요약, 필리핀 통상산업부 등록 사업자명(개인 사업자의 경우), SEC 법인 설립 증명서(법인 인용), 특별 위임장(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사회/파트너 결의서 또는 (법인의 경우) 권한 있는 회사 대표자의 이름이 명시된 공증된 인증서, 보증 채권, 수입자 통관 증명서, 현재 청구 증명(사무실 및 창고), 제조업체의 ISO 9001 인증서, 유효한 테스트 보고서, 기타 문서 등
- 재압연 철근 변형 철근 및 동일 leg angle bars의 경우
  - 수입 전 BPS에 로고 제출
  - 제조업체의 공장 인증서, 품질 검사 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 오토바이 헬멧 및 바이저의 경우
  - 모델별 유형별 브랜드별 테스트 보고서
  - 수입된 배치가 제조업체의 구내에서 출고되기 전에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제조업체의 적합성 인증서
  - 업데이트된 유통업체/소매업체 목록

□ 확인서(Statement of confirmation)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64)</sup>

- 포장 목록, 수입 항목(신청서 제출 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ICC 인증서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 상업 송장, 선하증권/항공물품 청구서, 제품 배치 번호/일련 번호 요약, DTI 사업자명 등록(개인 사업자의 경우), SEC 법인 설립 증명서(법인용), 특별 위임장(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사회/파트너 결의서 또는 (법인의 경우) 권한 있는 회사 대표자의 이름이 명시된 공증된 비서 인증서, 보증서(시멘트 선적 상업 송

163) 필리핀 표준국, <https://bps.dti.gov.ph/product-certification/ps-and-icc-application-requirements>, 검색일자: 2024. 11. 18.

164) 상동

장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BIR 수입자 통관 증명서/COR, 청구 증명(사무실 및 창고), 생산 기록, 유통업체 목록, 재무제표, PS 라이선스 사본, 적재항 조사 보고서, 기타 서류

#### 다. 라벨링

- 필리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은 라벨에 다음의 내용을 영어 또는 판매지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해야 함<sup>165)</sup>
  - 정확하고 등록된 상표명 또는 브랜드 이름
  - 필리핀에 있는 소비자 제품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재포장업체의 등록된 사업체 이름 및 주소
  - 일반 제조사 또는 활성 성분
  - 무게 측면에서 내용물의 순품질
  - 제조 국가(수입된 경우)
  
- 특정 물품 수입 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표시해야 함<sup>166)</sup>
  - 가연성 또는 인화성 여부
  - 사용 지침
  - 독성 경고
  - 와트, 전압 또는 암페어
  - 필요한 경우 사용된 제조 공정
  - 모든 단어나 진술 또는 기타 정보는 라벨 또는 라벨링에 다른 단어나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와 비교하여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구매 또는 사용 조건에서 일반 개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시되어야 함

165) 「RA 7394: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제77조

166) 상동

## 라. 기타 규제

- 2022년 7월 필리핀 천연환경자원부(DENR)는 필리핀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한 「공화국법 11898」을 제정하였으며, 본 법안은 필리핀 대기업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처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7월 30일에 발효된 「생산자 책임확대법(EPR)」은 「공화국법 9003」이라 불리는 「생태학적 고품질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각 기업이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 감소,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생산자 책임 의무를 위한 프로그램 필수 제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sup>167)</sup>
  - 「생산자 책임확대법(ERP)」에 근거하여 총자산 10억페소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지 않거나 법안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받음
  - 대기업은 제품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을 매립지나 주변에 버리지 않고 모두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생분해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하며 플라스틱 파우치, 라벨, 포장재, 음료 용기, 식품 용기, 개인위생 용품, 화장품 용기, 뚜껑, 플라스틱 식기, 빨대, 방수포, 간판 등에 사용되는 비닐봉지 및 폴리스타이렌 또한 회수 및 관리하여 폐기물이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생산자 책임확대법(ERP)」에 따라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을 일정 목표치 이상 회수해야 하며, 2023년 회수율 목표치 2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증가시켜 2028년에는 80% 회수율을 달성해야 함
  - 천연환경자원부(DENR) 오염 판결위원회는 위반 혐의가 접수될 경우, 현장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며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법안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1,000만 페소, 2차 위반 시 1,000만~1,500만 페소, 3차 위반 시 1,500만~2,000만 페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함

---

167) KIEP,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csNo=336349&mid=a30400000000&systemcode=03>, 검색일자: 2024. 12. 10.

- 그 밖에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경우 Philippine National Trade Repository(<https://www.pntr.gov.ph/?s=SPS>), 필리핀 농림부(<http://spsissuances.da.gov.ph/index.php/about-sps-regulations-and-related-issuances>),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https://www.compass.or.kr/news/list?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EC%A7%81%EC%A0%91%EC%9E%85%EB%A0%A5&newNational=%ED%95%84%EB%A6%AC%ED%95%80&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등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 품목, 허가 등에 대해 조회 가능함



## IX. 행정구제제도

### 1. 개요

- 필리핀의 관세 관련 분쟁에 대한 행정 불복은 CMTA 제2장 이의제기(제1106조 내지 제1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필리핀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평가, 관세 분류, 규칙 또는 원산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및 항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세관 명령인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2-2020(이하 CAO 02-2020)은 2020년 4월 4일부터 발효 및 적용되어 옴
    - 과거에는 특정 분쟁 해결위원회가 창설되어 국경에서 제기된 수입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2016년 중반 CMTA이 제정되면서 분쟁 해결에 관한 기존 규정의 정책과 절차를 정비하게 되었음
  
- 수입자가 세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지역징수원(District Collector)의 판결에 이의제기를 하여 관세청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품목분류의 경우 지역징수원의 판결에 대해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은 후 결정이 불리할 경우 조세항소법원(Court of Tax Appeals, 이하 CTA)에 항소할 수 있음
  - 지역징수원의 판결을 받은 후 CTA에 직접 회부할 수 있음
  
- 최초로 부과된 관세 및 제세금에 대해 수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는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적으로 재조정된 평가를 따르도록 함<sup>168)</sup>

- 다만 지역징수원은 분쟁 중인 금액에 해당하는 충분한 담보 제시 시 잠정적인 평가 하에 수입물품의 반출을 허용할 수 있음

## 2. 행정구제절차

### 가. CMTA에 따른 일반적인 구제절차

- 수입, 수출 또는 기타 법적 청구와 관련된 국(Bureau)의 결정 또는 누락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결정 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sup>169)</sup>
  - 해당 법 또는 규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함
  - 운영국은 증빙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수 있음
- 압류 사건의 벌금 결정을 제외하고 관세평가, 원산지 규칙 및 기타 통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지역징수원 또는 세관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지면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sup>170)</sup>
- 이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에서 지역징수원의 조치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본 법 제1106조에 규정된 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징수원의 조치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됨<sup>171)</sup>
  - 이의제기는 본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이 되는 지역징수원의 구체적인 결정 또는 판결을 명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구제 청구의 근거로 삼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함<sup>172)</sup>

---

168) CMTA 제425조

169) CMTA 제114조

170) CMTA 제1106조

171) CMTA 제1108조

- 상품의 특성상 물품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는 수입업자는 요청 시 항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샘플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sup>173)</sup>
- 이의가 적절한 형식으로 접수되면 관세청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sup>174)</sup>
  - 이의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속될 시 필요한 경우 항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나. 세관 명령에 따른 세부절차

### 1) 판결 종류에 따른 세부절차

#### 가) 품목분류

- 지역징수원이 해당 분류에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리고 수입신고서, 브로슈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등 관련 서류의 인증 원본을 관세위원회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음<sup>175)</sup>
  - 관세위원회의 결정 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결정을 재무장관에게 항의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관세위원회가 대상 상품을 더 높은 관세율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 징수관은 추가 관세 및 세금을 징수해야 함
- 물품의 품목분류가 고도로 기술적인 질문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징수원이 세관원의 조사 결과를 채택하는 경우, 지역징수원의 재분류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의 납부 명령과 함께 해당 결정(이유 명시)을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함<sup>176)</sup>

---

172) 상동

173) CMTA 제1109조

174) CMTA 제1110조

175) CAO 02-2020 제5.4.1조-제5.4.3조

176) CAO 02-2020 제5.4조

- 수입자는 이에 대해 관세청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청장은 이의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청장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해당 판정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됨<sup>177)</sup>
- 해당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TA에 항소할 수 있음<sup>178)</sup>
  - 관세청장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은 수입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위원회에 판결을 제출할 수 있음
  - 관세위원회의 판결이 수입자에게 유리할 시 재무장관이 달리 판결하지 않는 한 해당 판결은 관세위원회의 판결로 종결됨
    - 재무장관이 관세위원회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수입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TA에 항소할 수 있음
    - 관세위원회의 판결이 수입자에게 불리하고 관세청장이 해당 판결을 채택할 시 수입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TA에 항소할 수 있음

#### 나) 관세평가

- 수입신고 후 최종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 세관원은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수입자의 신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sup>179)</sup>
- 수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이를 주감정인(Principal appraiser)에서 수입국 혹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부서의 장(chief), 평가국의 부징수관(Deputy Collector for Assessment), 마지막으로 지역징수원(District Collector)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격상 시켜 나갈 수 있음<sup>180)</sup>
  - 지역징수원이 해당 분류에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

177) CAO 02-2020 제5.8조

178) 상동

179) CAO 02-2020 제6.1조

180) 상동

해당 내용을 2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고지해야 함

- 수입자와 세관원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역징수원에게 입장 표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징수원은 입장 표명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평가를 제출해야 함<sup>181)</sup>
- 세관원의 물품 평가에 대해 지역징수원이 판결을 채택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수입자에게 해당 채택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판결을 통지하며 관세 및 세금을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완납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함<sup>182)</sup>
-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채권이나 담보가 취소될 수 있으며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관세 및 제세 부족분에 대해(잠정 평가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잠정적인 평가가 없는 경우, 수입자는 판결에 따라 추가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

#### 다) 원산지

- 수입자가 세관원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시 공식적으로 발행국(Issuing Country)의 원산지 확인을 지역징수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징수원은 CO를 평가 및 운영조정 그룹(Assessment and Operations Coordinating Group, AOCG)에 전달해야 함
- 발행국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운영조정 그룹 부국장은 지역징수원에게 이를 전달하며, CO가 정확하지 않을 시 지역징수원은 수입자에게 분쟁 금액에 해당하는 제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함
  - 기타 규칙 및 규정 준수가 확인된 경우 잠정 평가에 따른 물품 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

181) CAO 02-2020 제6.2.3조, 제6.2.5조

182) CAO 02-2020 제5.4조

## 2) 기타 관련 이의제기 절차

- 이의제기 시 지역징수원의 특정 판결에 대해 명시해야 하고 이의제기 당사자가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특정한 내용에 대해 표시해야 함<sup>183)</sup>
  - 이의제기의 범위는 수입물품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 제한되지만 문제 건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
  
- 몰수 사건에서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역징수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경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함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sup>184)</sup>
  - 지역징수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세청장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징수원은 즉시 모든 소송 기록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전송해야 함
  
- 관세청장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함<sup>185)</sup>
  -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지역징수원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됨

---

183) CAO 02-2020 제10.2조

184) CMTA 제1126조

185) 상동

## X. 벌칙

### 1. 개요

- 통관 및 관세 관련 위반에 대한 형벌은 CMTA 제14장 제1절 범죄 및 기타 위반 (Crimes and other offenses) 제1400조 내지 제1430조에서 처벌 내용 및 일부 벌금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기타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1-2020,; 이하 CAO 1-2020)에서 사무적인 오류(Clerical error), 허위 신고, 오분류 및 과소 평가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필리핀은 관세 형벌에 대해 과실 및 사기의 두 가지 유형으로 형의 감경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으며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하고 있음
- 방조와 동조자의 경우 정범에 준해 처벌하고 있으며 불법 수출입의 경우 물품의 가치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별도의 가중처벌법은 없으며 초범과 재범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

## 2. 벌칙

### 가. 수입신고 관련 범죄

#### 1) 허위신고, 오분류, 과소신고

- 물품신고에서 서류 오류가 발생하는 다음의 경우 지역징수원은 필수로 평가된 세금, 수수료, 벌금, 과징금(Surcharge) 외에 신고서에 명시된 각 서류 오류에 대해 PHP 500의 벌금을 징수함<sup>186)</sup>
  - 우연한 오류의 존재
  - 우연한 오류에 고의적인 사기가 동반되지 않았을 때
  - 우연한 오류에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을 때
  - 서류 오류가 상품신고 후 발견되었을 시 PHP 500의 벌금 외에도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허위 수입신고, 오분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징금이 부과됨<sup>187)</sup>
  - 상품의 수량, 품질, 설명, 중량 또는 측정에 관한 허위신고 또는 상품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또는 오분류로 인해 관세 및 세금과 신고된 관세 및 세금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관세 및 세金的 2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sup>188)</sup>
    - 수량에 대한 잘못된 신고: 물리적 검사 후 신고된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를 때
    - 품질에 대한 잘못된 신고: 예를 들어, 중고품으로 신고되었으나 새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 설명에 대한 잘못된 신고: 신고된 제품 설명과 실제 검사 후 발견된 제품 설명이

186) CAO 01-2020 제4.1조

187) CMTA 제1400조

188) CAO 01-2020 제4.2조



다를 때

- 무게에 대한 잘못된 신고: 신고된 무게와 실제 무게가 다른 경우
  - 측정에 대한 잘못된 신고: 신고된 크기와 실제 측정된 크기가 다를 때
  - 제반 서류에 대한 잘못된 신고: 상업 송장, 운송장 등 제반 서류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 관세 불일치가 10% 미만인 경우 또는 품목분류에 관한 어렵거나 고도의 기술적 문제가 포함된 공식적인 관세 분쟁 해결 절차에서 신고된 품번이 거부된 경우 또는 수입신고가 정부의 공식 판결에 근거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음
  - 납부해야 할 세금 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기 행위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됨
- 다음의 경우 과소신고로 판단함<sup>189)</sup>
- 신고 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대해 관세 조정이 누락된 경우
  - 잘못된 평가 방법을 사용하거나 평가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결정된 정확한 금액과 신고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허위신고, 오분류, 저평가가 고의적이거나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과징금 및 처벌이 적용됨<sup>190)</sup>
- 허위 또는 변경된 문서가 제출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된 진술이나 정보가 제공된 경우, 부과된 세금의 5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물품은 차액에 상관없이 압수 대상이 됨
  - 수입업자 및 사기 행위에 고의적으로 참여한 기타 인원에게 동법의 제1401조에 명시된 벌금이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 평가에 따른 세금, 관세 및 기타 비용을 최종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 평가액 또는 미납 잔액에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체납 기간이 1년을

---

189) CMTA 제1400조

190) CMTA 제1400조

초과할 경우 과징금은 25%로 증가하여 부과됨<sup>191)</sup>

- 사후심사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짐<sup>192)</sup>
  - 과실(Negligence): 위반자가 부작위 또는 위임을 통해 진술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위반자는 과실로 기소되며 유죄가 인정 되면 부족분의 125%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동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재무부 장관이 공포한 규칙에 따라 단순 과실에 해당하는 부주의한 실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의 벌금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사기(Fraud)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행위가 고의, 자발적, 의도적으로 행해지거나 누락된 경우 및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는 부족분의 6배에 해당하는 벌금(fine) 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Imprisonment)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사기죄로 기소된 범죄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됨

## 2) 불법 수출입

- 고의적으로 불법 수입 또는 수출을 하거나, 필리핀 내로 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조력하는 자, 또는 물품을 수입 후 은닉, 구매, 판매하거나 운송, 은닉, 판매를 조력하는 자, 또는 이 법에서 정의하는 기술적 밀수를 저지르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193)</sup>
  - 불법 수입된 물품의 평가 가치가 PHP 2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소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PHP 25,000에서 PHP 75,000 사이의 벌금 또는 양자가 병과될 수 있음
  - 불법 수입된 물품의 평가 가치가 PHP 250,000에서 PHP 500,000 사이일 경우,

191) CMTA 제1425조

192) CMTA 제1005조, 제1104조

193) CMTA 제1401조

-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PHP 75,000에서 PHP 150,000 사이의 벌금 또는 양자가 병과될 수 있음
- 불법 수입된 물품의 평가 가치가 PHP 500,000에서 PHP 1,000,000 사이일 경우,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PHP 15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부과될 수 있음
  - 불법 수입된 물품의 평가 가치가 PHP 1,000,000에서 PHP 5,000,000 사이일 경우, 최소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PHP 300,000에서 PHP 1,500,000 사이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부과될 수 있음
  - 불법 수입된 물품의 평가 가치가 PHP 5,000,000에서 PHP 50,000,000 사이일 경우, 최소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PHP 1,500,000에서 PHP 15,000,000 사이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부과될 수 있음
  - 불법 수입된 물품의 평가 가치가 PHP 50,000,000에서 PHP 200,000,000 사이일 경우, 최소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PHP 15,000,000에서 PHP 50,000,000 사이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부과될 수 있음
  - 불법 수입된 물품의 평가 가치가 PHP 200,000,000를 초과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수입된 물품의 총 평가 가치가 PHP 200,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극악한 범죄로 간주되며 종신형과 최소 PHP 50,000,000의 벌금이 부과됨
  - 중대한 신체 상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형이 부과되며,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이 부과됨
- 해당 조항을 위반한 피고가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 그 소지는 법원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의 충분한 증거로 간주됨<sup>194)</sup>
- 단 체포 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따른 형사 소송에서 유효한 변론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필수 행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동법에서 수입업자, 수하인, 수출업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제3자가 향유하는 권리와 특권은 취소됨

---

194) CMTA 제1401조

- 기타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동안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며, 해당 물품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30%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모든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 해당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음<sup>195)</sup>

### 3) 서류 제출 및 기타 사기 행위

- 물품의 평가를 위한 증거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196)</sup>
  - 수입물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세관 직원의 합법적인 서면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진술하지 않거나,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해당 물품의 가치, 분류 또는 처분과 관련된 기록, 계좌 또는 송장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역징수원은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해 거짓 또는 사기적인 진술을 하거나 문서 또는 관행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시도하는 자, 또는 환급 또는 세금 반환 청구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는 동법의 제1401조 불법 수출입에 준하는 벌금 및 형량으로 처벌됨<sup>197)</sup>

### 4) 기록 보관

- 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입 기록이나 회계 장부, 사업 및 컴퓨터 시스템, 모든 세관 상업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1일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및 PHP 1,000,000의 벌금이 부과됨<sup>198)</sup>
  - 수입자와 관세사가 허가된 세관 직원에게 그러한 기록, 회계 장부, 사업 및 컴퓨터 시스템, 모든 세관 상업 데이터(결제 기록 포함)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

195) CMTA 제1404조  
196) CMTA 제1402조  
197) CMTA 제1403조  
198) CMTA 제1427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처벌이 적용됨

- 세관은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물품의 배송 또는 반출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역징수원이 물품 평가를 위해 청구한 송장, 장부 또는 문서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파괴한 자, 또는 사기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 또는 파괴하기 위해 그러한 송장, 장부 또는 관련 문서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파괴한 자에게는 3년 1일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과 PHP 300,000에서 PHP 1,0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199)</sup>

## 나. 물품 통제 관련 범죄

-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 봉인, 고정 장치 또는 마크를 선박, 항공기, 차량, 창고 또는 포장물에 부착한 자에게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과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00)</sup>
- 외국인의 경우 형 집행 후 추방되며, 공무원 또는 직원의 경우 공직 영구 박탈과 선거 참여 자격이 박탈됨
- 세관 직원이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 구획이나 선상 물품에 부착한 봉인이 파손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 파손된 봉인 하나당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01)</sup>
- 세관 직원이 부착한 자물쇠 또는 고정 장치가 파손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202)</sup>
  - 세관 직원이 야간에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치 도어 또는 기타 통로에 부착한 자물쇠 또는 고정 장치가 불법적으로 열리거나 파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또는 그렇게

---

199) CMTA 제1428조

200) CMTA 제1418조

201) CMTA 제1419조

202) CMTA 제1420조

- 보관된 물품이 몰래 반출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게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
- 허가 없이 선박, 차량, 육상,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중이거나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창고 또는 포장물에 부착된 세관 봉인, 고정 장치 또는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파손하거나 훼손 또는 변경한 자에게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됨<sup>203)</sup>
  
  - 보세창고에 저장된 수입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자에게는 미납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의 50%의 과징금이 반출된 물품의 세금과 비용에 추가로 부과됨<sup>204)</sup>
    - 체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은 미납된 세금과 관세의 25%씩 매년 증가함
    - 단 반출이 허위 또는 변경된 반출 허가서의 제출과 같은 사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창고 운영자는 이 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창고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창고에서 물품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물품을 재포장하거나, 창고에 보관된 포장물에 부착된 표시나 번호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자(aid or abet)에게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과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05)</sup>
    - 은닉되거나 재포장된 물품 또는 훼손되거나 변경된 표시를 가진 포장물은 정부에 의해 몰수됨
  
  - 창고 또는 세관 통제하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물품이나 수하물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는 의도로 침입한 자, 또는 이러한 물품이나 수하물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운반하는 자, 또는 그러한 반출을 돕거나 방조한 자는 동법 제1401조에(불법 수출입) 준하는 처벌을 받음<sup>206)</sup>

---

203) CMTA 제1421조

204) CMTA 제1422조

205) CMTA 제1423조

206) CMTA 제1424조

### 다. 기타 운송 관련 범죄

- 필리핀 세관 구역에 도착한 외국 항구 출발 선박, 선박 또는 항공기가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항한 경우 기상 악화, 적의 추격 또는 기타 강제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07)</sup>
- 필리핀 항구에 도착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장, 조종사 또는 승무원이 세관 직원의 탑승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08)</sup>
- 필리핀 항구에 도착한 선박의 선장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세관 직원의 허가 없이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거나 하선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09)</sup>
- 필리핀 세관 구역에서 외국 무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장 또는 조종사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적재된 물품의 일부를 허가 없이 하역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게 PHP 500,000에서 PHP 2,0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0)</sup>
  - 단 기상 악화, 사고 또는 기타 필요로 인한 하역이었음을 지역징수원에게 충분히 입증할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음
- 필리핀에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역징수원이 지정한 시간 또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품을 하역한 경우,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1)</sup>
  - 단 기상 악화, 사고 또는 기타 필요로 인한 하역이었음을 지역징수원에게 충분히

---

207) CMTA 제1405조

208) CMTA 제1406조

209) CMTA 제1407조

210) CMTA 제1408조

211) CMTA 제1409조

입증할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음

-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 시 지역징수원에게 마지막 외국 항구에서 발급된 문서, 허가증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요구된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2)</sup>
- 필리핀 항구에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무기, 화약, 탄약, 다이내마이트 또는 기타 폭발물, 군사 장비를 포함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해당 물품이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 PHP 500,000에서 PHP 1,0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3)</sup>
-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내에 전자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게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4)</sup>
  - 출발 항구에서 입항 항구까지의 운송 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운송 회사 또는 운송 대리인에게도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
-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하목록에 기재된 물품 중 목적지에 하역되지 않은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사 또는 선박 대리인에게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5)</sup>
  - 단 선장이거나 항공기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이유를 지역징수원이

---

212) CMTA 제1410조

213) CMTA 제1411조

214) CMTA 제1412조

215) CMTA 제1413조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음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대리인은 적하목록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물품과 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을 부담해야 함
- 적하목록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의 총중량이 신고된 중량보다 1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차이가 선장 또는 항공기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소유자, 직원, 운전자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물품의 가치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sup>216)</sup>
- 외국 항구에서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필요에 따라 지정된 항구 외의 다른 항구에 하역하게 되었을 경우, 지역징수원이 허가한 하역 또는 물품 인도와 관련된 선장 또는 조종사의 보고와 하역된 물품이 일치하지 않으며 그 불일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대리인에게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7)</sup>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장, 조종사 또는 소유자, 운영자가 세관 수입을 손실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지역징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시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과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8)</sup>
-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후 추방되며, 공무원이나 직원의 경우 공직 영구 박탈과 투표 및 선거 참여 자격이 박탈됨
- 선장 또는 항공기 조종사가 세관 직원이 요구한 항해 또는 비행 목적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PHP 100,000에서 PHP 300,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됨<sup>219)</sup>

---

216) CMTA 제1414조

217) CMTA 제1415조

218) CMTA 제1416조

- 선박 또는 항공기가 원래 허가받고 허용된 항구 외의 다른 항구에 도착했을 경우 원래의 목적지 진술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됨

## XI. AEO제도

### 1. 개요

-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는 미국이 9·11 테러를 계기로 무역 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세관 민관 협력프로그램(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에서 시작됨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차원의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안전의 조화를 달성하고자 도입되었음
  - 특히 AEO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위협 및 급증하고 있는 국경 통과물품 물량에 대해 민간 기업들의 협력으로 효과적인 국경관리 및 무역 원활화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필리핀의 AEO는 3등급(Level 1,2,3)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품 보안 및 안전, 통관 간소화에 대해 운영하고 있음
  - 필리핀은 AEO와 관련된 내용은 CMTA 제4장 제1227조, 제1228조 및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5-2017 및 CMO(Customs Memorandum Order) 09-2020, CAO 05-2017에 따라 확립된 AEO(공인 경제 운영자) 프로그램을 실행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음
    - CMO 11-2012를 통해서 최초로 법제화가 되었으나 구체적인 제도 및 시행안이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

## 2. AEO 공인대상 및 기준

□ 필리핀의 AEO 공인대상은 다음과 같음

- 수입업자, 수출업자, 보세창고(CBW, CFW) 운영자, 통관업자, 필리핀에 사무소를 둔 NVOCC(무선박운송인), 물품 운송업체 및 국제 물품 운송업체, 선사 또는 항공사 및 그 대리인, 현지 운송 사업자,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 체결국에서 AEO로 인증한 물류 및 국제 공급망의 외국 공급업체, 제조업체 및 기타 단체

□ 필리핀은 AEO 공인의 기준 범위를 일반 및 보안 인프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sup>220)</sup>

- 일반적인 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소유권, 구조 및 조직
  -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프로필 및 예상 사업활동
  - End to End 수입 또는 수출 프로세스(상품, 서류 및 결제 흐름) 및 현지 유통 시스템(있는 경우)
  - 해외 공급 및/또는 현지 유통망에 관련된 법인
  - 수출입 물품의 리스트(특혜율, 수량, 과세가격, 품목 명세, 물품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내부 세관 절차 관리
  - 세관 절차 준수 이력
  - 연속적인 비즈니스 메커니즘의 유무
  - 재정 건정성 확보
  - 관세국장이 정한 기타 유사한 사항
- 보안 인프라에 대한 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물품 취급 및 보관
  - 기록 보관 및 IT 시스템

---

220) CMO 09-2020 제9.1조

- 공급 및 거래 파트너
  - 물리적 건물 및 접근 통제
  - 인력 보완
  - 보안 교육, 위협 인식 및 지원 활동
  - 운송 보안
  - 관세청장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 신청일 이전 1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위법사실이 없어야 함<sup>221)</sup>
- 세관법 및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비롯하여 적용일로부터 필리핀 법,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부과되지 않아야 함
- AEO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자가 공인된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전담 사무실 또는 부서 또는 책임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sup>222)</sup>

### 3. 공인절차

#### 가. 사전절차

- AEO 신청 이전에 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미리 심사하여 AEO 진행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해당 절차에 통과한 기업에 대해 정식 공인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sup>223)</sup>
- AEO 후보자는 AEO 온라인 포털 또는 AEO 주관 부국장실을 통해 다음 각 호를

221) CMO 09-2020 제9.1.3조-제9.1.4조

222) CMO 09-2020 제9.1.4조

223) CMO 09-2020 제9.3조

- 제출하여 AEO 공인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공인 사전심사 양식(부속서 A)
  - 공인된 자체 평가 설문지(부속서 B)
  - 리스크평가서(부속서 C)
  - 공증(부속서 D)
  - 재무 관련 서류(예: 연간 기업설명회(IR) 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 해당되는 경우 SEC/DTI 등록
  - 행정장관의 허가증 및/또는 등록증(즉 BOI, PEZA, SBMA 등)(해당되는 경우)
  - 일반정보지(GIS)
  - 문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AEO 후보자에게 피드백 및 권장 사항을 검토하고 제공해야 함
- AEO 관리자(Account manager)는 신청자의 준비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후 5일 이내에 인증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함<sup>224)</sup>
- AEO 사무소장은 추천서를 검토하여 추천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AEO 후보자에게 사전심사 승인서를 발급함<sup>225)</sup>
- AEO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AEO 후보자는 AEO 사무소의 추가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해야 함

## 나. 공인절차

- AEO 공인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AEO 온라인 포털에 제출해야 하며 문서가 온전히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가 진행됨<sup>226)</sup>
- 평가는 다른 정부 기관과의 정보 확인,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상호참조 등이 포함될

---

224) 상동

225) 상동

226) CMO 09-2020 제9.4조

수 있음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공인신청서(부속서 A)
  - 사전심사 통과서
  - 공증된 자체 평가 설문지(부속서 B)
  - 위험평가서(부속서 C)
  - 공증(부속서 D)
  - 재무서류(예: 연간 기업설명회(IR) 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 해당되는 경우 SEC/DTI 등록증
  - 해당되는 경우 행정장관의 허가증 및/또는 등록증(즉 BOI, PEZA, SBMA 등)
  - 일반 정보지(GIS)
  -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는 증명서
  
- 관리자는 문서 평가의 초기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통지해야 하며 신청자는 평가 후 5일 이내에 필수 검증을 받아야 함<sup>227)</sup>
  
- 검증은 AEO 온라인 포털을 통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되며 통지서에는 현장 검사를 수행할 승인된 검사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sup>228)</sup>
  
- 검증을 수행하는 동안 관리자 및/또는 공인 AEO 검사관은 보안 조치 및 기타 필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신청자 또는 정식 지정된 대리인의 시스템 검토 또는 개인 인터뷰가 포함될 수 있음<sup>229)</sup>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AEO 인가 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227) CMO 09-2020 제9.6조

228) 상동

229) 상동

- 승인된 경우, AEO 사무국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Level 1 AEO 회원으로 인증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AEO 인증 인증서를 발급해야 함
  - 승인이 거부된 경우, AEO 사무국은 3일 이내에 신청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함
  
- AEO 신청서 처리는 합리적인 근거(예: 추가 검토 및 검증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지만 Level 1 공인 처리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Level 1 AEO 회원의 전체 기록은 모니터링 및 후속 검증을 위해 인증 부서에서 사후 검증 부서로 제공되어야 함<sup>230)</sup>

## 다. 모니터링

### 1) 이행 의무

- 본 CMO 제9.1조의 내용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유지해야 함
  - 공식 특혜, 정보 시트,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및/또는 이메일 주소, 수입 프로세스 흐름, 제품 소싱, 수입 품목 목록, 가격 구조, 거래 조건, 제품 설명, 관세 분류, 보안 정책 또는 프로필, 기타 본 사무국이 공인 회원의 지속적인 자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받는 회원의 상태 변경에 대해 본 사무국에 업데이트해야 함<sup>231)</sup>
  
- 세관이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항상 완전히 공개하며 신청 과정에서 또는 AEO 수입 통관 업무의 결과로 회원이 제공한 정보, 특히 무역 또는 영업 비밀 또는 이익과 관련된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며 사법 절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서면 동의 없이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음<sup>232)</sup>

---

230) CMO 09-2020 제9.9조

231) CMO 09-2020 제11.2조

232) CMO 09-2020 제11.3조



- 기업 조직 내에 AEO 규정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사무소 또는 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고, 원활한 AEO 운영에 필요한 신속한 정보 교환 및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함<sup>233)</sup>
  - 이와 관련하여 매년 중대한 변경이 없다고 표기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해당되는 경우)
- 부주의한 오류 또는 의도치 않은 AEO 절차 이탈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약속과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자발적으로 본국에 공개해야 함<sup>234)</sup>
  - 이러한 공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존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제재 또는 조치의 적용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 사업 및 수입 운영과 관련된 전자 또는 하드 카피의 모든 문서에 대한 완전하고 업데이트된 접근 가능한 기록 보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함<sup>235)</sup>

## 2) 모니터링

- 인증된 Level 1 회원의 보안 조치 및 공급망 보안 관행에 대한 재검증은 본 CMO 제9.1조에 언급된 기준에 따라야 하고 Level 1 기업에 대한 현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Level 1 회원 인증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sup>236)</sup>
  - 재심사는 Level 1 인증으로부터 6개월 후에 시작되며 AEO 사무소는 Level 1 회원의 AEO 공인 요건 준수 정도에 따라 레벨 2 또는 3으로 지위 승급을 고려할 수 있음<sup>237)</sup>
  - 신청 전 운영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Level 2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연속적인 준수 이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Level 1 회원으로 인증된 후 최소 1년의 기간 동안 재인증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하며 기간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sup>238)</sup>

233) CMO 09-2020 제11.4조-제11.8조

234) CMO 09-2020 제11.6조

235) CMO 09-2020 제11.7조

236) CMO 09-2020 제10.1조

237) CMO 09-2020 제10.2조-제10.4조

## 라. 인증의 정지 및 취소

- 부여된 AEO 인증은 제13조에 규정된 대로 자발적인 프로그램 탈퇴를 통해 일시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효함<sup>239)</sup>
-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통지 및 청문회를 거쳐 과실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에 따라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인증이 정지될 수 있음<sup>240)</sup>
    - AEO 회원의 보안 조치 및 공급망 보안 관행이 제9.1조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반복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무국의 공식 지시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 AEO 규정 준수 또는 AEO 멤버십 약관에 대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 세관 절차 또는 화물 공급망 보안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특정 기간 동안 회원의 AEO 운영 성과에 대한 사후 검증 부서의 주기적인 평가에 따른 권고
    - 회원이 CMTA 또는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회원이 CMTA 또는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세관 수입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중 보건 및 복지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 AEO 회원이 본 CMO에 규정된 검증 절차 중에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사기적 의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
- 사후 검증 부서는 위반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AEO 업체의 위반 사항을 명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AEO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sup>241)</sup>

238) CMO 09-2020 제10.2조-제10.3조

239) CMO 09-2020 제12조

240) CMO 09-2020 제12.1.1조

- AEO 업체는 위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반 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함
- 정지 및 취소 이외의 결의가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사후 검증 부서는 응답을 다시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AEO 회원과 협의 일정을 정해야 함<sup>242)</sup>
  - 협의는 최초 협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AEO 회원의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AEO 회원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으로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장은 재심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달력으로 18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함<sup>243)</sup>
  - 재심 요청서에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에 대한 AEO 회원의 답변이 명시되어야 함<sup>244)</sup>
- 청장은 재심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역일 기준 3일 이내에 재심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권고를 위해 AEO 사무소의 상급 부청장에게 재심 요청서를 송부해야 함<sup>245)</sup>
  - 부청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AEO 사무소에 요청을 전달해야 함<sup>246)</sup>
- AEO 사무소는 요청을 검토하고 보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역일 기준 5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을 지정해야 하며, AEO 사무소는 청문회 개최일 최소 5일 전에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AEO 회원에게 통지해야 함<sup>247)</sup>

---

241) CMO 09-2020 제12.2.1조

242) CMO 09-2020 제12.2.2조

243) CMO 09-2020 제14.1조

244) CMO 09-2020 제14.2조

245) CMO 09-2020 제14.3.1조

246) CMO 09-2020 제14.3.2조

247) CMO 09-2020 제14.3.3조

#### 4. 공인 혜택

- 필리핀의 AEO는 Level 1에서 Level 3까지 3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sup>248)</sup>
  - 최초 신청자의 경우 Level 1의 등급을 받게 되며, 갱신 시 심사를 통해 Level2 또는 Level 3의 등급으로 승급될 수 있음
  - 사후 심사에 대한 책임자가 관리자 및 AEO 검사관을 지정하여 레벨 1 AEO 회원의 재심사를 수행하되, 레벨 1 AEO 취득자의 해외 법인이 해당 국가 관세청으로부터 다른 AEO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경우 현장 평가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의 성격, 거래 등에 관한 개선 사항, AEO 적용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유무, Level 2 또는 3 인증 및 혜택에 적용될 수 있는 Level 조정 등에 대해 사무국이 사후 심사 시 확인함
  
- Level 1의 공인 혜택은 다음과 같음<sup>249)</sup>
  - AEO 회원은 공인 인증 시스템에 따라 회원 자격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정기 보고서 제출 이외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AEO 공인 지위를 신뢰하여 통관 서류 간소화 및 업체의 자체 평가를 1차적으로 신뢰함
  - AEO 공인 업체 전용 Help desk를 설치하여 인증업체에 대해 전담 창구 혜택을 부여하며 AEO 관련뿐 아니라 기타 통관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Level 2의 공인 혜택은 다음과 같음<sup>250)</sup>
  - Level 1 보안 조치 및 공급망 보안 관행 검증 후 승급이 가능하고 이러한 검증에는 Level 1 업체의 외국 법인에 대해 현지 실사가 필요하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248) CMO 09-2020 제17.1조-제17.2조

249) CMO 09-2020 제17.1조

250) CAO 05-2017 제4.4.1(b)조

- Level 1 인증 후 1년 이내에 검증이 완료되어야 함
  - 문서 및 물리적 검사가 없는 AEO 선적을 위한 전용 창구를 사용할 수 있음
  - 사전 통관절차를 통해 운반선 도착 전 수입 서류를 처리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단일 물품신고를 허용함
    - 정기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동일한 종류의 물품
    - 정기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동일한 종류의 규제 물품
  - 일정 기간 동안 수입되고 관세 및/또는 면세 특권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AEO 공인업체는 승인을 받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회성 관세 및/또는 면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 MRA 협정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적용함
- Level 3의 경우 공인 혜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sup>251)</sup>
- Level 2 공인업체로서 보안 조치 및 공급망 보안 관행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하는 경우 Level 3으로 승급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함
  -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Level 3으로 승급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며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공급망 전체의 물품 접근에 대한 통제와 관련한 추가 지침의 준수 여부, 선적 전 물품에 관한 추가 정보의 제출(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테이너 보안장치, 기술, 정책 또는 관행 중 국(Bureau)에서 정한 기준 및 이의 준수, 기타 물품 요건의 준수 여부 등

---

251) CAO 05-2017 제4.4.1(c)조

##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 I. 수입 통관절차

#### 1. 수입 통관절차

##### 1) 물품신고

- 필리핀의 수입 통관은 ① 수입신고, ② 물품검사, ③ 관세 및 제세금 납부, ④ 물품반출의 단계로 이루어짐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입항 항구의 세관을 통해 신고되어야 하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제출해야 함<sup>252)</sup>
  - 신고는 국내 소비, 보세창고, 조건부 수입 또는 환적 물품신고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음<sup>253)</sup>
  - 신고자가 모든 정보나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

252) CMTA 제400조

253) CMTA 제401조

신고자가 4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잠정 수입신고를 허용함<sup>254)</sup>

- 세관이 잠정 수입신고를 수락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완전한 신고를 마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됨

□ 모든 물품신고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입신고는 마지막 물품 하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sup>255)</sup>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이유가 있을 시 추가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세관은 지정된 세관 사무소에서 전자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접수하며 유효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신고자가 이미 제출된 수입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sup>256)</sup>

□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sup>257)</sup>

- 정식으로 승인된 선하증권 또는 항공물품 청구서,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발행한 증명서
- 상업 송장, 신용장 또는 기타 지불을 증명하는 확인 가능한 상업 문서(수출용 판매가 없는 경우, 상품의 상업적 가치를 나타내는 상업 문서)
- 포장 목록
- 정식 공증을 받은 평가에 관한 추가신고서(Supplemental Declaration on Valuation)
- 특별 규칙 및 규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 수입 허가 또는 통관 허가
  - 수입물품 출고 허가(Authority to Release Imported Goods)
  -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원산지 증명

254) CMTA 제403조

255) CMTA 제407조

256) CMTA 제408조

257) 미국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philippines-import-requirements-and-documentation> 검색일자: 2024.11.12

- 물품신고에 판결문이 사용된 경우 사전 판결문 사본
  - 벌크 또는 소량 수입의 경우 선적항 조사 보고서 또는 양륙항 조사 보고서
  -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입증하는 문서
- 수입신고서는 수하인, 운송 수단(선박 또는 항공기), 출발항, 도착항 및 도착일, 포장 물의 수량 및 마크, 물품의 종류와 정확한 품목 설명, 해당 물품의 상업적 가치 등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sup>258)</sup>
- 신고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세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잠정적 또는 불완전한 수입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자는 45일 내에 정보를 보완해야 함
  - 수입신고서에 포함된 물품 설명은 세관 가치 산정, 통계 목적 및 적절한 세율 및 세부 분류를 위해 구체적이어야 함<sup>259)</sup>
  - 수입품에 대한 상업 송장에는 가격, 판매 시점, 장소, 입항항, 상품의 설명, 포장 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업적 송장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함<sup>260)</sup>
    -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름,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 물품이 입항하는 항구
    - 품목분류, 세관 가치 평가 및 통계 목적으로 물품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 물품의 일반적 용어 또는 상업적 명칭, 등급이나 품질, 판매 시 사용된 번호, 기호 또는 제조업체의 마크와 포장 상태도 포함되어야 함
    - 선적된 물품의 증량이나 수량
    - 세관 검사, 가치 평가, 및 품목분류에 필요하다고 규정된 기타 사항
    - 위 사항은 판매가 아닌 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예: 위탁, 대여, 샘플, 기증품 등)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됨
  - 수입신고서는 필리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관

258) CMTA 제411조

259) CMTA 제413조

260) CMTA 제414조



담당자가 이를 인쇄하여 확인한 서류는 법적 서류로 간주될 수 있음<sup>261)</sup>

- 세관이 정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 설명은 세관의 가치 평가, 통계 작성 및 물품이 적절히 분류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물품의 설명에는 상업 송장에 기록된 화폐 단위와 관세 및 세금의 적절한 부과를 위한 기타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sup>262)</sup>
  - 물품의 수량과 가치는 세부 품목별로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며, 각 품목에 대한 총액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샘플의 경우 샘플의 수량과 가치는 물품신고서 또는 전자 양식의 지정된 칸에 기재되어야 하며, 샘플에는 관련 수입품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sup>263)</sup>

## 2) 물품검사

- 세관이 물품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물품신고가 접수된 후 즉시 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살아있는 동물, 부패하기 쉬운 물품,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한 기타 물품이 우선적인 검사 대상이 됨<sup>264)</sup>
- 필요한 경우, 세관과 기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다른 규제 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 검사 체계를 통해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세관은 신고자나 신고자의 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검사하지만 재무부 장관이 규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신고자나 대리인의 부재 시에도 검사가 허용될 수 있음<sup>265)</sup>
  - 세관은 신고자가 물품 검사에 참석하거나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

261) CMTA 제412조

262) CMTA 제413조

263) CMTA 제416조

264) CMTA 제419조

265) CMTA 제419조

- 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은 물품의 품목 설명과 신고된 물품의 가치 또는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샘플을 채취해야 함
-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세관은 X-ray와 같은 비침습적인 물품 검사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물리적 물품 검사를 실시해야 함<sup>266)</sup>
  - 부정 정보로 관세청장이 지시한 경우
  - 적절한 권한에 의해 발행된 경보 명령에 따라 물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
  - 물리적 검사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선택된 경우
  - 수입신고 및 수입 승인 과정에서 문제나 논란이 있는 경우
  - 수입업자나 신고자가 물품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 관세청장은 공인된 경제 운영자나 세관의 기존 무역 촉진 프로그램에 규정된 물품에 대해 물리적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물리적 검사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함
- 세관원은 물품의 검사, 분류, 평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함<sup>267)</sup>
  - 검사 대상 포장과 내용물이 물품신고서, 송장 및 기타 관련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함
  - 필요한 경우 검사나 실험실 분석을 위해 수입물품의 샘플을 채취함
  - 채취된 샘플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함
  - 물품의 가치, 수량, 측정치, 중량, 관세 분류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불법 수입이 아닌지 보고함
- 검사 비용은 수입자나 수출자가 부담하며, 적절한 회계 처리와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이 물품의 처리나 보관, 기타 필요한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물품에 대해 청구됨<sup>268)</sup>

---

266) CMTA 제420조

267) CMTA 제421조

268) CMTA 제422조

### 3) 납부 및 반출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산정을 위해, 세관원은 품목분류 및 가치 평가를 진행 하고 지불해야 할 제세금을 산정해야 함<sup>269)</sup>
  - 세관원은 본 법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법령이나 규제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세금, 수수료 및 기 타 비용은 정부에 대한 개인 부채로 간주되며, 관세 및 기타 비용의 납부를 통해서만 채무가 이행됨<sup>270)</sup>
  
- 수입자가 처음 산정된 관세와 세금을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평가를 잠정적으 로 간주하고 분류상의 논란이 있는 경우 세관 결정에 따라 최종 조정이 이루어짐
  
- 가치 평가, 원산지 규정, 기타 세관 문제와 관련된 항의 사건의 최종 결정에 따라 평 가가 완료됨<sup>271)</sup>
  - 보증금이 제출될 경우 잠정 평가하에 수입물품의 반출을 허용할 수 있음
  
- 물품신고가 이루어지고 관세 및 세금과 기타 적법한 요금이 지불되거나 확보되고 모 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준수된 경우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sup>272)</sup>
  - 세관이 샘플의 실험실 분석, 기술 문서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요구할 경우, 신고자 가 적절한 보증금을 제출하면 이러한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어떠한 세관원도 선하증권이나 항공물품운송장 없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으며, 항공 기나 선박의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서면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잘못된 반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나 세관원이 책임지지 않음

---

269) CMTA 제424조

270) CMTA 제405조

271) CMTA 제425조

272) CMTA 제431조

- 서면 명령에 따른 반출이 이루어질 경우, 세관원은 선하증권의 사본 제출을 요구해야 함<sup>273)</sup>
- 수입자는 보세창고에 저장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반출하도록 서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 부여는 수입자에게 부과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해 인도를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인수해야 함<sup>274)</sup>

## 2. 기타 수입 통관절차

### 가. 비공식 통관절차(Informal entry process)

#### 1) CMTA 제800조에 따른 물품에 대한 비공식 통관절차

- 승객의 수하물이나 상업적이지 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 FOB 또는 FCA 기준 PHP 50,000 미만의 상업용 물품, 귀국하는 필리핀 거주자, 해외 근로자 개인 물품, CMTA 제800조에 따른 조건부 과세 및 면세 물품<sup>275)</sup>은 비공식 통관절차(Informal Entry Process)가 적용됨<sup>276)</sup>
- 수입신고서는 관세청의 E2M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하며, 비공식 통관절차 부서 (Informal Entry Division) 또는 해당 항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함<sup>277)</sup>
  - 신고자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공식 통관 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고자는 비공식 수입 및 반입신고서(Informal Import

---

273) CMTA 제433조

274) CMTA 제434조

275) 본 보고서의 'V. 관세 감면 및 환급' 참조

276) CMTA 제402조, CAO 02-2021 제3.16조, 제4.1.3조

277) CAO 02-2021 제5.1조

Declaration and Entry, IIIDE) 양식 BC No. 177을 사용해야 함

□ 수입신고는 마지막 물품 하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sup>278)</sup>

○ 정식으로 승인된 선하증권 또는 항공물품 청구서,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발행한 증명서

- 상업 송장 또는 기타 가치를 입증하는 확인 가능한 문서
- 수입품의 항목별 특정 정보가 포함된 포장 목록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
- 수동 제출의 경우, 공항용 게이트 패스 BC No. 201호
-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BOC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규제 물품 목록에 기재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당국, 허가, 통관 또는 면허 등)
- 해당되는 경우 위생 및 식물 위생(SPS) 인증서
- 해당되는 경우 수입품 반출 허가서
-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입증하는 문서

□ 다음의 경우 잠정 수입신고가 가능함<sup>279)</sup>

○ 규제 허가, 승인서 또는 라이선스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수입자가 원산지 국가에서 출발 전 또는 물품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허가를 신청한 경우, 세금 면제 증명서(TED)가 발급되지 않았으나 신고 시점에 신청이 이미 제출된 경우, 기타 정보나 문서가 부족하지만 신고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 잠정 신고를 위해서는 견적 송장(Pro forma invoice), 서명된 BL 또는 AWB, 또는 운송업체의 서면 명령서, 원산지 증명서 사본(해당 시), 신고자가 필요한 추가 서류를 45일 내에 제출하겠다는 공증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sup>280)</sup>

○ 사유가 타당한 경우 추가 45일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요청은 기존의 45일 기간이

278) CAO 02-2021 제5.2.1조-제5.2.5조

279) CAO 02-2021 제5.4.3조

280) CAO 02-2021 제5.4.2조

만료되기 전에 승인되어야 함

- 관세청장이 잠정 수입신고서를 승인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제세금 납부 처리는 완전한 신고서가 제출된 물품과 동일하게 진행됨<sup>281)</sup>
  - 잠정 신고서의 관세, 세금, 기타 비용은 임시 신고서 제출 후 45일 이내에 추가 정보나 서류가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조정됨
  
- 상업적 성격의 물품으로, FOB 또는 FCA 가치가 PHP 50,000 미만인 물품이 항만 외 보세창고(Off-dock CFW)로 이동된 경우, 엑스레이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시행해야 함<sup>282)</sup>
  
- 비공식 통관절차를 통한 모든 컨테이너 물품에 대해 신고서에 기재된 서류를 기반으로 관세 및 세금 평가 및 납부 전에 의무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며, X-ray 이미지에서 불규칙성이 의심될 경우 물리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함<sup>283)</sup>
  - 공항 창고 및/또는 복합 창고로 반입된 모든 물품에 대해 의무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함
  - 외교관의 개인 수하물이나 물품은 검사에서 면제되지만, 해당 물품이 외교관 특권으로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포함하고 있거나, 필리핀 법률에 의해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된 물품 혹은 필리핀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을 시 검사 수행이 가능함
    - 다만 이러한 검사는 외교관 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자의 입회하에만 진행됨
  
- 비공식 통관절차를 통해 통관되는 상업적 성격의 물품에 대한 기준 가치 한도를 증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관세청장이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고할 수 있음<sup>284)</sup>

---

281) CAO 02-2021 제5.4.3조

282) CAO 02-2021 제5.6.2조

283) CAO 02-2021 제5.6.2조

284) CAO 02-2021 제7조

## 2) CMTA 제800조에 따른 물품 중 여행자 물품 통관에 대한 세부 사항

-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1인당 PHP 10,000으로 필리핀 CMTA에 따라 PHP 10,000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은 세관신고 대상이 됨<sup>285)</sup>
  - 1인당 10,000페소의 기본 면세 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되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음
  - 담배의 경우 1인당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궤련형 담배: 2보루, 시가: 50개비, 파이프 담배: 250g
  - 주류의 경우 1인당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수량: 2병 이하, 용량: 1.5리터 이하, 금액: 10,000페소 이하
  - 향수의 경우 개인용도 범위 내에서 면세가 가능함
- 다음의 물품은 여행자 물품으로 반입 시 반출입이 제한됨<sup>286)</sup>
  -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규제되며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 등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나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음
  -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라도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이라고 해도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됨
- 제한 또는 규제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관련 규제 기관의 수입 통관/면허/허가증 원본을 제시/제출해야 함<sup>287)</sup>

285) 주세부대한민국본관, [https://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29/view.do?seq=1345456](https://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29/view.do?seq=1345456), 검색일자: 2024. 12. 9.

286) 필리핀 관광부, <https://philippinetourism.co.kr/travel/customs>, 검색일자: 2024. 12. 9.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필요한 수입 통관/면허/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한 또는 규제 물품은 수하물 지원 부서의 보세창고 내 보관실에 보관되며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게 HBR(Held-Baggage Receipt)이 발행됨
  - 은폐 또는 세관 검사 및 통관 회피 시도 등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은 조사를 위해 ESS에 넘겨지고 과일, 채소, 날고기 등 규제 대상 부패성 물품의 경우, HBR 발급 없이 즉시 해당 규제 기관에 인계됨
  - 금지물품은 즉시 수하물 지원 부서의 보세창고 보관실에 보관하고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게 HBR을 발급함
  - 규제, 제한 또는 금지물품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물품의 검사, 재고 조사,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의 평가 및 납부를 위한 동일한 절차가 수행됨
-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여행자는 관세 및 세금과 물품의 총 양륙 비용을 기준으로 30%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함<sup>288)</sup>
- 도착 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수하물과 함께 세관 검사관에게 세관 수하물신고서를 제출해야 함<sup>289)</sup>
- 모든 도착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모든 공항 및 입국 항구에 도착하기 72시간 이내에 <https://etravel.qov.th/>에 로그인하여 전자 여행 통관시스템에서 e-CBDF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 전자 세관신고를 완료해야 함<sup>290)</sup>
- 물품 검사는 그린라인 및 레드라인으로 분류되어 진행됨<sup>291)</sup>
- 그린라인: 신고할 사항이 없거나 수입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는 물품만 소지하고 반입 금지, 제한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여행자
  - 레드라인: 여행자 및 승무원이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목적으로 신고할 물품이 있거나

287) CMO 17-2023 제6.8조

288) CMTA 제1404조

289) 필리핀 관세청, <https://customs.gov.ph/guidelines-on-arriving-travelers/>, 검색일자: 2024. 12. 9.

290) CMO 17-2023 제6.1조

291) CMO 17-2023 제6.2조



면제된 세관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금지, 통제 또는 규제 대상인 물품 또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무작위 및/또는 합리적 선택과 같은 위험 관리 선정 절차에 따라 또는 정보에 근거하여 세관원은 모든 입국항에 도착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 전자 세관신고서 또는 전자 CDF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레드라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그린라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통관이 이루어짐<sup>292)</sup>

- 여행자는 입국 항구의 도착 구역에서 지정된 세관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QR 코드를 제시해야 함
- 배정된 세관 심사관은 참조 및 확인을 위해 다음 세부 정보가 반영된 QR 코드를 스캔해야 함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이름
  - 여권 번호
  - 신고할 물품 또는 신고할 물품 없음
  - 신고 날짜 및 시간
  - 항공편 번호
  - 도착 또는 출발 날짜
- 세관 심사관은 여권의 정보를 전자 CBDF 및 해당되는 경우 전자 CDF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함
- 세관 심사관은 여행자에게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구두로 질문해야 함
- 여행자가 신고할 물품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심사관은 여행자에게 e-CBDF의 항목 수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 후 여행자는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레드라인 또는 보조 검사실로 이동하도록 안내받음
- 여행자가 신고할 사항이 없고 배정된 세관 심사관이 여행자의 진술에 확신을 갖는 경우, 세관 심사관은 여행자를 통과시키고 동반 수하물(있는 경우)의 반출을 허가함
- 세관 심사관이 정보, 추론 또는 무작위 선정으로 인해 여행자의 신고에 만족하지

---

292) CMO 17-2023 제6.3조

못하는 경우, 여행자를 레드라인 또는 보조 심사실로 안내하여 물리적 검사를 실시함

- 레드라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통관이 이루어짐<sup>293)</sup>
  - 도착한 여행자 및 승무원이 레드라인으로 배정된 경우 세관 심사관 또는 여행자를 레드라인 또는 보조 심사실로 안내한 심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 e-CBDF의 에 수량, 물품 설명, 관세 및 세율과 금액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결과 및 평가를 보고함
  - 신고할 것이 없는 승무원의 경우, 지정된 세관 심사관이 물리적 검사를 실시한 후 신고가 유효한 경우 세관 심사관은 승무원을 통관시키고 수하물을 반출함
  
- 관세 또는 과세 대상 물품이 포함되지 않은 수하물은 심사관이 전자 서명을 e-CBDF에 첨부하여 즉시 통관함<sup>294)</sup>
  
- 관세 또는 과세 대상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수하물은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 이 부과되며 전자 여행 통관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됨<sup>295)</sup>
  - 감독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관 직원의 평가가 승인되면 세관 심사관은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게 평가된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의 총액을 고지하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의 총액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세관 심사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자는 전자 CBDF에 지불을 위한 태그를 부착함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계산원 또는 징수 담당자에게 해당 제세금을 지불해야 함
  - 계산원 또는 징수 담당자는 전자 CBDF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며, 세금이 납부되면 세관 공무원 영수증(BCOR) 원본을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게 전달함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 통로로 돌아와 세관 심사관에게 BCOR을 제시하고 세관 심사관이 올바른지 확인함

293) CMO 17-2023 제6.4조

294) CMO 17-2023 제6.5조

295) CMO 17-2023 제6.6조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관세, 세금 및 기타 요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수하물 및 물품은 수하물 지원 부서의 보세창고 보관실에 보관되며,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게 보류 수하물 영수증(HBR)이 발행됨
  
- 재수출을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다음의 특정 통관절차를 따름<sup>296)</sup>
  - 도착 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재수출 대상 물품과 함께 세관 수하물신고서(CBDF)를 세관원에게 제출해야 함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재수출 서약서(RECF)를 작성해야 함
  - 세관 검사관은 CBDF 및 RECF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를 진행하며, RECF에 자신의 서명을 첨부해야 함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납세 대상 물품의 반출을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시해야 함

## 나. 특송물품 통관절차

- 세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만국우편연합법(Acts of the Universal Postal Union)」 또는 유사한 국제 협정에 명시된 우편물에 대한 특별 신고서에 기록되어 있을 시 특별 신고서 및 지원 문서가 수입신고서가 되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함<sup>297)</sup>
  - 물품의 가치가 과세 대상으로 결정되어 수입신고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금지 및 규제 물품
  - 수출이 인증되어야 하는 물품
  - 소비용이 아닌 세관 절차에 따라 수입된 상품
  
- 도착 전 통관이 필요한 항공 운송에 대해 국제 표준 및 세관 모범 사례에 따라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제공하며, AECO 운영자의 특송 물품의 경우 충분한 담보 제시 시 제

---

296) 상동

297) CMTA 제408조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반출될 수 있음<sup>298)</sup>

□ 특송물품은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sup>299)</sup>

- 서류 및 문서: 편지, 송장, 공식 문서 등과 같은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세금 및 수수료  
료가 면제되는 물품
- 비과세 또는 저가의 비과세 특송물품: 일정 가치 이하의 물품으로, 제세금이 면제되  
는 물품
- 저가 과세 대상 및/또는 세금 부과 대상 특송물품: 저가이지만 제세금이 부과되는  
물품
- 고가의 특송물품: 고액의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더 복잡한 통관절차와 고가의 세금  
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음

□ AECO(공인 특송 물품 운영자, 이하 'AEOC')는 e-IFCM(Inward Foreign Cargo  
Manifest) 제출(전자 수입물품 선적 명세서)의 정확하고 완전한 사본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음<sup>300)</sup>

- 아시아: 항공기 도착 최소 1시간 전 제출
- 아시아 외의 국가: 항공기 도착 최소 4시간 전 제출
- e-CIFCM(Consolidate Inward Foreign Cargo Manifest, 이하 'CIFCM') 제출:  
개별 배송의 최종 수취인을 식별하기 위해 전자 사본을 e-IFCM에 첨부하여 제출  
해야 함
- CIFCM에 나열되지 않은 물품의 목록은 보충 명세서로 항공기 도착 후 6시간 이내  
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물품은 미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압류의  
대상이 됨

□ 특송물품의 사전 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sup>301)</sup>

---

298) CMTA 제439조

299) CAO 02-2021 제7조

300) CAO 02-2021 제8조

- 물품은 해당 분류에 맞게 정확하게 선적되어야 함
- CIFCM 및 IFCM은 AECO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어야 하며, 원산지국에서 항공기가 출발하는 최소 2시간 전에 전송이 완료되어야 함
- 관련 규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수입 허가서が必要な 경우 해당 배송은 사전 통관 대상에서 배제됨

### 1) 서신 통관

- 문서 처리 담당자는 CIFCM에 유효한 서신 및 문서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CIFCM이 비문서 항목 없이 확인되면, 이를 검사관에게 전달함<sup>302)</sup>
  - 서신, 문서 또는 허용된 매체가 아닌 항목은 별도로 분리해야 하며, 비적합 항목이 포함된 CIFCM은 수정 절차를 위해 AECO에 반환됨<sup>303)</sup>
- 비침습 스캔에서 의심스러운 물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밀봉된 특송 가방을 열어 CIFCM 내용의 수량 및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함<sup>304)</sup>
  - 불확실한 항목은 AECO가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 검사를 진행함
  - 검토 후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검사를 통해 CIFCM에 있는 수량 및 수취인 정보가 실제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함
- 세관 검사관(customs examiner)이 평가 과정을 완전히 마친 후 세관 감정관(customs appraiser)이 세부 CIFCM을 수입신고로 확인한 후 통관 및 반출 처리를 승인함<sup>305)</sup>
  - 물리적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항목이 발견될 경우, 세관 검사관은 특정 서신이나 문서를 분리하고 문서 처리 담당자를 통해 세부 CIFCM을 AECO에 수정 요청하고 자 반환함<sup>306)</sup>

301) CAO 02-2021 제9.1조-제9.3조

302) CAO 02-2021 제11.1조 - 제11.2조

303) CAO 02-2021 제11.3조 - 제11.4조

304) CAO 02-2021 제11.7조 - 제11.9조

305) CAO 02-2021 제11.10조

## 2) De-Minimis 또는 저가 비과세 물품의 통관절차

- AECO(공인 특급 택배 운영자)는 FOB 또는 FCA PHP 10,000 이하인 모든 De-Minimis 물품에 대해 사전 통관을 위해 상세 CIFCM을 항공기 출발 2시간 전 출발지 국가에서 제출해야 함<sup>307)</sup>
- 문서 처리자는 상세 CIFCM을 검토하여 각 물품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CIFCM을 세관 검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함<sup>308)</sup>
  - 정보가 불완전할 시 문서 처리자는 AECO에 수정을 요청해야 함
  - CIFCM에 PHP 10,000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규제된 물품이 포함되지 않으면, 문서 처리자는 해당 상세 CIFCM을 세관 검사자에게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도록 함<sup>309)</sup>
  - CIFCM에 PHP 10,000 초과 물품이나 규제 물품이 포함되면, 문서 처리자는 AECO에 수정 요청을 위해 CIFCM을 반환하고, 세관 검사자에게도 이를 고지함<sup>310)</sup>
- 세관 검사자는 상세 CIFCM을 수령한 후 기재된 정보가 실제 패키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세관 검사자는 BOC-XIP으로 물품 확인 후 통관절차를 진행함<sup>311)</sup>
  - 물리적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항목이 발견될 경우, 세관 검사관은 특정 서신이나 문서를 분리하고 문서 처리 담당자를 통해 세부 CIFCM을 AECO에 수정 요청하고자 반환함<sup>312)</sup>
  - 검사관 및 관련 담당자들은 추가 심사, 재고 조사, 보고서 작성 또는 압류 구금영장 (Warrant of Seizure and Detention) 발급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sup>313)</sup>

306) CAO 02-2021 제11.11조

307) CAO 02-2021 제12.1조

308) CAO 02-2021 제12.2조

309) CAO 02-2021 제12.3조

310) CAO 02-2021 제12.4조

311) CAO 02-2021 제12.5조, 제12.6조

312) CAO 02-2021 제12.5조, 제12.10조

313) CAO 02-2021 제12.12조

### 3) 저가 과세 대상 및/또는 세금 부과 대상 특송물품

- 수입신고서는 AECO가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를 사용하여 VASP(Value Added Service Providers)를 통해 E2M 시스템에 제출함<sup>314)</sup>
  - E2M 시스템은 수입신고서를 검증 및 등록하고 적절한 위험 관리를 위한 선별을 적용함<sup>315)</sup>
  - 심사관과 감정인은 서류 원본을 수령하면 수입신고서에 발견 사항이나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입신고서의 검사는 신고서 제출 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sup>316)</sup>
  
- 세관 검사자가 신고서상 부정적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평가자가 신고서를 승인하면, 해당 신고서는 6시간 후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평가됨<sup>317)</sup>
  - 평가자는 Green 상태로 선택된 물품에 대해 즉시 평가 상태로 변경할 수도 있음
  - 부정적인 부분이 발견될 시 검사관은 SAD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내용을 E2M의 검사 보고서에 입력하며 평가관은 검사관의 판단 내용에 따라 상태를 재지정할 수 있음
    - Yellow: 추가 허가서, 면허, 또는 다른 규제 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Red: 물리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평가관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Yellow 또는 Red로의 상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sup>318)</sup>
  
- 수입신고서가 Yellow로 재조정된 경우 세관 검사관은 AECO에 필요한 허가서, 면허 또는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필요 서류가 제출되면 검사 조서를 업데이트하고, 평가자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서를 Green 상태로 재조정하여 처리함<sup>319)</sup>

314) CAO 02-2021 제13.1.1조

315) CAO 02-2021 제13.1.2조

316) CAO 02-2021 제13.1.3조

317) CAO 02-2021 제13.1.4조

318) CAO 02-2021 제13.1.4조

319) CAO 02-2021 제13.1.7조

- AECO가 제반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 검사자는 WSD를 발급함
- 저가 과세 및/또는 세금이 부과되는 PHP 50,000 미만의 가치를 가진 특송물품의 경우 세금 및 기타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비용에 대해 은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전 물품 반출이 허용됨<sup>320)</sup>
- 고가의 특송 물품은 일반 물품 통관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sup>321)</sup>

#### 다. 기타 환적 및 재수출

- 환적을 위해 허용된 물품은 관세 및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세관 환적을 위한 수입신고서에는 상업 또는 운송 문서 또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증거로 적절하게 뒷받침되는 물품의 성격을 명시해야 함<sup>322)</sup>
- 환적을 위한 상품은 도착 후 30일 이내에 필리핀에서 수출되어야 하나 타당한 이유가 입증되면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선하증권, 송장, 적하목록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해 물품의 재수출 의도가 표시된 경우, 하나 이상의 패키지로 구성된 선하증권의 전체 또는 일부 담보하에 즉시 재수출을 위해 필리핀 역내로 반입할 수 있음<sup>323)</sup>
- 지역징수원은 물품이 적재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창고로 지정하여 수출 선박 또는 항공기로의 직접 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320) CAO 02-2021 제16조

321) CAO 02-2021 제17조

322) CMTA 제603조

323) CMTA 제604조



## II. 수출 통관절차

### 1. 수출 통관절차

- 수출 관세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청의 관할 감독 및 통제하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세관 보세창고 및 기타 건물에서 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집하 구역 및 그 하위 항구의 모든 공항 또는 항구에 적재된 모든 수출품은 수출신고, 물품 검사에 따른 수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 필리핀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수출신고서를 통해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당사자가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서명해야 함<sup>324)</sup>
  - 상품을 수출하려는 법인은 관세청의 고객 등록 시스템에 수출자로 등록해야 함<sup>325)</sup>
  - 전자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출신고서의 수기 처리가 허용될 수 있으나 수작업으로 처리된 수출신고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전자적으로 접수해야 함<sup>326)</sup>
  - 수출신고서의 물품 설명에는 통계 목적뿐만 아니라 물품의 적절한 가치 평가 및 분류를 위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sup>327)</sup>
    - 수출자 이름
    - 수취인 이름
    - 수출 선박 또는 항공기 이름
    - 도착지/출항지 국가 및 항구

---

324) CMTA 제500조

325) CAO 08-2020 제6조

326) CAO 08-2020 제7.1조

327) CMTA 제501조 및 CAO 08-2020 제4.2조

- 적재 날짜
  - 포장물의 개수 및 표시 또는 대량인 경우 수량
  - 포함된 상품의 성격과 정확한 상품 설명
  - 과세가격
  - 선적물품의 중량
  - 기타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 다음 수출물품의 경우 관세청의 특별 적재 허가를 취득해야 함<sup>328)</sup>
- 즉각적인 재수출을 위한 외국 상품
  - 빈 컨테이너
  - 내륙 세관에서 입항지까지의 환적 물품
  - 인체 유해
  - 외교적 발송 물품
  - 파손 또는 잘못 분류된 수하물 또는 선적물
  - CMTA 제600(h)에 따른 동반 수하물(내륙세관 간 이동 시)
  - 일반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없는 업무, 사무실 간 또는 개인적 성격으로 간주되는 서류의 발송물로, 적절하게 표시된 외교 발송물을 포함하는 파우치 또는 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에 담긴 발송물
  - 세관장이 세관 각서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물품
- 표준 등급에 부합해야 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포장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라벨을 붙여야 하며, 해당 요건을 위반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를 할 수 없음<sup>329)</sup>
- 해당 원산지 규정에 따라 관세청 또는 기타 지정된 정부 기관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sup>330)</sup>

328) CAO 08-2020 제4.2조

329) CMTA 제502조

- 단, 수출자는 자체 인증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으나 해당 인증 시스템이 본국 또는 기타 공인된 정부 기관의 정식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관세청 또는 기타 지정된 정부 기관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다음 수출 화물은 물품 검사 또는 비침입 검사를 받아야 함
  - 훼손된 정보로 관세청장이 직접 수출을 지시한 물품
  - 경고 명령 또는 사전 반입 통제 명령의 대상이 되는 발송물 수출
  - 재수출 보증에 따라 이전에 수입된 수출물품
  - 위험 관리 시스템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물품
  - 반송된 화물
  - 수출 관세 납부 대상인 통나무 수출
  
- 검사 비용은 수출자의 계정으로 청구되며 물품의 취급 또는 보관 및 기타 필요한 작업을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물품에 청구될 수 있음<sup>331)</sup>
  
- 사무국 직원은 수출자의 구역 또는 사무국의 지정된 검사 구역에서 ICT 지원 시스템, CCTV 및 기타 사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용 물품이 컨테이너에 채워지는 것을 감독하거나 모니터링함<sup>332)</sup>
  - 물품 검사 또는 비침입 검사는 물품 적재 전 또는 적재 중에 실시할 수 있음
  
- 관세청은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세 및 기타 수수료 및 요금을 평가하고 징수함<sup>333)</sup>

---

330) CAO 08-2020 제4.5.1조

331) CAO 08-2020 제7.2조

332) CAO 08-2020 제7.3조

333) CAO 08-2020 제7.5조

- 수출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사무국 직원이 동석해야 함<sup>334)</sup>
  - 항공으로 발송된 수출 화물은 세관 시설창고(CFW)에서 항공기 적재를 위해 공항 터미널 시설에 배치된 사무국 직원이 수령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함<sup>335)</sup>
-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출발한 후 수출신고를 처리한 수출 부서는 검사관의 적재 증명서를 근거로 선적 또는 미선적 증명서를 발급함<sup>336)</sup>
- 수출자는 국제 협정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수출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동안 수출물품에 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sup>337)</sup>

## 2. 기타 수출 통관절차

-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다음의 경우 모든 공항 및 입국항에서 출발 72시간 이내에 전자 여행 통관시스템(<https://etravel.oov.ph/>)에 로그인하여 전자 CDF를 완료해야 함<sup>338)</sup>
  -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및 기타 외화 표시 무기명 화폐를 반출하는 경우
  - 필리핀에서 영업 중인 은행을 상대로 필리핀 페소로 발행된 법정 화폐 필리핀 지폐 및 동전, 수표, 우편환 및 기타 환어음으로 50,000페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하는 경우

---

334) CAO 08-2020 제7.6조

335) CAO 08-2020 제7.7조

336) CAO 08-2020 제7.8조

337) CAO 08-2020 제9조

338) CMO 17-2023 제7.1조

- 여행자 및 승무원이 필리핀에서 반출하는 필리핀 법정 화폐 필리핀 지폐 및 동전, 수표, 우편환 및 필리핀에서 영업 중인 은행에서 페소로 발행한 기타 환어음(50,000페소)은 전자 CDF 외에도 BSP가 정식으로 발행한 사전 서면 승인서를 전자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함<sup>339)</sup>
  
- 신고가 완료되면 여행자 및 승무원은 전자 서명을 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업로드해야 함<sup>340)</sup>
  - 여행자 및 승무원은 QR 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사전 영장 원본과 함께 출발 구역의 세관 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음
  - 지정된 세관 심사관은 참조 및 검증을 위해 다음 세부 정보가 반영된 QR 코드를 스캔해야 함
    - 여행자 또는 승무원 이름
    - 여권 번호
    - 신고할 항목 또는 신고할 통화 없음
    - 신고 날짜 및 시간
    - 항공편 번호
    - 출발 날짜
  
- 도착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게 제공되는 반입 물품 가치 검사와 관련된 절차는 출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됨<sup>341)</sup>
  - 필리핀 통화 또는 50,000페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BSP의 사전 서면 승인 제출 및/또는 사기 발생 시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며 조사 결과는 e-CDF의 심사관 조사 결과에 반영됨<sup>342)</sup>

---

339) CMO 17-2023 제7.3조

340) CMO 17-2023 제7.4-제7.6조

341) CMO 17-2023 제7.7조

342) CMO 17-2023 제7.8조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CDF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 대신하여 e-CDF에 디지털 항목을 입력하고 통화신고의 세부 사항을 입력함<sup>343)</sup>
-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상업적 수량의 수출용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특별 적재 허가(SPL)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sup>344)</sup>
  - 반송할 물품의 경우, 여행자는 도착 지역에 배정된 세관 직원에게 반송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출발 전 신고서 또는 신분 증명서를 직접 작성해야 함<sup>345)</sup>
-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해당 규정 및 전자 여행 통관시스템은 3년마다 검토되어 필요에 따라 수정 및/또는 업데이트되므로 필리핀 관세청의 전자 여행 통관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sup>346)</sup>

---

343) CMO 17-2023 제7.9조

344) CMO 17-2023 제7.10조

345) CMO 17-2023 제7.11조

346) CMO 17-2023 제7.13조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한-필리핀 FTA 상세 설명자료」, 2023. 9.  
김윤환·박지운·형민혁, 「2024 필리핀 진출전략」, 『KOTRA 자료 23-165』, 202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2023. 9. 7.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필리핀』, 2024. 8. 26.

Tariff Commission, “Rules of Origin: Primer,” 연도 없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4*, 2024.

외교부, <https://www.mofa.go.kr>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한국수출입은행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  
KIEP, <https://www.kiep.go.kr>  
KOTRA, <https://dream.kotra.or.kr>  
필리핀 관광부, <https://philippinetourism.co.kr>  
필리핀 관세위원회, <https://tariffcommission.gov.ph>  
필리핀 관세청, <https://customs.gov.ph>  
필리핀 국세청, <https://www.bir.gov.ph>  
필리핀 대법원 E-Library, <https://elibrary.judiciary.gov.ph>  
필리핀 재무부, <https://www.dof.gov.ph>  
필리핀 중앙은행(BSP), <http://www.bsp.gov.ph>

필리핀 통계청, <https://psa.gov.ph>

필리핀 통상산업부, <https://www.dti.gov.ph>

필리핀 표준국, <https://bps.dti.gov.ph>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philippines-import-requirements-and-documentation>, 검색일자: 2024. 11. 12  
주세부대한민국본관, [https://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29/view.do?seq=1345456](https://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29/view.do?seq=1345456), 검색일자: 2024. 12. 9.

healyconsult, <https://www.healyconsultants.com/philippines-company-registration/free-zones/>, 검색일자: 2024. 9. 3.

IMF, <http://www.imf.org>

ITA, <https://www.trade.gov/knowledge-product/philippines-prohibited-restricted-imports>, BIS, <https://dtiwebfiles.s3-ap-southeast-1.amazonaws.com/Downloadable+Files/Imports/BIS+attachment+3+2013.pdf>, BOC, <https://customs.gov.ph/regulated-import-products/>, 검색일자: 2024. 10. 4.

Tradeline Philippines, <https://tradelinephilippines.dti.gov.ph>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CMTA(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Special Economic Zone Act(Republic Act NO. 7916)」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Republic Act NO. 7916」

「RA 7394: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CMC(Customs Memorandum Circular) 03-2024

CMO(Customs Memorandum Order) 17-2023

CMO(Customs Memorandum Order) 16-2023



- CMO(Customs Memorandum Order) 09-2020
-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16-2010
-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1-2022
-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2-2021
-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8-2020
-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2-2020
-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1-2020
-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5-2017
- CAO(Customs Administrative Order) 03-2016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필리핀 편 -

---

발 행 2024년 12월 31일  
저 자 최인혁·노영예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세 세일포커스(주) 02-2263-5592  
ISBN 979-11-6655-308-0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